

2023년도

환경친화 축산사업 추진계획



목 차

I. 2023년 환경친화 축산 추진방향	1
1. 2022년 주요성과	4
2. 2023년 중점 추진계획	6
3. 축산업 현황	8
4. 발전목표	9
5. 2023년 축산사업 투자계획	10
6.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3
7. 2023년 축산사업 추진 유의사항	20
8. 사업별 지원 대상 축종	22
II. 주요사업 추진계획	25
■ 축산정책팀 소관	
1.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9
2.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사업	48
3.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	57
4.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60
5.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77
6. 가축 폭염대비 고온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91
7.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	94
8. 한우 등록 지원사업	98
9.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103
10.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신규)	108
11.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	111

▣ 동물복지팀 소관

12.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115
13.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122
14.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126
15.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138
16. 젖소 개량(등록·심사) 지원사업	141
17.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46
18.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도 자체)	157
19.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162
20.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	165
21.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167
21-1.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사업(입양비, 구조보호비)	168
21-2.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170
21-3.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172
21-4.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175

▣ 축산경영팀 소관

22.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85
23.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187
24. 조사료(벧짚) 스팀 가공장비 지원사업	198
25.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200
26.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	201
27. 한우경진대회 및 축산인 한마음대회	204
28.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205
29. 축산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07
30.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지원사업	209
31. 축산물 이력제 지원사업	210
32. 꿀벌산업 육성사업(양봉)	222

33. 꿀벌산업 육성사업(한봉)	226
34.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230
35. 축산계열화 사업	234

■ 축산자원팀 소관

36.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237
37.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277
38.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280
39.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	284
40.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	288
41.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신규)	291
42.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사업	293
43. 양돈 생산성 향상(항체 형성률 향상) 지원사업	296
44.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	298
45.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사업	300
46. 돼지 모돈 분만을 향상 지원사업(신규)	302
47.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신규)	304
48.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신규)	306
49.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신규)	308
50.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	310
51. 곤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312
52.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315
53.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317
54.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319
55.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322
56.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323
57.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	326

Ⅲ. 비예산 사업 추진계획 329

- 1. 축산분야 재해예방 대책 331
- 2. 축산 시책 평가 337
- 3. 가축 통계 조사 338
- 4. 사료검사 340
- 5.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341
- 6.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343
- 7.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추진 344
- 8.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345
- 9.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355

Ⅳ. 참고자료 357

-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약칭 : 영농기자재면세규정) 359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363

I.

2023년 환경친화 축산 추진방향

I . 2023년 환경친화 축산 추진방향

<p>목표</p>	<p>환경친화 축산 실천 확대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p>	
<p>기본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환경친화 축산농장 확대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을 통해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조사료생산·명품한우육성 및 유통 활성화로 경쟁력 확보 ■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새로운 소득사업 육성 	
<p>시책 추진 방향</p>	<p>환경친화 축산기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축산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 • 시설현대화 및 보급형 스마트 축산 시설 확대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p>쾌적한 축산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및 악취저감 추진 •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및 정화방류 확대 •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저메탄사료 공급으로 탄소 중립 선도 	
<p>조사료생산·명품한우육성 및 유통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료 이용 확대 및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 전남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명품육성 •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시설 등 확충 • 축산물 수출 확대 	
<p>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미래성장 산업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재해보험, 폭염 대응 가축피해 예방 • 말, 꿀벌, 곤충, 반려동물 산업기반 조성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1

2022년 주요 성과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전국 1위 등 환경친화 농장 확대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4년 연속 전국 1위 : '21) 1,688 → '22) 1,769호(증 81호)
 - 전국 최초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 '21) 373 → '22) 415호(증 42호)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년 연속 전국 1위 : '21) 1,348 → '22) 1,585호(증 237호)
-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43개 사업 5,145억원 투입, 환경친화 농장 360호 신규 지정

□ 전국 최초, 전체 초등학교 우유 무상급식(2년차), 학생 건강 증진 및 낙농업 안정 기여

- 지원 확대 : '20) 57천명 / 61억 원 → '21) 132 / 105 → '22) 128 / 117
- ※ 전국 유일의 초등 전체 우유 무상급식 3년차 확대를 위한 2023년 도자체 예산 86억원 추가 확보

□ 사료구매자금 지원 및 기금 상환 유예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2,733억 원 지원
 - 우리 도 건의로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최다 확보(491 → 2,733억 원, 5.6배↑), 용자 금리 인하(1.8% → 1.0%, 0.8%↓),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일시 상환 → 3년거치 2년 균분 상환)
-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 원금 상환 유예로 축산인 경영 부담 완화
 - 대상자 / 금액 : 128호 96억원(NH 농협 121/88, 광주은행 7/8)
 - 유예기간 : 1년간('22.9.1~'23.8.31.상환 → '23.9.1~'24.8.31.상환)

□ 전국 최초, 꿀벌 피해농가 긴급 대책(도 예비비 지원 등) 추진

- '21~'22년 월동기 꿀벌 미 귀소 피해 발생에 따른 생산기반 조기 회복을 위해 꿀벌 입식비 등 184억원(1,200호) 긴급 지원
 - 꿀벌 구입비 140억 원(예비비, 3월), 기자재 구입비 24억 원, 방역약품 20억 원 등

□ 전국 최초,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으로 농가 소득향상 기여

- 송아지 브랜드 참여 확대 : '21) 13개 시·군 → '22) 14개 시·군
- 전남 한우 암소 선발(10,944두),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선발(12,508두)
- ⇒ '전남 으뜸한우' 선발로 마리당 평균 40만원 농가 소득 증대(년간 12억원)
- ※ 으뜸한우송아지 선발로 연간 약 190억원/연 경제효과 발생

□ 사료가격 상승 대응, 2023년 신규사업 발굴 등 선제적 대처

- 생산비 절감 등 경영 안정대책 신규 사업비 확보(7개사업 73억원)
- 전국 유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 이자 지원(24억원),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 등 5개사업(45억원),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4억원)

□ 축산분야 2023년도 공모사업 최다 선정

-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모 전국 최다 선정(4개사업 321억원)
- 가축분뇨 에너지화(담양, 196억원),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영광, 20억원), 축산악취개선(3개 시·군, 90억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1개소, 15억원)
- 국내산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공모 선정
-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설치·보완사업 : 2개소 39억원
- 미래 대응 축산분야 연구사업 국비 확보
- 2025년 축산 현안대응 기술 고도화 등 : 3개사업 48억원(5개 과제)

□ 전국 한우경진대회 지자체 종합우승, 대통령상 등 최다 수상

-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등 한우 개량성과, 전남산 한우 대한민국 최고 한우 입증 전국대회에서 명품으로 인정받아 최고상 수상
- 전국 한우경진대회(생축) : 대통령상(그랜드챔피언) 등 6점
-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축산물) :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 등 3점

※ 중앙부처 수상 : 5개분야 13점 수상(대통령상 등)

- 전국한우경진대회 대통령상(박지환) 등 6점,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 등 3점 수상, 축산물 품질경가상 수상,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영대회(농협상),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평가(최우수)

※ 내부평가 : 6개분야

-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장려상, 정부합동 평가 목표달성, 청렴 마이리지 제도 부서 평가(최우수), 조직문화 우수부서 선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TOP10(선정)

환경친화 축산농장 확대 및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축산물 품질 고급화·차별화로 축산농가 소득안정 도모

◆ 깨끗한농장 3년 연속 1위(전국 26% ⇨ 27), 유기·무항생제 인증 5년 연속 1위(전국 25% ⇨ 30)

◆ 축산업 생산액 : '20) 2조 8천억 원 ⇨ '21) 3조 5천억 원 ⇨ '23) 4조 원 ⇨ '26) 5조 원

①

깨끗한 축산농장 등 환경친화 축산 실천

□ 환경친화 축산농장 육성 확대

- (필요성) 최적 사양관리 및 생산성 향상 위한 가축사육 환경개선
- (추진방향)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 및 친환경 축산 등 인증 농가 확대로 환경친화 축산농장 집중 육성
 - 축산 ICT(200호, 110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50호, 157억 원), 녹색축산육성기금(100호, 200억 원)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2,000호), 녹색축산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2,350호) 등 50억 원
 - ※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24년 농식품부 공모 참여) : 1개소(10~15ha), 800억 원

□ 악취저감을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필요성)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한 분뇨 적정처리시설 확충
 - 분뇨 발생(년) : '18.) 633만톤 → '19.) 609 → '20.) 641 → '21.) 653 → '22.) 612
 - 악취 민원*(년) : '17.) 473건 → '18.) 481 → '19.) 752 → '20.) 735 → '21.) 869
 - * 타 도('21) : 경남 3,615, 충남 2,752, 제주 1,867, 경기 1,466, 전북 1,037, 경북 975, 충북 481, 강원 364
- (추진방향) 악취저감시설 지원, 가축분뇨 개별 및 공동처리시설 확충
 - 분뇨처리 : 농가 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3개 사군, 90억 원)
 - 공동처리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1개소, 15억 원), 액비 수집·운반·살포 장비(4개소, 8억 원)
 - 악취저감 : 미생물제 공급(1.6천톤, 79억 원), 악취저감시설(50개소, 15억 원)

□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저메탄 사료 공급으로 탄소중립 선도

- (필요성) 축산분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량(38%, 9.4백만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 (추진방향) 사육방식 개선, 저메탄 사료 보급 확대, 가축분뇨 자원순환 및 에너지화를 통한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탄소 배출량 저감
 -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22~'23, 180억 원), 에코프로바이오틱스 활성화('23~'24, 20억 원^{1개소})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22~'25, 310억 원^{2개소})

②

축산물 품질 고급화 등 축산 경쟁력 강화

□ **전남산 한우 개량 촉진 및 가격 안정 대책 추진**

- (필요성) 우량 송아지 생산·선발 등 브랜드 육성을 통한 차별화,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안정 대책 추진
- (추진방향) 한우 개량 가속화 지원, 한우 사육 두수 조절 및 소비 촉진
 -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14 → 15개 시·군, 28억 원), 한우등록 등(2종 24억원) 암소감축사업 농가 자발적 참여 유도(29만두 → 27, 2만두 감축^{자능력우})
 - 지역농·축협 등 할인판매 연장(설 → 4월) 및 대형급식업체(학교, 한전 등 공공기관) 소비 협조

□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 (필요성) 사료비 상승 대응 등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 요인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 확대
- (추진방향) 축산 농가 경영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사업 신규 지원
 - 전국 유일, '22년 사료구매자금 대출 무이자(1%) 지원(3,000호, 24억 원), 가축 사료효율 개선 등(5개 축종, 45억 원)

□ **안정적인 고품질 조사료 이용 확대**

- (필요성) 사료비 절감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40~60%)이 높아 사료비 절감이 경영안정의 핵심
- (추진방향)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국내산 조사료 이용 증진 시설 확대
 - 조사료 가공·유통시설(2개소, 39억 원), 조사료(볏짚) 스팀 가공장비(70대, 5억 원)
 - 사료작물 재배면적(49천ha → 60천ha), 전문단지 확대(41개소, 16천ha → 44개소, 16.5천ha)

□ **축산분야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경영안정**

- (필요성) 경쟁력 있는 틈새 가축 육성에 필요한 생산 인프라 확충, 각종 사고와 질병 대비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
- (추진방향) 흑염소·승마·곤충·반려동물 등 미래 소득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 및 자연 재해 예방에 선제적 대응
 - 곤충 산업화(2종, 8억 원), 꿀벌(3종, 30억 원), 말(5종, 32억 원), 직영 동물보호센터(3개소 8억원), 보호센터 운영(5천마리, 10억원), 재해보험(2.5천호, 100억 원), 스트레스완화제(3천호, 17억 원)

3

축산업 현황

□ 2021년 농림업 중 축산물 생산액

- 전국 : 농업 생산액 61조 3,934억원 중 축산물은 24조 5,748억원(40% 점유)
 - 농산물 : 34조 6,423억원(56.4%), 임산물 : 2조 1,763억원(3.5%)
- 전남 : 전국 축산물 생산액 24조 5,748억원 중 3조 4,990억원(14.2% 점유)

□ 축종별 생산액(전남)

(단위 : 억원)

구분	'16	'17	'18	'19	'20	'21	전년대비 증·감	
							금액	증감율
계	23,578	25,995	27,422	28,093	27,960	34,990	7,030	25.1%
한육우	6,891	6,580	7,281	7,890	9,344	10,771	1,427	15.3%
젖소	1,580	1,535	1,557	1,758	1,660	1,614	△46	△2.8%
돼지	7,346	7,705	6,976	6,968	7,608	9,205	1,597	21.0%
닭	4,163	5,408	4,894	4,099	4,561	5,571	1,010	22.1%
오리	3,598	4,767	6,714	7,378	4,474	6,914	2,440	54.5%

□ 축종별 현황(道 전국 점유율 14%)

구분	'18	'19	'20	'21	'22	전국대비
한육우(천두)	503	532	564	601	633	17%(2위)
젖 소(천두)	30	30	30	29	28	7%(5위)
돼 지(천두)	1,109	1,165	1,177	1,207	1,194	11%(6위)
닭(백만수)	21	19	22	21	21	12%(5위)
오 리(천수)	4,549	4,543	4,360	3,769	3,641	61%(1위)

□ 가축사육 현황(상위 시군)

순위	전체	한육우(두)		젖소(두)		돼지(두)		닭(천수)		오리(천수)	
1	나주	장흥	62,429	나주	6,641	무안	131,217	영광	6,279	영암	1,367
2	영암	영암	61,306	영암	3,292	나주	125,640	나주	6,256	나주	1,313
3	함평	나주	57,681	순천	3,138	함평	83,287	함평	4,184	장흥	651
4	무안	해남	55,446	영광	2,069	영암	47,015	영암	3,990	구례	553
5	영광	함평	52,048	보성	1,719	화순	42,428	무안	2,897	강진	391

4

발전 목표

□ 고품질 축산물 생산 확대		(2022)	→	(2023)
○ 전업규모		5,014호	→	5,400호
○ 축종별	- 한육우 (50두 이상)	3,917	→	4,200
	- 젖 소 (50두 이상)	258	→	270
	- 돼 지 (1천두 이상)	309	→	350
	- 닭 (3만수 이상)	253	→	280
	- 오 리 (5천수 이상)	258	→	280
○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75%	→	80%
○ 모든 1두당 연간 출하두수		19두	→	20두
□ 환경친화 축산 기반 확충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확대(누계)		1,769호	→	2,000호
○ 녹색축산육성기금 지원(누계)		837호	→	900호
○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누계)		1,750호	→	1,850호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누계)		16천ha	→	17천ha
○ 한우등록		150천두	→	180천두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누계)		3개소	→	5개소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누계)		1,585호	→	1,900호
○ 녹색축산농장 지정(누계)		415호	→	450호
○ 무허가 축사 적법화(누계)		4,411호	→	4,500호
□ 미래 성장산업				
○ 곤충 사육농가(누계)		171호	→	200호
○ 양봉 전업농가 육성(누계)		978호	→	1,000호
○ 말 사육두수 확대(누계)		840마리	→	900마리
○ 반려동물 등록(누계)		94천마리	→	100천마리

5

2023년 축산사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2023년 사업비					2022년 사업비
			계	국	비	도	비	
합		59개 사업	302,319	46,612	18,588	82,745	154,374	504,030
축산 정책 (1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50호	15,664				15,664	22,400
	녹색축산육성기금	2종	20,400				20,400	20,400
	축산분야(한우) ICT 융복합사업	210호	11,000	3,300	90	450	7,160	12,500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2,500호	10,000		750	2,250	7,000	6,000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15개사군	2,800		1,400	1,400		2,800
	한우 등록 지원	150천두	1,050		210	840		840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	20,000개	1,400		252	588	560	1,111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	700호	1,400		280	700	420	신규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	5,340개	480		72	168	240	601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	3,000호	1,280		256	1,024		1,000
	축사지붕 열차단재 도포	240호	480		72	264	144	600
	환경친화형 으뜸한우 생산·육성시설 지원	1개소	200		100	40	60	신규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지원	1개소	2,600		1,300	780	520	신규
	국제농업박람회 환경친화 축산관 운영	1식	64		64			-
동물 복지 (10)	학교우유급식 지원	22,220명	2,666	1,600	266	800		12,912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	100천명	8,640		1,728	6,912		신규
	동물보호·복지대책 지원	6종	2,842	678	48	1,957	159	4,348
	동물보호센터운영비 지원	5,000마리	1,000		200	800		750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5,000마리	150		45	105		150

사 업 명		사업량	2023년 사 업 비					2022년 사업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동물 복지 (10)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	2,000호	4,000			1,000	3,000		4,000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100호	1,000			150	450	400	1,000
	동물복지 축산컨설팅	7개소	70	28			21	21	130
	젖소 개량(등록·심사) 지원	4,000두	80			24	56		100
	낙농 환경(질병) 개선	2,500회	500			100	250	150	500
축산 경영 (13)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0종	90,364	31,066	2,740	37,909	18,649		86,977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설치	1개소	9,000	2,700	650	2,550	3,100		9,000
	조사료(볏짚) 스팀 가공장비 지원	70대	462		69	162	231		462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	3,000호	2,400		720	1,680			신규
	농가 사료구매자금	1,000호	60,000				60,000		273,357
	축산물이력제사업	183천두	1,780	890	275	615			1,738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1개소	1,800		900	540	360		1,400
	한우 경진대회 및 축산인 한마음대회	1회	100		50	50			40
	축산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3개소	300		60	90	150		신규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 활성화	2개소	160		80		80		160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지원	1회	40		40				40
	꿀별 산업 육성	2종	3,000		600	900	1,500		2,330
	말별 퇴치장비 지원	60호	71	21		21	29		71

사 업 명	사업량	2023년 사 업 비						2022년 사업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축산 자원 (22)	가 축 분 뇨 처 리 지 원	5종	16,754	5,527	324	3,435	7,468	15,065
	축산농장 악취저감 시설	50개소	1,500		150	750	600	1,500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1,584톤	7,920		990	3,894	3,036	6,600
	퇴비 부숙촉진 지원	65개소	1,950		195	585	1,170	1,950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1,250호	2,500		250	1,000	1,250	1,500
	젓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	150호	750		150	375	225	신규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	4개소	800		300	260	240	800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120톤	1,200		162	678	360	1,200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200호	1,000		150	450	400	1,000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	80대	560		84	196	280	560
	돼지 모든 분만을 향상 지원	40호	400		60	140	200	신규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	160호	800		120	360	320	신규
	닭 증체율 향상 지원	150호	750		150	375	225	신규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	150호	750		150	375	225	신규
	가금류 칼슘첨가제	900톤	1,080		162	702	216	1,080
	곤충사료첨가제	18톤	180		25	101	54	180
	염소생산성 향상 지원	800호	400		80	320		400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500두	280		50	118	112	224
	말 산업 육성	5종	2,048	622	233	628	565	3,300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 구제	3,780set	454		68	295	91	454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80호	400		72	168	160	500
	곤충산업화 지원	1개소	600	180	72	168	180	-

업 무 명	기 준	'23년 달라진 점								
<p>축사시설 현대화사업</p>	<p>II.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p> <table border="1" data-bbox="400 640 863 775"> <tr> <td>1순위</td> <td>○ (생략) ○ (신설)</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400 786 863 958"> <tr> <td>2순위</td> <td>○ 가~다 (생략) ○ 라) 동물복지형 축사(산란계에 한함)를 설치하는 경우 ○ 마~타) (생략)</td> </tr> </table>	1순위	○ (생략) ○ (신설)	2순위	○ 가~다 (생략) ○ 라) 동물복지형 축사(산란계에 한함)를 설치하는 경우 ○ 마~타) (생략)	<p>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p> <table border="1" data-bbox="900 640 1426 775"> <tr> <td>1순위</td> <td>○ (생략) ○ <u>모돈이력제에 참여하는 양돈농가</u></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900 786 1426 958"> <tr> <td>2순위</td> <td>○ 가~다 (생략) ○ 라) 동물복지형 축사(산란계 <u>축사</u>, <u>임신돈 군사시설</u>)를 설치하는 경우 ○ 마~타) 생략</td> </tr> </table>	1순위	○ (생략) ○ <u>모돈이력제에 참여하는 양돈농가</u>	2순위	○ 가~다 (생략) ○ 라) 동물복지형 축사(산란계 <u>축사</u> , <u>임신돈 군사시설</u>)를 설치하는 경우 ○ 마~타) 생략
1순위	○ (생략) ○ (신설)									
2순위	○ 가~다 (생략) ○ 라) 동물복지형 축사(산란계에 한함)를 설치하는 경우 ○ 마~타) (생략)									
1순위	○ (생략) ○ <u>모돈이력제에 참여하는 양돈농가</u>									
2순위	○ 가~다 (생략) ○ 라) 동물복지형 축사(산란계 <u>축사</u> , <u>임신돈 군사시설</u>)를 설치하는 경우 ○ 마~타) 생략									
<p>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p>	<p>II.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 <p>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p> <table border="1" data-bbox="400 1581 683 1637"> <tr> <td>지자체</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매달 수시로 모집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table border="1" data-bbox="400 1805 695 1861"> <tr> <td>경 영 체</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현황, 사육 현황, 사업 계획, 정보활용 동의서 등이 담긴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으로 제출 	지자체	경 영 체	<p>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u>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건축허가</u>를 받고 <u>착공신고를 마친</u>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p>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p> <table border="1" data-bbox="900 1581 1182 1637"> <tr> <td>지자체</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매달 수시로 모집하고 <u>그 명단 및 제출된 서류를</u>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table border="1" data-bbox="900 1805 1182 1861"> <tr> <td>경 영 체</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현황, 사육현황, 사업계획, 정보활용 동의서 등이 담긴 사업계획 신청서와 <u>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u> 준비해 시·군으로 제출 	지자체	경 영 체				
지자체										
경 영 체										
지자체										
경 영 체										

업 무 명	기 준	'23년 달라진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p>* 단,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 및 컨설팅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말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스마트팜 코리아(농정원 운영)에 등록된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ICT 장비 지원 - 개체관리 S/W, PC, CCTV, 발정감지장비, 축사환경제어장비(컨트롤박스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스마트팜 코리아(농정원 운영)에 등록된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2개 이상 ICT 장비 지원 - 개체관리 S/W, PC, CCTV, 발정감지장비, 분만알림장비, 축사환경제어장비(컨트롤 박스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내, 단일장비 도입 농가보다 지원 장비를 2개이상 동시(개체관리 S/W, CCTV, 발정탐지기, 환경제어장비)에 도입하는 농가 우선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선정 - 지원 장비를 2개이상 동시(개체관리 S/W, CCTV, 발정탐지장비, 분만알림장비, 환경제어 장비)에 도입하는 농가만 선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공급·설치 - PC, CCTV 등 범용장비는 기업정보 등록 완료 시 지원 가능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55%, 자담 30%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700호 - 사업비 : 1,400백만원(농가당 2백만원) - 사업내용 : 한우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사업비 - 15,873개/1,11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사업비(증가) - 20,000개/1,4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18. 12. 31.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100두 미만 한우·젖소 사육 농가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확대) - '20. 12. 31.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150두 미만 한우·젖소 사육 농가 ※ 단, 축산업 신규 허가등록 농가가 '20. 12. 31. 이전 축사임을 증빙(건축물대장 등)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업 무 명	기 준	'23년 달라진 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제외) - ① 자연종부 농가 ② 축산법 제 22조(축산업의 허가 등) 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한 정액이 아닌 미허가업체에서 생산한 정액을 구입하여 인공수정하는 농가
	가.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된 '전남 으뜸한우·으뜸한우 송아지' 관리 기준 - 선발된 '전남 으뜸한우'는 지정 후 13개월간 해당 농가에서 사육 	가.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된 '전남 으뜸한우·으뜸한우 송아지' 관리 기준 - 선발된 '전남 으뜸한우'는 지정 후 해당 농가에서 사육
	<신설>	<붙임 1> 한우 유전체 검사 시행지침 다. 사업시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검사)두수는 가급적 가임암소의 최소 40%이상 실시하고, 가임암소가 20두 미만이면 대상두수 50%이상 분석 추진 (최소 10두 이상 추진)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	○ 동물등록 지원 마리수 : 3마리	○ 지원 마리수 변경 : 5마리
반려동물 안전관리	○ 맹견소유자에 대해서만 관리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등 없이는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의무 부과, 사고 시 처벌*(23. 4) * 의무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사고 발생 시 최대 징역 3년/ 3천만원 ○ 안전조치 지역(준주택) 추가(23. 4)
동물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상해·죽음 시 학대 인정 ○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실제 선고 낮음) ○ 형벌 외 가능한 처벌조치 없음 ○ 학대신고 시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3일이상 격리 및 치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의무 위반으로 죽이는 행위를 학대로 명시 ○ 학대행위자 수강·이수명령 도입(23. 4) ○ 피학대동물 소유자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 학대신고 시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5일이상 격리 및 치료·보호(23. 4) ○ 학대행위자에 형벌과 함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23. 4)

업 무 명	기 준	'23년 달라진 점
반려동물 영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허가제는 생산업만 해당 - 영업 8종, 허가 1(생산업), 등록 7개 * 수입·판매·장묘·위탁·전시·운송·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수입·판매·장묘업 허가제로 전환(23. 4) - 영업 8종 : 허가 4(생산·수입·판매·장묘업), 등록 4(위탁·전시·운송·미용) ○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23. 4) * 반려동물 수입신고 시 신고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동물사용 금지 및 반려동물 판매 등 표시광고 시 영업허가번호 표시 의무화 ○ 동물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신고제 도입(2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이 약하며, 처벌 외 불법영업 중지 조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무등록 영업 시 처벌기준* 강화(23. 4) * (무허가)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무등록)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 영업장 폐쇄조치 도입(23. 4)
동물 장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장묘업에서 사체처리 시 지자체 신고 의무화(23. 4)
민간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보호시설 관리기준 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보호시설 신고제* 도입(20마리 이상) 및 시설·운영기준 마련(23. 4) * 2년 유예기간 부여 ○ 보호동물에 대한 인력기준 신설(23. 4) - 20마리당 1명 이상 인력 확보 ○ 소유자의 동물 양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물인수제 도입(23. 4) * 6개월이상 장기입원 요양, 병역복무, 재난으로 인한 주택파손 등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 2백만원/호 ○ 출하장려금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1백만원/호 ○ 지정장려금 지원 - 녹색축산농장 2백만원/호 - 유기·동물복지축산농장 각 1백만원/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비 지원(확대)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 2백만원/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비 500천원/호 ○ 출하장려금 지원(확대) - 무항생제축산물 1백만원/호,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인증 3백만원/호 ○ 지정장려금 지원(축소) - 녹색축산농장·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각 1백만원/호 ○ 장려금(출하, 지정) 지급 제외(신설) - 장려금 지급대상 농가 중 주요기축전염병(구제역, 소브루셀라, 소결핵, ASF, AI) 발생농장에 대해 전염병 발생 이후 연속 2회 장려금 지급 제외

업 무 명	기 준	'23년 달라진 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기타 ○ 급식일 : 250일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일 판단기준 : 학기중은 등교일, 방학중은 방학 전(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 급식일 : 250일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일 판단기준 : 학기중은 등교일, 방학중은 가정배송으로 인하여 여름방학 24일, 겨울방학 48일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 (도 자체)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초등학생,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 급식일 : 190일 내외(학기중 등교일)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량 : 3,000농가 - 사 업 비 : 2,400백만원 - 지원대상 : '22년 사료구매자금 대출 실행농가 - 사업내용 : 사료구매자금 대출이자(1%) 지원
꿀벌산업 육성사업(양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 내 주소는 둔 양봉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시행일 이전 전라남도 내 주소를 두고 양봉등록을 완료한 농가·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 12만원/군
꿀벌산업 육성사업(한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 내 주소는 둔 양봉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시행일 이전 전라남도 내 주소를 두고 양봉등록을 완료한 농가·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봉 사육 기자재 : 농가당 3백만원 이내 - 토종별 입식 : 농가당 3백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봉 사육 기자재 : 농가당 5백만원 이내 - 토종별 입식 : 농가당 5백만원 이내 - 지원기준 : 13만원/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저항성 토종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에서 SD저항성 토종별로 확인된 농가로부터 구입 · 위 농가로부터 SD저항성 토종별을 분양받아 도서지역(섬, 산맥으로 분리) 또는 반경 3km내 토종별 농가가 없는 농가의 토종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종별 입식비

업 무 명	기 준	'23년 달라진 점
축산 약취저감제 공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1,320톤 - 사업비 : 6,6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및 사업비(확대) - 사업량 : 1,584톤 - 사업비 : 7,920백만원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750호 - 사업비 : 1,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및 사업비(확대) - 사업량 : 1,250호 - 사업비 : 2,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한도) -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인증농장,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지정 한우농가(농가당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한도) - 일반 한우농가(농가당 2백만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한우농가(농가당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품목 -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품목(확대) -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및 왕겨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150호 - 사업비 : 750백만원(농가당 5백만원) - 사업내용 : 젖소 분뇨 발효촉진제 지원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160호 - 사업비 : 800백만원(농가당 5백만원) - 사업내용 :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닭 증체율 향상 지원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150호 - 사업비 : 750백만원(농가당 5백만원) - 사업내용 : 닭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150호 - 사업비 : 750백만원(농가당 5백만원) - 사업내용 : 오리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업 무 명	기 존	'23년 달라진 점
돼지 모든 분만을 향상 지원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40대 - 사업비 : 400백만원(1대당 10백만원) - 사업내용 : 모든 자동 자극기 지원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400호 - 사업비 : 22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및 사업비 (확대) - 사업량 : 500호 - 사업비 : 280백만원(농가당 56만원)

- 모든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사육밀도 개선 확인 시점부터는 선정 가능)
-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련법령 준수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안) 작성 및 선정위원회 심의 대상자 선정 결과 공개 등 준수
 - 도 및 시·군의 사업대상자 선정 전 추진된 실적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대상으로 추진할 수 없음(사업비에 미포함)
 - * 사업대상자 선정전 추진여부를 현지 출장 확인 후 이미 완료한 경우 사업대상자 제외 등 조치 [규정 제39조 제②항]
 - 보조사업 전용통장 개설 원칙, 자부담 입금확인 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자부담 우선 집행) * 기성고 집행(보조, 용자)
 -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 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자금인지등의 여부를 사업대상자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거래내역도 제출 받을 것
 -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사업대상자에게 반환이 확인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사업지원 제한조치 등 이행
 -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집행 [규정 제28조]
 - *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전용카드, 기타증빙자료 등록 후 지출
 -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 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불인정
 - * 다만, 연간사업비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1/6한도내에서 직접 노무비 지급 가능 - 시군승인사항(사업대상자, 직계존·비속 중 1인에 한함)
 - 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 시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발부받아 관할 등기소에 부기 등기 후 시·군에 제출
 - 기타 보조금에 관한 중요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준하여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09호, 2018.12.27. 일부개정」
 - * 축발기금보조, 균특, 국비 보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따르고, 도비보조사업도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지침에 보완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 관련 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
 - * 사업완료 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지원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보조금에 관한 중요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준하여 추진

【사례 : 지역체험장 건설사업 사업비 1,00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① 정산시 환급금 공제

- * 정산 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및 환급을 완료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비에서 공제하여 정산
 - ▷ 적용 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91백만원이 발생한 경우, 보조분 45.5백만원은 불용(반납)조치
 - ⇒ 회계연도내 환급신청 및 환급완료가 어렵고 향후 환급금에 대한 반납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최대 환급금에 해당하는 보조금 45.5백만원은 이월 후 정산 추진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투자(총사업비 확대)

- * 보조사업자와 협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최대액인 91백만원을 추가 자부담토록 하여 1,091백만원 사업 추진
 - ▷ 적용 예) 사업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사업자에게 전액 귀속
 - ⇒ 당초 : 총 사업비 1,000백만원(보조 500, 자부담 500)
 - ⇒ 변경 : 총 사업비 1,091백만원(보조 500, 자부담 591, 환급금 0)

③ 사업완료 후 환급금 반납

-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여부 및 환급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국고 반납 처리
- *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완료 및 정산 후 이월이 많아 일정 부분 불가피

□ 기타 유의사항

- 동 규정은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이므로 환급신청 및 환급금 정산도 보조사업비로 한정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 * 따라서, 환급금을 사전에 추정하여 최초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환급금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은 가급적 지양

8

사업별 지원 대상 축종

* 해당축종 ○

사업명		사업량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염소	사슴	곤충	축산 업체	기타	
합 계		57개 사업	25	23	22	20	20	16	15	9	12	16	
축산 정책 (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50호	○	○	○	○	○	○	○			양봉 등	
	녹색축산육성기금	2종	○	○	○	○	○	○	○	○	○	○	
	축산분야(한우) ICT 융복합 사업	210호	○	○	○	○	○		○	○		양봉· 말등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2,500호	○	○	○	○	○	○	○			양봉· 말등	
	한우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	20,000개	○	○									
	폭염대비고온스트레스 완화	3,000호	○	○	○	○	○					양봉 등	
	축사지붕열차단재도포	240호	○	○	○	○	○	○	○			○	
	한우등록지원	150천두	○										
	한우송아지브랜드육성	15개사군	○										
	한우증체율향상지원	700호	○										
친환경해충퇴치장비지원	5,340개	○						○					
환경친화형으뜸한우 생산·육성시설지원	1개소									○			
동물 복지 (10)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2,000호	○	○	○	○	○	○	○			매추리 등	
	동물복지형녹색축산농장육성	100호	○	○	○	○	○	○					
	동물복지축산컨설팅	7개소	○	○	○	○	○	○					
	동물보호센터운영비지원	5,000마리										○	

사 업 명		사업량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염소	사슴	곤충	축산 업체	기타
동물 복지 (10)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5,000마리										○
	동물보호·복지대책 지원	6종										○
	학교우유급식 지원	22천명										○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	100천명										○
	낙농 환경(질병) 개선	2,500회		○								
	젓소 개량(등록·심사) 지원	4,000두		○								
축산 경영 (13)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0종										○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	2개소									○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설치	1개소									○	
	조사료(볏짚) 스팀 가공장비 지원	70대	○	○								
	사료구매자 이차 지원	3,000호	○	○	○	○	○	○	○	○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 활성화	2개소									○	
	축산물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3개소									○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1개소									○	
	축산물 이력제 사업	183천두	○	○								
	농가 사료구매자 금	1,000호	○	○	○	○	○	○	○	○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지원	1회									○	
꿀별 산업 육성	2종									양봉		
말별 퇴치장비 지원	60호									양봉		
축산 자원 (22)	가축분뇨처리 지원	5종	○	○	○	○	○	○	○		○	○
	축산농장 악취저감 시설	50개소	○	○	○	○	○	○	○		○	

사 업 명		사업량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염소	사슴	곤충	축산 업체	기타
축산 자원 (22)	축산 약취저감제 공급	1,584톤	○	○	○	○	○				○	
	퇴비 부숙촉진 지원	65개소	○	○	○	○	○	○	○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1,250호	○									
	젓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	150호		○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	4개소									○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120톤			○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200호			○							
	출하 돼지 체중 측정 영상 장비 지원	80대			○							
	모든 분만을 향상 지원	40호			○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	160호			○							
	닭 증체율 향상 지원	150호				○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	150호					○					
	가금류 칼슘첨가제	900톤				○	○					
	곤충 사료첨가제	18톤				○	○					
	염소생산성향상 지원	800호						○	○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500두							○			
	말 산업 육성	5종									○	○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 구제	3,780set	○	○	○	○	○	○	○			○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80호	○	○	○	○	○	○	○			
	곤충 산업화 지원	1개소								○		

II. 주요사업 추진계획

축산정책팀 소관

1.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 성	044-201-2335
		주무관 이정은	044-201-2334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태원	061-286-6520
		담당자 오재철	061-286-6524

I. 사업개요

1. 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235,530	223,350	273,910	264,748	218,318	144,875
국 고	9,744	-	-	-	-	-
용 자	113,680	113,680	96,628	89,298	52,154	38,400
이차보전	65,000	65,000	122,500	122,500	122,500	77,500
자부담	47,106	44,670	54,872	52,950	43,664	28,975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②-③)
 -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 설치 주체
-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사업 대상자는 축종별 아래와 같음
 - (한우)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육우)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농가 ○ <u>모든이력제에 참여하는 양돈농가</u>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②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사' 항목) 우선 지원 ③ 그래도 순위가 동일할 경우 3순위에서 결정
<p>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p> <p>나)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 관련조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12조 및 「건축법」 제11조</p> <p>라) 동물복지형 축사(산란계 축사, 임신돈 군사시설)를 설치하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 완료('18.7.10일)</p> <p>마)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아닌 오리사를 설치하는 경우</p> <p>바) 당해년도(2년차 사업 포함)에 방역·방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 시설로 50백만원 이상을 지원받거나 총 지원액의 50%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 가축분뇨처리지원, CCTV등 방역인프라(CCTV, 방역시설, 말벌퇴치장비)를 포함</p>	

사)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없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 시·군·구에서 소송, 민원 등으로 인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 또는 2년차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검토

아) 스마트 축사로 신축·개보수 하면서 동시에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전문형에 한함)

- 다만, 단일 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는 3순위로 분류(일반형)하고, 축사 내·외부의 환경을 센싱·모니터링, 사료 자동 급이·음수기, 악취측정·저감장비 등을 동시에 도입(전문형)하여 생산성 향상과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군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자)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차)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 철새도래지* 3km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카)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된 농가

타) 남은 음식물사료를 급여중인 양돈농가에서('19.9.17이후) 일반사료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지자체가 농가별 지정 날짜('23.12월 이내) 이후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중단

3순위

- 2순위 선정 후 예산(지원액)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3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 3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하면 지자체에서 조기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관련조항 : 「건축법」 제23조,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나)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2순위가 아닌 일반형을 말함)

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환경친화축산농장인 경우

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마)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 바)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젓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 사)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
- 아) 공동자원화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농가
- 자) 과거 1년간('22.1.1일 이후) 돈사내 슬러리 제거사업에 참여한(선정된) 농가
- 차) 한센인 정착촌
- 카) 과거 2년간('21.1월~'22.12월) 사육제한 명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 또는 가축사육제한(휴업보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
- 타) 폭염, 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장비·자재를 설치할 경우

후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순위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농가는 후순위로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적은 경우 우선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지자체에서 자금집행 완료 시기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
------------	---

- 가) 신규, 이전,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부지는 확보했으나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나) 최근 3년('20~'22년)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징역,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이 확정된 농가
 - * 해당 농가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가 아닌 지원 제외 농가로 적용
- 다)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는 농가(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에 한함)
 - * '22.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20~'22년)

일괄 예산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일괄 예산배정 * 다만, 예산 배정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	--

< 지원 제외 >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 및 철새도래지 3km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주요 축산시설 3km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¹⁾하는 경우
- 종계·종오리 농가간 거리 10km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종계·종오리 축사를 건축²⁾하는 경우
 - * 1), 2) : 「축산법」에 따라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증축 등 축산법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남은음식물사료를 돼지에 급여하여 사육하는 양돈농가
- '20.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취방지법」, 「약사법」
 -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 다만, 가축질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가능(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시 지원이 필요한 사정과 지원제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대상자가 지원제외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원제외 사유 및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지원 제한 기간
 -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 '20.1.1일 이후 축산관련 인증·지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지원 제외
 - * 다만, 사업대상자가 인증·지정을 자진 취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대상 인증·지정 :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

「동물보호법」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

- 과거 3년간('20.1.1일 이후) 다음 년도로 지원액의 3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에 따른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가금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 사업 완료 시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부여받은 이행 기간까지 자금 회수를 유예할 수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과거 3년간('20~'22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 「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최종 70% 이상 불용한 경우
 - 다만, 국책·공공 사업, 토지수용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 신규, 이전,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부지를 확보 또는 변경해야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과거 2년간('21.1월 이후) 고병원성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2.1월 이후)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의 개축, 개보수, 시설 교체는 농장전체가 「축산법」의 허가·등록 기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 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 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축사냉난방기,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왕겨자동살포기, 왕겨창고
 - (양돈) 자동 인큐베이터,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 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 자동보행기, 말 수송 트레일러 등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벽 단열재, 차열페인트), 열풍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 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새 그물망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창고), 물품저장고(창고), 사무실 등
 -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 시설, 퇴비사 등 포함)
 - 악취저감시설 :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ICT악취측정기 등 포함)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냉동고 포함), 사료배합기, 축사청소 등을 위한 빗물 저장고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가축분뇨 저장조 등에서 농가 및 근무자의 질식사고 예방 장비 : 환기장치,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 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태양광·열(건축물에 설치),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 * 다만,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신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음
 - 다만,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소독·환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자,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 형태 >

- 중·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용자 80%, 자부담 20%
 -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소규모 농가에게 지원 가능
 - * 중·소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용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 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기타 가축은 통계자료, 현장확인 등으로 판단
- (사업기간) 1~2년
 - 부지 확보(변경)가 필요한 축사 신축·이전·증축 또는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년 사업으로 추진 가능
 - * (1년차) 인허가 등 공사 전 필요한 조치 완료 → (2년차) 사업착공
 - * 다만, 시·군에서는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이미 완료하는 등 당해 년도에 사업 완료 및 자금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는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 (사육밀도) 0.05㎡/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 그 외 축산업(축종)은 향후 「축산법」 개정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축사의 신축·재축·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며, 악취 기준 초과시 악취를 저감해야 함(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민원 없었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축산환경관리원의 악취저감 컨설팅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금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지자체 확인 사항 :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시설 설치 여부

- ① 지원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 ②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③ 사업 완료 후, 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 ① 기존 원종축장의 확대 또는 종축장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전문 종축장 체계화'(원종축장 +종축장)를 하려는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
-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 ④ 광역 약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만, 지자체 단위 사업이라도 개별농가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면적 상한을 적용)

< 지원액 산정 기준 >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 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의 경우, 지원대상 면적 및 상한액에 참여농가 수를 곱한 값을 최대 지원 면적 및 상한액으로 봄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 및 유기축산물 인증 축사시설을 설치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 지원단가 상향(예시) : 산란계 720천원/㎡ → 792, 육계 360천원/㎡ → 396
 - * 상한액 상향(예시) : 산란계 3,600백만원 → 3,960, 육계 1,800백만원 → 1,980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FTA기금 사업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사업규모 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나, 최대상한액 이내에서 지원
 - * FTA기금 사업대상자가 이차보전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중·소규모)		이차보전(대규모)		
		지원 대상 면적(m ² ,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m ² ,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380천원/m ²	110~1,728	657백만원	1,728~4,320	1,642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967천원/m ²	265~2,880	2,785백만원	2,880~7,200	6,962백만원	
양 계	육계 (토종닭 포함)	662천원/m ²	460~4,500	2,979백만원	4,500~11,250	7,448백만원
	중계 (토종중계 포함)	680천원/m ²	915~7,425	5,049백만원	7,425~16,500	11,220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684천원/m ²	100~810 (16~135)	1,364백만원 (227백만원)	810~1,800 (135~300)	3,031백만원 (505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1,182천원/m ²	420~4,500	5,139백만원	4,500~11,250	13,298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662천원/m ²	820~6,300	4,171백만원	6,300~14,000	9,628백만원
	종오리	680천원/m ²	555~4,496	3,057백만원	4,496~9,990	6,793백만원
	오리 부화장	1,684천원/m ²	33~270	455백만원	270~675	1,137백만원
낙농	380천원/m ²	213~1,800	684백만원	1,800~4,500	1,710백만원	
양봉	883천원/군	30~270군	238백만원	270~600군	530백만원	
사슴 (엘크)	380천원/m ²	150~1,215 (200~1,656)	462백만원 (629백만원)	1,215~2,700 (1,656~3,680)	1,026백만원 (1,398백만원)	
양과 흑염소	456천원/m ²	165~1,337	610백만원	1,337~2,970	1,354백만원	
말	648천원/m ²	50~234	152백만원	234~650	421백만원	
메추리	1,182천원/m ²	100~2,700	3,191백만원	2,700~6,750	7,979백만원	
토끼	732천원/m ²	70~945	692백만원	945~2,632	1,927백만원	

< 공통 사항 >

- ①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임
- ② 가금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형태를 말함)에 대한 최대 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 ③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

< 축종별 특이 사항 >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6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가금) 축사의 차단방역 시설·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가금 사육농가에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방역 시설·장비 지원 가능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담)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중·소규모 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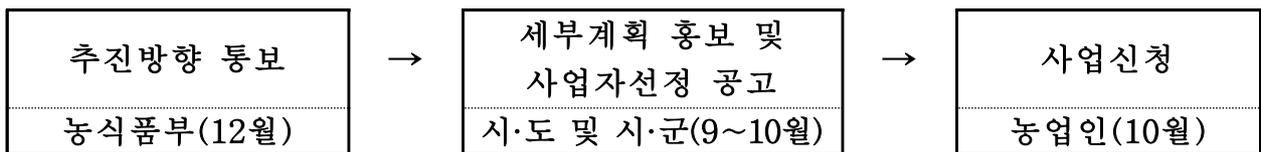
* 토종벌 농가에게는 개량형 벌통을 지원

(말) 말 수송 트레일러(별도의 차량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는 규모와 관계 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9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9월)

-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10월)

- 전문 종축장은 <서식 1-2>에 따라 사업신청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가금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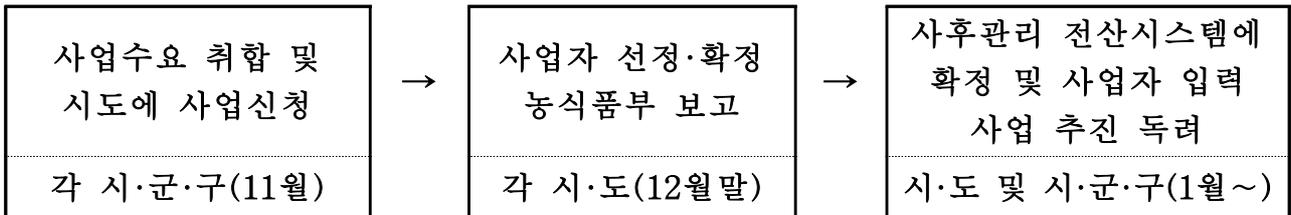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독·방역 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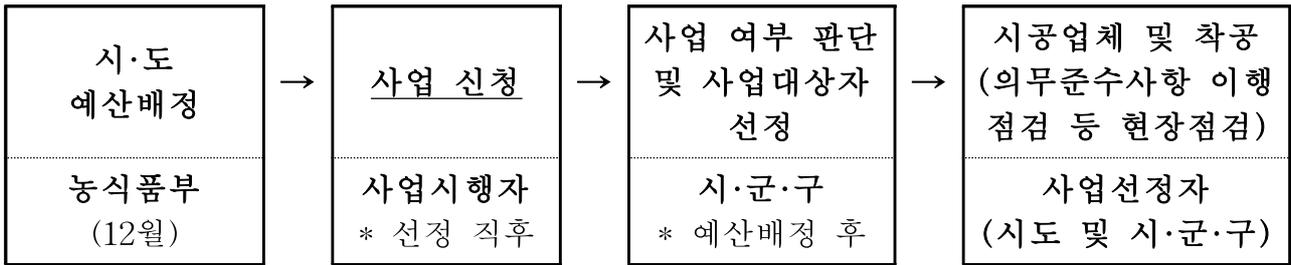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시·도에 사업 선정 내역 보고(11월)
 -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과거 악취민원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군·구가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12월)
 -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범위의 200%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 먼저 사업을 완료한 농가가 대출을 우선 실행하도록 하며, 당해연도 예산 부족 시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
-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12월말까지)
- 시·군·구는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교부 결정 확정(1월)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에 안내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대상농가가 있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악취관리 지원센터(042-822-9875)에 컨설팅을 의뢰

-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우수한 축산 기자재가 공급되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검증 기자재, 또는 농협경제지구 계통구매 등록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시·도 및 시·군·구 >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12월)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 지시
 - * 농가가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야 함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
 -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농가가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가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 농가가 6개월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민원 발생, 인허가 절차 보완 중)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군·구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취소 가능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지자체는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사업 대상자 >

- 각 사업대상자는 선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 지자체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교부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
 - 자금 배정 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 시·도 및 시·군·구 >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자금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사후관리 기간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 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통장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직접 집행 여부를 증빙
 -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 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연간 자부담 2억 이상(사업비 10억)의 공사로 기성고로 집행되는 공사의 경우 자부담의 50%까지만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매칭 집행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 거래 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 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 장비 구매 시 :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견적 및 거래명세 증빙 유지

< 대출취급기관 >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 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 각 시·군·구는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 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지도

- * 농가가 의무 방역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 중인지에 대해 집중 점검
-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지원농가에 대해 <서식 4>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5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1회 이상 시·도 담당 공무원 및 농협경제지주 담당자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 농식품부는 시·군·구의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적기 업데이트 여부, 사후관리 대상 농가에 대한 시·군·구 자체 현지점검 실적 등을 주요기준으로 점검대상 선정
- 농협경제지주는 축종·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명부 및 자금 대출실적 취합관리 및 농식품부 보고
 - 수혜농가 경영기록부 및 양돈·양계 전산기록부 제출여부 확인

6. 사후관리단계

- 각 시·군·구는 사후관리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사후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무 이행 미흡 또는 조사거부 농가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
- 점검 후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점검결과를 익년도 1월 말까지 취합하여 <서식 3>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방역·소독 의무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관심대상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다음 점검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적극 관리
- 농협(지역축협)이 지원농가 사후관리업무를 이행 하도록 적극 지도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기간
 - (사후관리 기간) 사업완료 후 용자대상자에 대한 용자금 상환시까지
 - * 변경된 사후관리 기간은 '19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하며, 국고보조로 지원된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는 해당연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 * 축산업이 농업법인(운영실적 1년 이내 포함)에 승계되는 경우 지원자금 승계 가능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담보설정)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담보설정하려는 농가는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 다만, 국비 보조 없이 용자로만 사업 추진한 경우 시·도 승인 불필요('09년~)
- (축종 변경)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 축사, 기계·장비 등의 활용 가능성, 변경 적정성, 판매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한 후 지속 사후관리
 - * 일부 시설·장비가 필요없어 판매 등 처분되는 경우 자금회수 등을 검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사업주관기관(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 필요한 경우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가능
- 평가시기 : '23년 1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4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시·도)으로부터 사업수요 조사('23년 하반기)

2. 202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3년 하반기에 통보되는 2024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향후 추가 공문을 통해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2.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 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태원 담당자 임경순	061-286-6520 061-286-6521

환경친화 축산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용자하여 친환경 축산 확대를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 및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

I. 추진방향

-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위한 자금의 저리 지원
- 친환경 축산 실천 및 도정 역점 시책 사업의 지원 확대
- 전업규모 미만의 영세 축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소규모 농가 보호

II.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지원규모 : 200억원
- 사업내용

① 시설자금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사업 등 친환경 축산 역점 시책 사업
- 축산 악취 제거, 가축 운동장 설치(부지 구입) 등 동물복지형 환경 개선 사업
-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지원
- 가공·유통시설 기존 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신규 설치에 사용하는 자금(단, 기존 시설물 구입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축사 시설 구입자금 지원(만 50세이하의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만 50세이하의 축산관련 고등·대학교 졸업자만 해당)

* 지원제외 : 가설건축물,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포함 무허가 축사, 정부 지원녹색축산육성기금 포함)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한 축사,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인 경우

※ 시설자금은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 사료배합기, 조사료생산 및 분뇨처리 기계·장비(차량 및 중고제품 제외), 가축·유통·판매 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기계·장비 구비 및 교체에 지원

② 운영자금

- 가공·판매·유통과 관련된 사업 중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 구입 자금 등
-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깔짚, 미생물제제 구입 자금 등
- 유기 축산물 생산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 농가법인의 인증 유지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 축산물 원료로 가축을 매입하는 경우 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 용자 지원 조건

구분	① 시설자금	② 운영자금
용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가금류<닭·오리> 30억원 - 그 외 가축·곤충 8억원 ※ 유기축산물인증 및 동물복지축산인증 1.2배이내 ○ 축산물유통업체·판매장개설자 30억원(축산물 판매장, 가공장 등 유통 시설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법인 4억원 ○ 축산물유통업체·판매장개설자 6억원 ※ 수출업체 2배이내
	※ 개인별 용자한도는 사업 신청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대출 이율	연리 1%	
상환 조건	2년 거치 8년 균분 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지급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시장·군수의 사업 추진실적(기성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지급 ○ 완공금 : 시장·군수의 사업 완료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 	

○ 지원형태 : 용자 100%

○ 용자 지원 기준

- 축사시설 ㎡당 지원 단가는 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단가 적용
- 유기 축산물 생산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 농가·법인의 사료구매자금은 농가 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단가 적용(사육마릿수를 마리당 지원단가 곱한 금액의 용자 한도내)
- 가축 운동장 설치(부지 구입) : 축사면적의 2배까지 지원(용자 한도 : 3억원 이내)
 - 지원금액 산출 : 운동장 구입 희망면적 X ㎡당 구입단가 * 울타리 등 필요시설은 실비 인정

※ 기 용자 수혜자의 경우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원 가능

○ 용자취급 : (주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시·군 지부), (주광주은행(전지점))

② 용자 지원 대상자

- 축산 관계 법령·도 조례에 의거 인증(지정)받은 농가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가(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전라남도)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축산물 HACCP 인증 농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등을 사업완료 1년 6개월 이내 받을 수 있는 농가(확약서 징구)
- 국내산 축산물을 도·소매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가공, 수출하는 유통업체
- 도내 브랜드경영체와 연계하여 타 시·도 등 대도시에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 시설 설치한 경우(시설, 운영)
- 친환경축산물을 취급하는 가공업(식육 알 우유),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 포장처리업
 - ※ 단, 직거래 활성화 형태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

지원 우선 순위

- * 축종별 전업규모 미만의 영세 축산농가(녹색축산육성기금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동물복지 축산농장,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HACCP 지정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기 위한 농가)
- *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기계, 장비 등
- * 기타 축산시책 역점 추진 사업(MOU 체결 업체 등)

※ 친환경 축산 확약 + 부지확보 및 건축물 인·허가 완료 + 민원 비발생 한 신청자 지원

③ 용자 지원 제외 등

○ 용자 지원 제외

- 금융 당국의 대출요건 부적격자
 - 신용불량, 연체, 담보 부족 등으로 대출 불가능한 자
 - ※ 신청자가 금융당국에 반드시 먼저 확인 후 신청토록 사전 홍보
- 전남 도내에 축산물 판매장(식육점) 설치(개보수) 및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및 우리도 매뉴얼 사업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 중앙 및 도 매뉴얼사업으로 우선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가축분뇨처리, 가축방역,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사료구매자금) 등 중복지원 불가
- * 단) 사료 배합기, 조사료생산 및 분뇨처리 기계·장비(치량 및 증고제품 제외), 유기축산물 인증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 농가·법인의 사료구매자금은 녹색축산육성기금으로 지원함

④ 용자지원 수요조사 및 선정

【시·군】

1) 사업 신청·접수 : '22. 11. 21. ~ '22. 12. 21.

○ 사업희망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

- 사업희망자는 시설, 운영자금의 세부 사업량 및 단가를 산정 후 사업비 신청
- 사업희망자는 금융기관의 신용조사(신용불량, 담보부족 등)를 거쳐야 함

※ 사업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용자사업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무자격자 신청서 반려 시 그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현지조사 실시

○ 시장·군수는 용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현지조사

- 용자대상별로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 시·군 검토 의견서(서식 4)에 따라 사업내용과 용자신청액 등 타당성 검토

○ 농업기술센터, 금융기관 직원과 합동으로 실시

- ※ 대상자가 중도 포기 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의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금융기관(농협)의 철저한 신용조사(신용불량, 담보부족 등)를 거쳐 대상자 선정 제출

3) 용자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시·군 → 도) : '22. 12. 26.(월)까지(기일엄수)

- ①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 신청서(서식 1) ※ 담보능력 확인 철저
- ② 사업계획서(서식 2)
※ 별도의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 ③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사업 대상자 신청현황(서식 3), 용자사업 신청 내역(엑셀)
- ④ 시·군 검토의견서(서식 4)
- 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또는 HACCP 인증서 또는 인증확약서 등 기타 자료
- ⑥ 기타 : 증빙자료(토지대장, 착공신고서 등 인허가 관련 서류, 정보수집 동의서, 이행확약서, 신용조사서 등) 제출
※ 축산농가 - 가축사육업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축산물가공유통업체 등 - 사업허가증 등 첨부

【 도 】

- 위원회 심의 선정
 -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자는 포기한 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사업 포기 사유가 정당한 경우는 선정 가능)
 - 기금 출연금 미납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단, 시장·군수의 납부 확약서(납부계획서)를 제출 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미납시 다음연도 지원 제외)

5] 사후관리

1)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 할 경우 용자금 지급 불가

2) 지원대상자의 지위 승계

- 지원대상자의 사망 등 타당한 사유로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부부, 부자, 형제 등)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사실 확인 후 승인
* 금융기관 여신관리 업무 규정에 부합시 승인

① 추진 일정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읍·면·동) : 2022. 11. 21. ~ 2022. 12. 21.
- 시·군 현지조사 및 서류 검토, 자료 제출(시·군→도) : 2022. 12. 26. 까지
- 도(道) 검토 및 용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 : 2023. 1. 10. 까지
-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금 배정 신청(시·군 → 도) : 매월 20일
- 사업대상자의 금융기관 상담 확인서 제출(서식6 시·군→도) : 2023. 4. 10.까지
- 사업 착수 전 금융기관의 용자 실행 관련 상담 必

② 축산농가에 대한 사업안내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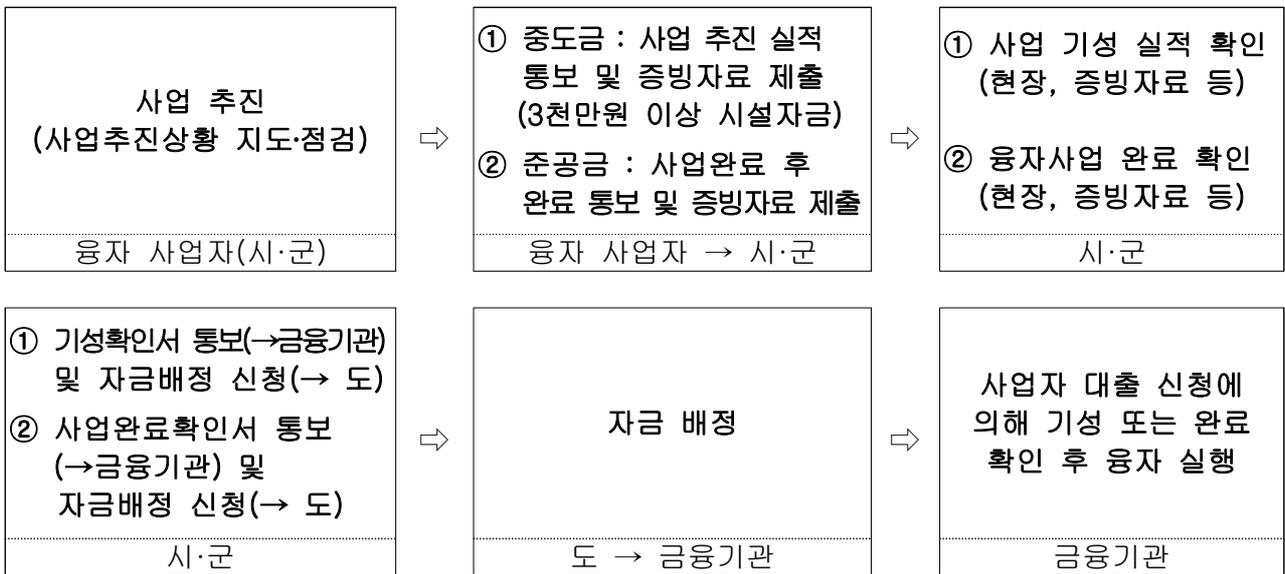
- 시·군, 읍·면·동, 농협 게시판 및 반상회보, 마을방송,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 시·군별로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차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 농가 등 주민 홍보에 철저

③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등 자체평가 이행

- 신청자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와 대출실행 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작성하여 제출

2023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사업 추진 유의사항

1. 용자사업 기간 : 2023년 말까지 사업추진 및 대출 완료
 - ※ 현저한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불가피한 경우 시장군수 신청 및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승인에 의해 다음연도로 연장
 - ※ 특별한 사유 없는 착수 지연, 사업 추진 지연의 경우 다음연도로 연장 불가
2. 용자 취급 금융기관 : NH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시·군지부, 광주은행 전지점
3. 용자 절차



4. 유의사항

<사업대상자>

- 대상자 선정 통보 받은 이후(사업 착수 전)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 용자금액 및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 후 사업 착수
 - 3개월내 금융기관 상담확인서 제출 및 용자 가능 금액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 선정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으로 조기 착수
- 용자금 대출은 사업 완공 후 대출하되,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은 추진실적(기성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중도금 지급 가능
 - 운영자금 : 사업대상자는 배정된 사업비를 원료 납품 전에도 사업추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자 신청하거나 사업 완료 후에 '사업완공 확인서'를 읍면동에 신청
- 가공·유통·판매분야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와 계약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이 우선 판매되도록 함은 물론, 건물 완공 후 반드시 HACCP 인증 취득

- 인증 협약서 제출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취득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설업 등록증*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1억원 미만 자가시공 사업비 중 인건비는 16.7%(16,700천원)이내에서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시·군>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시 즉시 도에 통보하여 용자 미 실행액 최소화
- 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 선정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도에 보고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건축물대장)를 확인 후 '사업완공확인서' 발급하여 대출기관에 통보, 도에 자금배정 신청
※ 증빙자료 확인 시 세금계산서 총사업비 또는 세부내역별 세금계산서의 총합계로 정산가능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 중도금 접수시, 추진실적에 따라 기성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기관에 통보, 도에 자금 배정 신청
-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금배정 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 자금배정 신청 : 매월 20일 이전(매월 말 자금배정)
※ 출납폐쇄기한 내 사업자가 대출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 철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정부지원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에 문의하여 담보제공 승인을 받거나 제3의 담보물건을 제공토록 안내
- 인증 협약서 제출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받도록 안내(사업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미인증 시에는 자금회수 등 조치)

<금융기관>

- 대여금을 신속하게 용자하여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
- 용자 대상자가 용자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도에 통보하고 해당 대여금을 지체없이 도에 상환
- 용자금 배정액 대출 실행결과 보고(월말)
-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완공확인서를 받아 조속히 용자하되, 회계연도 폐쇄기(12월 말)까지 용자 실시

2023년 녹색축산육성기금 보조사업 지원

□ 축사화재발생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재산 피해액 범위	지급 결정액	비 고
4억원 이상	30백만원	1.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 결정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천원 미만은 절사 2.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전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3. 축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0백만원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8백만원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5백만원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13백만원	
3천만원 미만 3백만원 이상	피해액의 40%	
피해액이 3백만원 미만	자력 복구	

※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거, 농가당 2회에 한하여 지원함

□ 전업규모의 정의

축 종	사육두수	사육면적(m ²)
한육우·젖소	50두 이상	400m ²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800m ² 이상
닭	30,000수 이상	육계 1,380m ² 이상 산란계 2,250m ²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1,665m ² 이상
양·흑염소	300두 이상	495m ² 이상
사슴(엘크)	50두 이상	450m ² (600m ²)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 면적당 사육기준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적용

▶ 전업규모는 사육두수를 참고하여 사육면적을 적용함(단 꿀벌은 사육군수 적용)

3.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태원 담당자 오재철	061-286-6520 061-286-6524

I. 추진방향

- 축산시설을 원거리에서 CCTV, 발정탐지기 등 제어시스템을 통해 한우 개체관리 할 수 있는 ICT 장비 지원
- 국비 보조사업(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에 용자금 일부 지방비(도 및 시·군비) 지원

II. 추진계획

1]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용자	자담
한우 ICT 융·복합 지원	120호	1,800	540	90	450	360	360

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및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한우 30두이상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보조 60%(국비 30, 도비 5, 시군비 25), 용자 20%, 자담 20%
 - * 용자금은 자담으로 대체 가능
- 사업내용 : '스마트팜 코리아(농정원 운영)'에 등록된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2개 이상 ICT 장비 지원
 - 개체관리 S/W, PC, CCTV, 발정감지장비, 분만알림장비, 축사환경제어장비(컨트롤박스에 한함)
 - * 축사환경제어장비는 축사환경장비를 통합하여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
 - 예시) CCTV + 발정감지장비, CCTV + 축사환경제어장비, 발정감지장비 + 분만알림장비 등
-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 기준) 15백만원/호

②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3. 1. ~ 12.

다.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의 예비 컨설팅 받은 농가 중 우선순위 및 대상자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예산 범위 내 선정
- 지원 장비를 2개이상 동시(개체관리 S/W, CCTV, 발정탐지장비, 분만알림장비, 환경 제어장비)에 도입하는 농가만 선정. 단, PC의 경우 단일 지원이 불가함으로 단일장비로 볼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15백만원)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지자체는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
 - ※ 지원횟수는 '14년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라. 우선 지원

-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순위를 먼저 반영한 후 컨설팅점수를 반영하여 선정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 2순위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 깨끗한농장 지정 농가, HACCP 인증 농가
 - 3순위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 4순위 : 1~3순위를 제외한 사업 신청 농가

마. 지원제외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제외
- 무허가 축사 소유자, '20.1.1 이후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축산분야 ICT 지원 제외와 동일
- 한우 ICT 지원 횟수, 축산 ICT 지원 횟수를 합산하여 3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한우 ICT 사업과 축산 ICT 동일 지원 불가

바. 제품 공급·설치

-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시스템 장비
 - 개체관리 S/W, PC, CCTV, 발정감지장비, 분만알림장비, 축사환경제어장비(컨트롤박스) 이외의 장비는 축산 ICT를 통하여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되어야 하고, 농정원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
 - 단, PC, CCTV 등 범용장비는 기업정보 등록 완료 시 지원 가능
- 계약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확인 및 관계 법령 준수

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중 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 한도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정산
- 보조금은 농가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장 제출시 시공업체에 지급가능
- 농가 및 시공업체(위임받은 경우)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정별 사진, 자부담 납부 통장 사본 등 사업비 집행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 제품선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방법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기관의 시설설치컨설팅 결과보고(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하여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사.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시장·군수 책임 하에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정기실태조사(연 1회 이상)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아. 기타 지침에 없는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침 준수

Ⅲ.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본사업자 선정후 보고 : 매월
- 사업 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서식 2) : '24. 1. 15.

4.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태원 담당자 오재철	061-286-6520 061-286-6524

I.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농가에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 확산
 - 스마트 축사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10% 달성

성 과 지 표	2023 목표치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 생산성 향상	10%	'23.12월	설치 전후 생산량 및 품질 등의 비교분석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실증·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96,000	67,200	78,400	
국 고	36,000	25,200	29,400	
용 자	60,000	42,000	49,000	

* 2023년 예산은 국회 확정 후 농식품부에서 발간하는 농식품사업지침서 등을 통해 별도 안내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
 - ※ 양봉의 경우,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50평 이상(165m²)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말
 -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 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우선 지원>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2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단,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은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나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
- 양돈, 한우, 낙농, 양계의 경우 아래 표의 장비를 동시에 도입하고자 하거나, 아래 표의 장비를 모두 구비하기 위해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자 하는 농가(단, 기존장비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거나 신규 장비의 도입과 동시에 기존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축종		필요 장비
양돈	번식/일괄	포유모돈자동급이기, 환경관리기, 음수관리기
	비육전문	사료자동급이기(사료빈관리기로 대체 가능), 환경관리기, 음수관리기
양계	육계	환경관리기, CCTV,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산란계	난선별기, 환경관리기, 사료빈관리기
낙농		착유기, 발정탐지기, 환경관리기
한우	번식/일괄	발정탐지기, 자동급이기, 환경관리기
	비육전문	자동급이기, 환경관리기

- 대상농가 선정은 우선지원 조건을 참고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정함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20.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취방지법」, 「약사법」, 「곤충산업법」
 -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 축산업 허가 및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 다만, 적법화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사업완료 시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 (참고 서식4)
 - * '22.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20~'22년)
- '20.1.1 이후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지원 前 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종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컨설팅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함

○ 축사 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동시 추진 시, 축사 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착공되지 않은 경우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가축질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가능 (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시 지원이 필요한 사정과 지원제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상자가 지원제외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원제외 사유 및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농가 및 지자체 준수 사항** : 사업신청자는 지원 제외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아니하며,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하여야함

<평가 시 가점부여>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단, PC, CCTV 등 범용장비는 기업정보 등록 완료 시 지원 가능

※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은 전담기관에서 정하며, 장비검토위원회 및 장비등록 관련 업무는 전담기관에서 수행 후 농식품부에 보고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물품과 공사의 구분은 계약담당자가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 센서 설치시에는 '20년 11월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KS X 3279:2020)'를 준수한 센서를 활용

<지원대상>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LED),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
 -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자동급이기, 컴퓨터액상급이기, 음수관리기, 군사급이기, 사료효율측정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발정/임신진단기, 체중측정기 등
 - (양계오리)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부화기, 음수관리기, 사료빈관리기, 체중측정기 등
 - (낙농·한우) 착유기, 로봇착유기, 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발정탐지기, TMR배합기, TMR자동급이기, 분만알리미, 자동포유기, 조사료정리기, 체중측정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조사료 분석기 등
 -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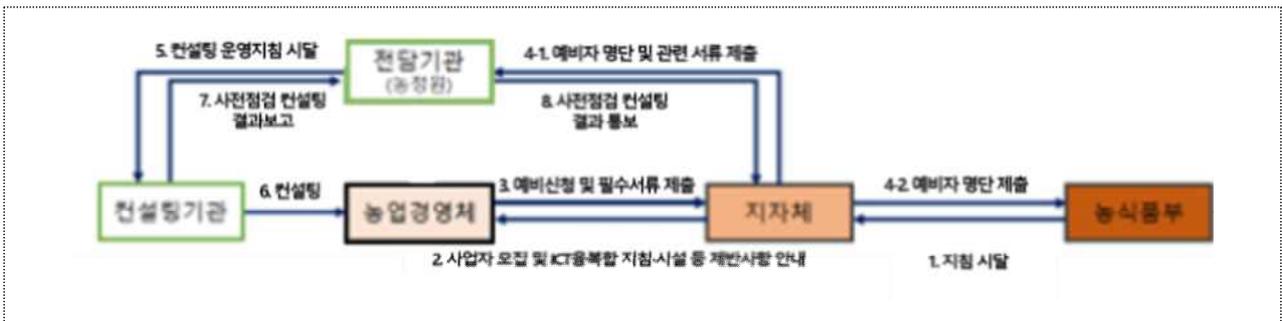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75백만원,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²),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수립 및 통보('22.9월)

지자체

-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매달 수시로 모집하고 그 명단 및 제출된 서류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22.10월)
 - * 시·군은 사업비 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월별로 발굴하고, 시·도는 격월 말일 (1,3,5,7,9,11)에 시·군의 예비사업 수요자를 일괄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예산 집행 상황에 맞게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전담기관

-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 지자체 및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통보('22.10월)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및 예비사업자 모집('22.9월)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22.10월)
- 정책방향과 사업목표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신청에서 제외

시 · 군

-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안내)하는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을 안내('22.10월)
- 시장·군수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전담기관에 제출('22.10월)

경 영 체

- 농장 현황, 사육현황, 사업계획, 정보활용 동의서 등이 담긴 사업계획 신청서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필수 서류) 시·군으로 제출('22.10월)
 - * 단,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 및 컨설팅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는 제외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전담기관

- 사업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을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22.9월)
- 컨설팅기관에서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검토하여, 시·도, 시·군에 통보
-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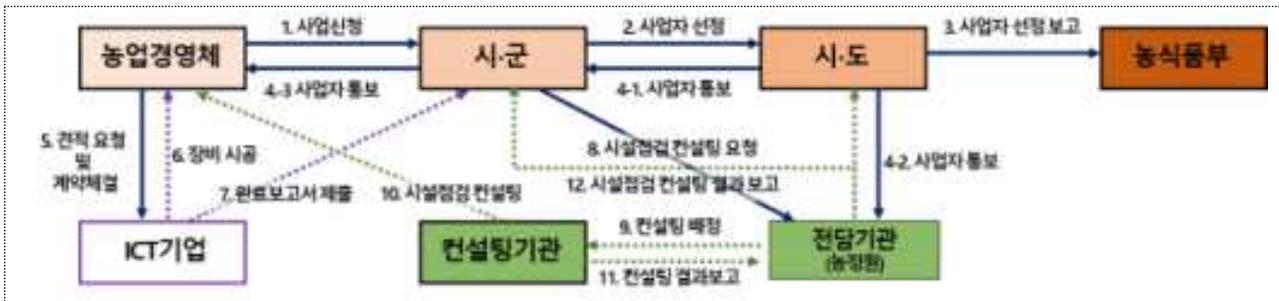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22.11월)
-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장비업체

- 품목명, 모델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부가세 관련사항(환급, 영세율, 부가세 과세대상) 등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견적 요청한 경영체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경 영 체

-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견적 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22.10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2.10월)
-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에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우선순위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토대로, 적격 여부 및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보고('22.10월)

시 · 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23.1월)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 하여야 함(23.1월)

컨설팅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도입한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시설설치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23.2월)

장비업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본 사업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입찰을 구분하여 농업 경영체와 계약을 진행
- 계약 사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나라장터 계약서), 세금계산서, 세부견적서, 하자보수 이행증권, 장비 설치 전·후 사진, 통장사본 등을 포함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시·군 제출 (수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 (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가능
 - * 단, 상기의 사유 외에 사업규모의 증액, 사업예정지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사전점검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 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사본, 계약내용 등 계약서류 일체)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통지(계약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 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가가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2항」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받지 않음(따라서, 지급된 국비(30%)를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집행한 실적을 등록할 것

- 보조금 교부결정이 확정된 사업대상자 명단을 전담기관에 제출(수시)
- 시·군은 자부담이 우선 집행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자부담 집행 여부, 장비 공급 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선급금 지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기관의 시설설치컨설팅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서류점검, 사전점검), 시설설치 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컨설팅 추진현황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기관이 실시한 시설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자체에 통보 특히, 부당 계약 사항(입찰 미실시), 본사업자 미선정자의 사업 진행, 미등록 업체(장비 포함)의 계약은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중요재산의 처분의 제한
	부터	까지	
-기계 장비	구 입 일	5년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 2년)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10년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장비업체는 계약시 약정한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불가피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업체탐색, 견적서 접수, 계약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단,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개월) 해당 사업대상자를 탈락시키고, 지체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가능
 - *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신축축사 인허가는 불가피한 사유에서 제외)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가 이월·불용되지 않고 연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독려, 불성실 사업대상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37호) 제78조 및 제79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 보고
 -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장비업체

- 전담기관은 장비업체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스마트팜코리아 등록업체에서 제외 가능
 -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스마트팜코리아 등록 제외 및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참여 제한 가능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5년간 참여 제한
 - 표준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컨설턴트를 매수하여 장비선택을 유도 하였을 경우
- 장비 보증 기한 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가능

공통

- 기타 보조사업 수행배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규정에 따름
- 지자체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상이한 장비가 설치된 경우가 2회 이상일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향후 3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가능

6.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4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3.5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3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3.7월
- 신청자격 : '24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24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3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지침, 규격 및 서비스기준, 컨설팅기관 및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은 정보공유 웹사이트(<http://www.smartfarmkorea.net>)를 활용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예시) ◆

< 필수 자료 >

1.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곤충은 곤충사육 신고증, 양봉은 양봉농가 등록증)
※ 축산업허가를 발급 받지 않는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축사 착공신고서 제출
2. 신용조사서(농·축협 발행) 또는 예금평잔 확인서(용자 실행 시 의무)
※ 용자신청시 필요한 대출능력과 자부담 담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 타인 토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승낙서 등
4.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5. 건축물 설계 도면
6.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닭고기·계란·오리에 한함)
7. 사업계획서(컨설팅 기관 협력 작성)
8. 사전점검 컨설팅 확인서(컨설팅 기관 발행)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의무)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 >

10. 가축 사육 현황 및 생산성 증빙 자료
 - 10-1. 가축 사육대장 또는 개체이력정보(1년간/월별)
 - 10-2. 사료거래실적 정보(1년간/월별)
 - 10-3. 출하/납유 기록정보(1년간/월별)
11. 전산기록관리 증빙
12. 종합컨설팅 증빙(농업경영, 소모성질병, 생산성 향상 등 관련 계약서)
13. 기타 서류
 - 13-1. 현장설명회 참여 확인서(현장설명회 운영기관 발급, 단 감염병 예방 등 현장설명회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온라인 교육 증빙으로 대체)
 - 13-2. 가축공제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 13-3. 후계자 지정 증빙서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군 발급 증명서)
 - 13-4. HACCP 증빙서류(지정서 등)
 - 13-5. 무항생제 인증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 증빙서류
 - 13-6.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증빙서류
 - 13-7.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증빙서류

5.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김민주	044-201-1727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장 김태원 담당자 오재철	061-286-6520 061-286-6524

I.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

2.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제25조의2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국비 : 농식품부에서 보험사에 직접 지원(예산 편성 제외)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100%)	국비(50%)	도비(7.5%)	시·군비(22.5%)	자담(20%)
2,500호	10,000	5,000	750	2,250	2,000

- 지원대상 :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사업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 지원
* 국비 지원한도(5천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국비 지원없이 지방비 지원은 가능
- 지원한도 :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보험료 400만원 이하 : 도비 7.5%, 시·군비 22.5%, 자부담 20%, 국비 50%
 - 보험료 400만원 초과 : 도비 300천원, 시·군비 900천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4. 사업관리 및 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5. 행정사항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명단 확인(시·군↔가입기관) : 수시
- 가축재해보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입기관↔시·군) : 수시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3. 12. 31.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사업대상자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② 정부지원

1. 지원 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지원 요건

- **(농업인·법인)**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
- 단,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농·축협)**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도 지원
- **(축사)**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물 포함)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용도 등 가축사육과 무관한 건물은 정부지원 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경우에는 사육가축이 없어도 축사에 대해 정부지원 가능

3. 지원 범위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단, 농업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 (예시) 보험가입하여 4천만원 국고지원 받고 계약 만기일 전 중도 해지한 후 보험을 재가입할 경우 1천만원 국고 한도 내 지원 가능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 축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 가축사육면적당 보험가입 기준 적용 >

닭(두/m ²)		돼지(m ² /두)						오리(m ² /두)	
		개별가입							
육계·토종닭	삼계	웅돈	모돈	자돈 (초기)	자돈 (후기)	육성·비육돈	일괄 가입	산란용	육용
22.5	41.1	6	2.42	0.2	0.3	0.62	0.79	0.333	0.246

- 총 보험료 : 국고보조 50%, 도비 7.5%, 시·군비 22.5%, 자부담 20%
-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3 세부 사업내용

1. 보험 목적물

- 가축(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 단,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2.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수준 : 별표 2

3. 보험가입단위

- 가축재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 및 축사를 전부 보험가입 하는 것이 원칙
 - '종모우'와 '말'은 개별가입 가능
 -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① 축종별 및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가입 시에는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② 축종별 및 성별을 구분하여 보험가입 시에는 '소' 이력제 현황의 80%이상 가입 가능

4. 보험 판매기간 : 연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폭염·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신규가입에 한해 보험가입 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험가입 제한 기간을 통보해야 함
 - * 폭염: 6월~8월/ 태풍: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된 날부터 태풍특보 해제 시

5. 보험 가입절차

- 보험 홍보 및 가입안내(대리점 등)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사전 현지 확인(대리점 등) → 청약서 작성(재해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수납(대리점 등) →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 발급(대리점 등)

6.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축종별,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보험요율 적용
 - 전문기관*이 산출한 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보험사와의 협의요율 적용 가능
 - * 전문기관 :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 보험료 할인·할증은 축종별로 다르며,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
 - 과거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축사전기안전점검, 동물복지축산농장 할인 등
 -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적용을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간 보험계약자의 통합손해율, 할인·할증률 등 정보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공유할 수 있음(보험개발원 할인·할증시스템 이용)

7.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안됨
 - 보험목적물의 진단 및 검안 등은 시·군 공수의사, 수의사가 실시하여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

- '소' 사고사진은 귀표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고, 매장 시 매장장소가 확인되도록 전체 배경화면이 나오는 사진 추가, 검안 시 해부사진 첨부
- 진단서, 폐사진단서 등은 상단에 연도별 일련번호 표기 및 법정서식 사용
 -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무교육(정기교육) 실시하여야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를 대상으로 다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 손해평가 교육내용
 - 실무교육(정기교육) :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 관련 교육, CS교육, 청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 보수교육 :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개정사항, CS교육, 청렴교육 등
 - * 단, 현장교육이 어려울 경우 교육 대상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온라인교육 사이트(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교육 수강

8. 보험금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재해발생 사실 통지 시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

4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규정에 따름
 -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 가축재해보험 업무편람
 - 가축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름

별표 1**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① 사업 계획 단계****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재해보험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 및 제도개선 연구·개선, 위험관리점검,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 계획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재해보험사업자

- 보험가입 촉진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재해보험 교육·홍보 등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② 보험 상품 개발 단계**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보고한 상품개선안 검토 및 의견제출
- 농업재해보험 지자체 설명회 개최(정책방향 설명 및 보험 홍보 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추진 및 개선안 발굴
- 재해보험 상품·제도개선 시 연구기관·학계·농업인 등 현장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상품·제도개선(안) 마련
 - 재해보험사업자 등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상품개선회의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 보험개발원, 연구기관·학계·농업인 등 참석대상 확대 가능

- 농업인에게 상품개선사항 전파를 위한 현장설명 체계 구축 및 관리
 - 지역총국(또는 지역단위 대리점) 담당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지역총국→지역농협(대리점)으로 설명 전파]
 - * 단, 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를 통해 상품개선사항 전파 가능
 - 추가 설명을 원하는 대리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
 - 위 대상이 아닌 권역(경기, 충청, 전라, 경상) 내 시·군 지자체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재해보험 상품·제도개선(안), 보험요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농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 개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상품연구에 협조하여 상품개선사항 발굴에 적극 참여
- 보장내용, 보험료율, 예정사업비율, 손해조사비율 등 보험상품 변경사항 발생 시 상품개선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와 재해보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요율검증보고서, 보험약관 등)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3] 사업시행 단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제도 홍보, 손해평가사 교육 등 추진
- 지방비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관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 매월 초마다 전월 기준 가입실적,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필요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가입실적, 지급실적, 사고접수 현황 등 통계자료 수시 제출

-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 실시, 보험사고 접수현황 추정보험금 등 파악
- 태풍, 장마, 폭염 등 주요 재해 피해조사 진행 현황 및 추정 보험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보험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 지역 대리점 및 농축협 등 판매직원,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가축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사업자의 가축재해보험 자금배정 신청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자금 배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 신청 적정성 여부를 보고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교부 신청
- 사업 연도말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이듬해 2월 28일까지)
- 보조금법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5조(회계구분)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이듬해 4월 30일까지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보험사기 등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관리 체계화
 -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 (조사) 재해보험사업자(SIU)
 - (수사) 관할 수사기관(경찰·검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손해평가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사업 시행지침 이행여부, 사업실적, 손해평가방법 준수여부 등
- 보험사고 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점검회의’ 운영
 - 참석대상 : 농식품부, 사업시행자, 손해평가법인, 손해평가사협회 등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이상(필요시 수시)
 - 점검내용 : 가축재해보험 실태점검, 보험사기 등 정보 공유, 재해보험사업자가 상정 요구한 안전, 기타 위험관리에 필요사항 등
-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실태점검 외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에 추가점검 요청 또는 자체 사업점검 실시
 - * 자체 사업점검 대상: 재해보험사업자·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보험계약자 등
 -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가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 축종별·재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실태점검이 미흡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등

재해보험사업자

-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가축재해보험 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하여 조치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가축재해보험 사기행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 등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고 조사 시 또는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태점검' 실시
 - '실태점검'이란 가축을 사육·관리·보호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 시행 여부 등 농가의 재해방지 노력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점검사항은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활용
 - 사고 조사 시 실태점검하는 경우 손해사정사 혹은 손해평가사가 직접 실시하며, 별도 계획에 따라 실태점검하는 경우 농금원, 재해보험사업자, 손해사정사(보조인), 손해평가사 등으로 5인 이내의 '실태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
 - 자체 실태점검 및 조치결과를 반기별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하고, '위험관리점검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출

<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 >

구 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농업인·법인	보험금율	100% 초과	130% 초과	150% 초과	200% 초과
	지급횟수	3회 초과	5회 초과	7회 초과	9회 초과
대리점	계약자비율	0.5% 초과	1% 초과	1.5% 초과	2% 초과

* * 보험금율 및 지급횟수는 개별 적용하여 '위험관리 신호 단계' 구분

** 보험금율: $\frac{\text{Σ지난 3년간 보험금}}{\text{Σ지난 3년간 최초가입금액}}$

지급횟수: $\frac{\text{Σ지난 3년간 보험금 지급 횟수(단, 질병폐사·절박도살·폭염 제외)}}{\text{Σ지난 3년간 계약자(중복 제외) 수}}$

계약자비율: '관심' 단계 이상 해당하는 자 수 / $\frac{\text{Σ지난 3년간 계약자(중복 제외) 수}}{\text{Σ지난 3년간 계약자(중복 제외) 수}}$ 수 (단, 본·지점 합산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수 50명 이하인 경우 제외)

《제재》

농림축산식품부

- 보험사고 목적물에 대한 불법 진단·검진하거나 공모한 수의사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통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부당·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사업자의 부당·위법한 사실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후 방지책 등을 요구
 - 지역 대리점의 부당·위법 사실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후 방지책 등을 해당 지역 대리점에 요구하며, 특히 지역 대리점의 부당·위법한 사실이 고의성이 있거나 지속적인 경우, 다음 해 계약 물량 삭감(30%~100%) 등을 실시하도록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요구
 - 보험계약자의 경우 그 사실을 재해보험사에게 통보하여 계약취소, 인수제한 등 조치 요구
-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은 위 조치 결과를 즉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기와 관련되었거나 손해조사자를 위협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인수·손해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자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자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가축 재해보험의 손해평가 결과 보고(별표 6)'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관리를 통해 사업 목적 달성 기여도 제고
 - 성과지표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축종별 가입두수/대상두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매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재해보험 사업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 후 가입률을 근거로 성과지표를 측정하여 농업 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만족도 조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재해보험사업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위탁을 받아 농업인(가축재해보험 관련자)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1. 원 칙

- 가축재해보험 축종별 가입율, 가입농가 증감율,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미흡·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2. 사업평가 방법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매년 3월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축종별 가입율, 가입농가 증감율,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발생현황 등

3.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 수립·시행(3월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축종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이듬해 1월 31일까지)

4.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한 지역·항목은 중점 관리

《환 류》

-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별표 2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수준

축종		보장 재해	보장수준 (%)					
			60	70	80	90	95	100
소	주계약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제외 ② 긴급도축 - 부상(경추골절·사지골절·탈구),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젖소의 유량감소 등으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③ 도난·행방불명(종모우 제외) ④ 경제적도살(종모우 한정)	○	○	○	-	-	-
	특약	도체결함	-	-	○	-	-	-
돼지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질병위험*, 축산휴지위험, 전기적장치위험, 폭염 * TGE(전염성우장염) PD(돼지유행성설사병) 로타바이러스감염증	○	○	○	○	-	-
가금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전기적장치위험, 폭염	○	○	○	○	-	-
말	주계약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제외 ② 긴급도축 - 부상(경추골절·사지골절·탈구),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으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③ 불임(암컷)	-	-	○	○	○	-
	특약	씨수말 번식첫해 불임, 운송위험, 경주마 부적격	-	-	○	○	○	-
기타 가축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사슴, 양) 폐사·긴급도축 확장보장 (꿀벌) 부저병·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한 폐사	○	○	○	○	○	-
축사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손해	-	-	-	○	○	○
	특약	설해손해 부보장(돈사·가금사에 한함)	-	-	-	-	-	-
공통특약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책임	-	-	-	-	-	-

* 가금(8개 축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 기타가축(5개 축종) :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6.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태원 담당자 최유림	061-286-6520 061-286-6523

I. 추진방향

- 폭염 최고조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고온 스트레스완화 제품을 공급하여 가축 폐사 피해 최소화

II. 추진계획

①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도비(20%)	시·군비(80%)
3,000호	1,280	256	1,024

- 지원한도 : 호당 1,500천원(초과 금액은 자부담)
 - 축종별 25일 기준으로 지원하되, 시·군 판단에 따라 지원일수 조정 시행
 - ※ 사육규모에 맞게 농가당 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 ※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군비의 일부를 농가 자부담으로 대체 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지원대상 : 전 축종 * 염소, 사슴은 염소 생산성 향상 사업으로 별도지원
 - 우선 지원 대상 :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닭, 오리, 돼지 등)
 - 가축폐사 방지를 위해 지원된 사업이므로 축사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 사업내용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필수 비타민(비타민C), 아미노산제, 비테인, 미네랄 등

②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3. 1. ~ 8.(공급 6월 이전, 사업비 정산 8월말까지)

다.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
- ②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농장 지정 농가
- ③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라. 제품 공급 요령

- 지원품목 및 공급단가 결정을 위해 축종별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축산 농가가 원하는 제품 선정(조달청 등록제품에 한함)
- 우리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능한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 가능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6월 이전 조기 공급을 위해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중 시·군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제품을 구입한 농가에 대해 보조금 소급 집행 가능
- 사업비 중 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보조금은 농가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장 제출 시 시공업체에 지급 가능
- 농가 및 공급업체(위임받은 경우)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급사진, 자부담 납부 통장 사본 등 사업비 집행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군 담당 부서에 보조금 청구
- 제품선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방법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하는 경우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집행은 현장 확인 및 제품 검수 후 정산
- 제품의 일괄구매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

바. 사후관리

- 시·군은 제품을 인수받은 농가에서 기간 내 정량을 급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품 공급 상황 확인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 실태조사(연 1회 이상)
- 사업추진실태 수시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 추진상황, 부진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 참여농가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III. 행정사항

- 참여농가 사업 신청(서식 1) 및 대상자 확정 : 수시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시·군→도, 서식 2) : '23. 3. 31.
- 사업 완료 및 제품 공급 현황(시·군→도, 서식 2) : '23. 6. 30.
- 정산 보고(시·군→도, 서식 3) : '23. 8. 31.

7.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태원 담당자 오재철	061-286-6520 061-286-6524

I. 추진방향

- 열차단재를 축사 지붕에 도포함으로써 태양열 반사 효과로 혹서기 가축 폐사 등 피해 최소화
- 혹서기 축사 내 열기 축적 감소로 가축 고온스트레스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 도모

II. 추진계획

①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15%)	시·군비(55%)	자담(30%)
240호	480,000	72,000	264,000	144,0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55%, 자담 30%
- 지원한도 : 호당 5,000천원
 - 축사 지붕 면적당 지원단가 : 850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 우선순위
 - 1순위 : 중·소규모 농가(한우·젓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0,000수, 오리 5,000수, 양봉 100군, 흑염소 300두, 사슴 50두 미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 2순위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 또는 정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가
 - 3순위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농장 지정 농가
- ※ 우선 선정기준 : 순위가 높을수록, 같은 순위 내에서는 항목 수가 많을수록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축사 지붕 친환경 열차단재 도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제외
 - 지방세 체납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가능

②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업체 및 제품 자격
 - 열차단재 관련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며 최근 2년 이내 시공실적이 있는 전문시공업체
 - 사업자등록증(종목) : 열차단재 도포, 차열재 도포, 차열 도료 등
 - 규격 인증(KS 또는 ISO 등) 업체 또는 제품
 - 품질보증 및 A/S 가능 업체
 -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전남도내 소재 기업 우선 지원
 - 태양방사 반사율 70% 이상 제품
 - 환경표지 인증기준(페인트)의 유해원소 사용 제한 요건에 적합한 제품
 - 중금속[납(Pb), 카드뮴(Cd), 수은(Hg), 크로뮴(Cr)]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으며 질량 함은 0.1% 이하
- 사업시행절차
 - 시·군에서는 사업지침에 따라 축산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 사업 참여희망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 시·군에 사업 신청
 - 사업신청 접수 시·군은 수요조사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사업 추진
 -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사업으로 적기 추진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

③ 사업추진체계

가. 신청단계

도

-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

시·군

- 통보된 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부터 신청서 접수(서식 1)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나. 선정단계

시·군

- 접수된 사업 신청서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서식 2)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통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을 통보받는 대로 지체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다.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업체 선정 후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사진대장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확인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정산실시 및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지원 한도내에서 실제 사업비 투입액으로 정산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금 입금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시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 전액을 업체에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대상자가 업체에 자부담만 입금했을 경우는 입금 증빙서류와 보조금 지급위임장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위임 업체에게 집행

-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확인 될 경우 2년간 축산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제외
-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에서 반환받고 사업물량이 감소된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라. 사후관리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등 점검 실시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④ 행정사항

- 참여농가 사업 신청(서식 1) 및 대상자 확정 : 수시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시·군→도, 서식 2) : '23. 3. 31.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서식 3,4) : '23. 8. 31.

8. 한우 등록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태원 담당자 최유림	061-286-6520 061-286-6523

1. 목 적

- 전남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계획교배 및 선발, 도태자료로 활용, 우수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도모
- 등록사업을 통한 전남 한우 개량기반 구축 및 농가 개량인식도 제고

2. 추진방향

- 전남 한우개량의 선제 사업으로 한우 혈통(기초·혈통·고등)등록비를 지원하여, 유전적·경제적으로 우수한 한우개량 집단 확보

3.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도비(20%)	시·군비(80%)	자담
150,000두	1,050,000	210,000	84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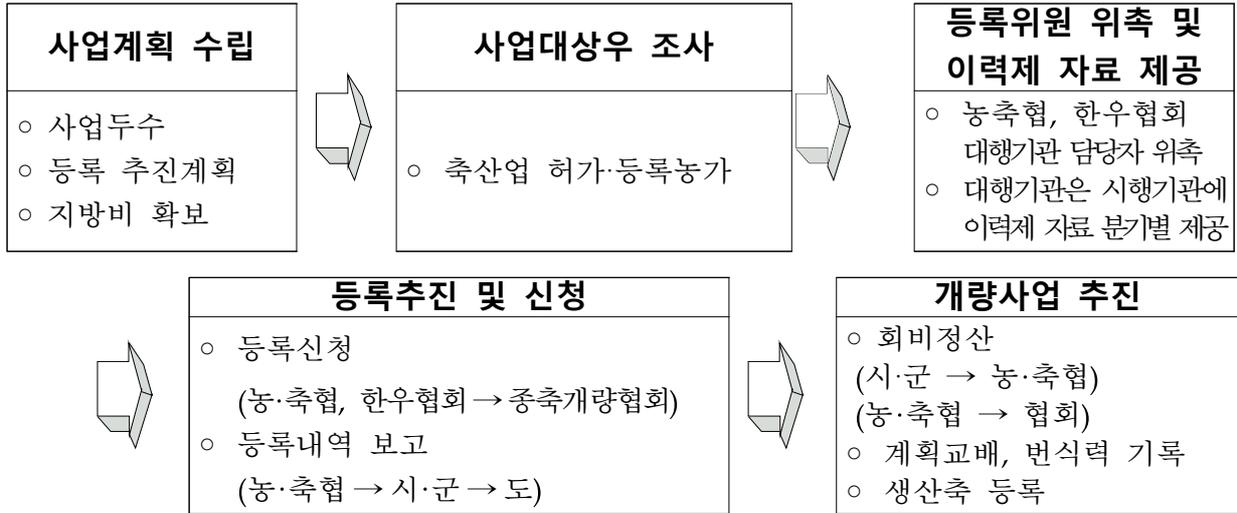
2)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 (지원제외) ① 자연종부 농가
 - ② 축산법 제 22조(축산업의 허가 등) 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한 정액이 아닌 미허가업체에서 생산한 정액을 구입하여 인공수정하는 농가
- 사업내용 : 전남 한우등록 지원 사업 범위 내에서 시·군이 지역 실정에 맞게 등록계획, 계획교배·생산 송아지의 활용계획 등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

3) 등록요건

- 등록은 한국종축개량협회 공고 2012-9(2012.9. 14)“가축외모심사기준”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종축등록기준”에 따르는 한우에 한함

<등록업무 추진절차>



○ 기초등록 절차

- 기초등록 신청 ⇒ 한우기준(모색·백반 등) 적합 ⇒ 기초등록 ⇒ 농가에 우편 발송

○ 혈통등록 절차

- 송아지 생산신고 ⇒ 생산개체 확인 ⇒ 2개월 이내 혈통등록 신청 ⇒ 혈통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 고등등록 절차

- 1년 단위로 등록대상우 통보 ⇒ 대상우 파악 ⇒ 심사일정 협의 ⇒ 심사(연 1회 이상 실시) ⇒ 고등등록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4) 등록단계별 지원금액

구분		금액	지원비율		
			도 비	시·군비	자 담
등록회비	기 초	4,000원/두	20%	80%	-
	혈 통	6,000원/두	20%	80%	
	고 등	8,000원/두	20%	80%	-

4. 추진체계

- 총괄기관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주관기관 : 시·군
- 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대행기관 : 지역 농·축협, 한우협회
- 협조기관 : 농협 전남지역본부(축산)

<기관별 역할 분담>

구분	기관명	주요업무
총괄기관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재원확보 및 시·군별 자금 배정
주관기관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사업에 따른 지방비 확보 및 집행 ○ 등록사업 점검 및 지도
시행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우 전산입력 및 전산서비스제공 ○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등록사업 지도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개량업무관련 공무원, 농·축협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대행기관	지역 농·축협, 한우협회 시·군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청, 등록우 관리, 이력제 자료제공 ○ 등록회비 정산 ○ 협조단체 등록분 집계
협조기관	농협전남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농·축협 업무협조 독려·지도

5. 사업시행

1) 등록계획 수립

- 시·군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 한우등록 지원계획 수립 및 시·군비 확보
- 한우브랜드사업 추진 시·군은 브랜드사업 참여농가에서 사육중인 두수가 우선 등록(기초, 혈통, 고등등록)되도록 계획에 포함
 - 시장·군수는 지역 농·축협으로부터 브랜드 가입농가별 사육두수, 등록두수, 송아지 생산 및 구입계획을 제출받아 등록계획 수립

2) 등록기준

- 등록대상우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의 암소와 그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 ※ 등록 대상우 중 한우브랜드경영체에 참여농가는 우선 대상으로 지원
- 등록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 종축등록규정'에 의함
- 등록단계별 대상우
 - 기초등록 : 한우기준에 적합한 개체
 - 혈통등록 : 기초등록 이상의 암소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되고 외모심사 기준의 실격 조건이 없는 송아지 (2개월 이내 등록신청)
 - 고등등록 : 부모가 혈통등록우 이상으로서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령 이내에 선형심사를 필한 개체 중 심사결과 80점 이상이고 개체유전능력평가 결과 4개 형질 (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이상이 B등급 이상인 개체이며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으로 불량형질이 없는 것

3) 등록추진

- 지역 농·축협 및 한우협회 시·군지부 등은 현지 등록계획을 수립하여 등록 추진
 - 현지 등록 추진 시 증축등록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활용
- 한우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농·축협은 브랜드 가입농가 보유축 우선등록

4) 제반양식의 공급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등록신청서, 관리대장 등을 제작하여 지역 농·축협, 사업을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협회 시·군지부에 공급

5) 등록 신청 및 증명서 발급

- 지역 농·축협(한우협회)은 매월 1회 한국종축개량협회로 등록신청하고 동시에 시·군에 등록신청 내역을 보고(서식 1)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신청서에 따라 전산입력 후 등록증명서, 관리카드를 해당 농가에 직접 발송하고, 반기별 한우 등록현황(서식 4)을 도(시·군별 총괄내역)와 시·군(개인별내역)에 송부

6) 등록우, 후대축 및 농가 관리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등록자료를 전산관리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제공
- 지역 농·축협(한우협회) 등은 등록우 보유농가에 별도 개량교육 실시
- 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한우등록규정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
- 대행기관은 시행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에 이력제 자료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제공하여 각종 통계분석 및 농가 컨설팅자료로 활용

7) 등록우 및 후대축의 활용

- 우수 혈통 번식우는 개체관리 및 장기 사육되도록 시·군에서 시책강구
 - 축주에게 번식 밀소로 활용토록 권장하되 매도를 원할 경우 관내 번식 농가에게 매도를 유도하여 번식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치
- 비육우의 경우 바코드번호에 의한 도체성적관리로 한우 유전능력평가 자료로 활용

8)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시·군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통보한 반기별 등록현황<서식 4>과 지역농·축협(한우협회)의 보고서를 대조 검토한 후 등록회비 지급

- 시·군 실정에 따라 지역 농·축협(한우협회)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를 선택하여 지급
- ※ 사업 추진실적은 매년 1.1일부터 12. 31일까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전 추진한 실적도 반영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서식 4>에 의거 반기별로 도 및 시·군에 등록현황, 등록회비 납부실적을 통보

6. 행정사항

- 시·군별로 추진단계별, 등록단계별 계획수립·추진(혈통, 고등등록)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역 농·축협(한우협회) 등에서 보고한 등록내역에 의거 귀표부착, 증명서 교부 등 등록사업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 추진토록 독려
- 농협지역본부는 지역 농·축협에서 등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 보고(통보)사항
 - 등록추진현황 보고(분기, 서식 1) : 지역농·축협(한우협회) → 시장·군수
 - 등록보조금 지급(분기, 서식 2) : 시장, 군수 → 지역농·축협(종축개량협회)
 - 등록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보고(서식3) : 시장·군수 → 도지사
 - 등록현황통보(분기, 서식4) : 종축개량협회→지역농·축협, 시장·군수·도지사

7. 시·군 협조사항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한우브랜드경영체 참여, 적정 가축사육밀도 준수 농가와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농가에게 등록 혜택이 우선 될 수 있도록 조치
- 한우등록사업이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농·축협(한우협회)과 협조체계 유지
- '23년도 사업 추진 시 혈통·고등등록을 우선 지원하되, 시·군 개량기반 조성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초등록 지원
- '23. 6월 말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은 하반기 사업비 조정

9.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태원 담당자 강대진	061-286-6520 061-286-6522

1. 목 적

-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선발하여 전남산 한우 송아지브랜드로 육성해 전남 한우 차별화 및 수출기반 구축
- 우량 번식우("전남 으뜸한우") 16천두 선발 관리 및 브랜드 송아지("전남 으뜸한우 송아지") 연 16천두 생산

2. 추진방침

- 고능력 우량 번식암소("전남 으뜸한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외모심사 등을 통해 선발된 우량 송아지를 전남 브랜드송아지("전남 으뜸한우송아지")로 육성·관리
- 시·군, 축협, 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개량·관리 등 체계적 추진

3. 사업계획

- 사 업 량 : 15개 시·군
 - (6년차) 고흥군, 강진군
 - (5년차) 곡성군, 화순군
 - (4년차) 영암군, 무안군, 장성군
 - (3년차)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신안군
 - (2년차) 담양군
 - (1년차) 구례군
- 사 업 비 : 2,800백만원(도비 1,400^{50%}, 시·군비 1,400^{50%})
- 지원대상 : 시·군(지역축협, 종축개량협회, 한우농가 연계 추진)
 - (제외농가) ① 자연종부 농가
 - ② 축산법 제 22조(축산업의 허가 등) 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한 정액이 아닌 미허가업체에서 생산한 정액을 구입하여 인공수정하는 농가
- 사업내용
 - 종축개량(선형심사·능력검사), 전산 D/B 구축, 친자확인 등 고능력 한우 육성 및 우량 송아지 생산 후 송아지 브랜드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
 - 브랜드화 : "전남 으뜸한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외모심사를 거쳐 혈통등록하고 친자 확인 검사를 통과한 송아지에 브랜드 부여
 - 공 급 : 가능한 도내 브랜드 경영체 소속 농가에 공급

4.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시·군(지역축협, 종축개량협회, 한우농가 연계 추진)
- “전남 으뜸한우”(번식 암소) 선발 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 프로그램(D/B)에 등록된 개체 중 아래 3개 조건에서 1개 이상 충족하고 친자확인 완료된 개체 선발
 - ① 고등등록우, ② 유전능력 상위 30%이상 개체 중 선형심사 79점* 이상인 암소, ③ 후대도축 성적이 다음 조건 이상의 성적을 낸 소(육질 1++등급이상, 도체중 480kg이상, 등심 단면적 110cm 이상) 중 선형심사 79점* 이상인 암소
 - * 고등등록우는 선형심사 80점 이상으로 상위 20% 이내 수준
 - * 선형심사 79점은 상위 30% 수준이므로 기준으로 정함(국내 평균은 78점)
-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선발 기준
 - 친자확인을 필하고, 혈통등록이 완료된 개체 중에서 발육 상태, 이모색(흑비경), 질병 감염 유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 현재 태어나 있는 개체는 '22. 9월생부터 친자확인 후 선발(1년차 시·군)
 - * 선발된 “전남 으뜸한우” 및 “전남 으뜸한우송아지”에는 브랜드 귀표 장착 실시
- 선발된 “전남 으뜸한우·으뜸한우송아지” 관리 기준
 - 선발된 “전남 으뜸한우”는 지정 후 해당 농가에서 사육
 - * 단, 노령·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도축 허용 및 도내 한우농가에 공급될 경우에만 매매 허용
 - 경매시장으로 출하되는 송아지는 7~8개월령을 기준
 - * 도내 한우 브랜드 경영체를 본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선발된 송아지를 구입하는 소속 농가에 대해 자체 지원 방안 강구
- 세부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별 지원단가 등 세부사항은 [붙임 2] 참고
 - 브랜드기반 운영관리비 : 전담인력 인건비, 전담pc구입비, 차량 임차비, D/B관리 구축비 및 유지비 등
 - 가축 개량관리 : 유전체 검사*(유전능력평가), 선형심사비, 친자확인 검사 등
 - * 유전체 검사 지침 별도(붙임1)
 - 농가 관리 : 농가컨설팅, 개체관리(으뜸한우 및 후대축, 으뜸한우송아지 관리) 등
 - 축협 기타 : 농가교육 및 사업 홍보, 초음파 진단기, 경매장 시설 유지보수, 브랜드 귀표 구입·장착 등
 - 농가 혜택 : 참여농가 별도 지원 등(참여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
 - * 한우 수급안정 관련 지원사업 발굴 우선 추진

세부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연차별 (1~3년)	비고
브랜드 기반 운영관리	전담인력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지원	1~3년	축협 직원 지원 불가
	전담PC구입비	이력제 관리 등 pc 구입비 지원	1년차	
	차량 임차비	사업 추진 관련 차량 임차비 지원	-	유류비 지원 불가
	D/B관리 구축비 및 유지비	으뜸한우 및 으뜸한우송아지 전산관리 지원	-	

세부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연차별 (1~3년)	비고
가축개량관리	유전체 검사 (유전능력평가)	개체별 유전능력(도체, 체형, 번식, 질병 등) 분석 지원	-	
	선형심사비	으뜸한우 선발대상우 선형심사 비용 지원	-	
	친자확인비	으뜸한우 및 으뜸한우송아지 선발대상우 친자확인비 지원	-	
농가 관리	농가건설팅비	참여농가 농가 건설팅 지원	-	
	개체관리비	금년 선발 관련 개체관리 지원	-	
기타	농가교육비	사업추진 관련 교육비 지원	-	교육책자, 강사료 등
	초음파 진단기	초음파 진단기 지원	1~3년	1대 지원
	시설유지보수	'으뜸한우'브랜드 경매관련 가축시장 개보수 비용 지원	1~3년	
	귀표구입·장착	'으뜸한우'브랜드 귀표 구입 및 장착비 지원	-	
농가혜택 (농가홍보)	00000	사업참여 농가 별도 지원	2~3년	브랜드 출범식 비용 별도

나. 지원비율

- 도비(지방전환) 50%, 시·군비 50%(단, 시장·군수가 한우개량을 위하여 예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비와 축협자담에 대해 추가 투입이 가능함 이 경우 기존 보조율은 변경됨*)

* 예시 : 당초) 사업비 100백만원(도비 50^{50%}, 시·군비 50^{50%}) → 변경) 사업비 200백만원 (도비 50^{25%}, 시·군비 100^{50%}, 축협자담 50^{25%})

다.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기관 : 시·군 축협
- 협조기관 : 한국중축개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남한우협회, 전남수의사협회, 전남수정사협회, 친자확인분석기관 등

○ 사업 시행절차

- 사업대상 시·군은 해당 축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서식 1)를 제출하고 도에서 승인
- 사업 참여 희망 농가는 신청서(서식 2)를 작성, 해당 축협에 사업 신청
- 축협은 농가별 사육군수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시·군 보고 및 사업 추진

* “전남 으뜸한우” 및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선발관련 추진실적 인정기간은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전 추진한 실적도 반영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

○ 기관별 주요 역할

구분	기관명	주요업무
총괄기관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추진 관련 협의회 추진 ○ 예산확보 및 시·군 배정

주관기관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비 확보 및 축협 사업비 배정, 사업 추진 관련 지도·감독 ○ 송아지브랜드 육성 및 홍보
시행기관	지역 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아지브랜드사업 관리 및 개량사업 추진 ○ 브랜드송아지 가축시장 운영 ○ 계획교배용 정액확보 및 공급서비스 제공 ○ 개량사업 및 브랜드 홍보·교육으로 농가사업 참여 독려 및 협조
협조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친자확인분석기관 전남한우협회 전남수의사협회 전남수정사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개량사업 협조 및 관리시스템 제공 ○ 개체이력 및 후대도축성적 정보제공 ○ 친자확인검사 및 유전자정보 제공 ○ 인공수정실시 및 수정기록 제공 ○ 농가 사업 참여 독려 및 협조
농가	참여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체 기록관리 및 출생신고 ○ 계획교배 등 개량사업 참여와 방역 및 사양관리 등 철저

라. 사업비 정산

- 축협은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고 시·군은 지역축협에 지급
- 시·군은 사전 승인된 세부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확인하고, 세부 항목별 농가 선정기준, 물품 공급기준 등에 대해 적정하게 추진하였는지 검토 후 정산
- 참여농가 및 협조기관은 세부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축협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지역축협은 사업내용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후 참여농가 및 협조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등)에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마. 행정사항

- 도에서는 사업대상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추진가능성, 사업 효율성, 사업비 운용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
 - 일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사업계획(서식 3)을 작성하여 도(시·군)에 승인 (시·군에서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반드시 작성) 후 사업 추진하고 그 결과 (서식 4)를 도(시·군)에 제출
 - * (대상 세부사업) 농가 컨설팅비, 개체관리비, 농가교육비, 농가혜택(홍보)비
 - 시·군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결과가 지원 목적, 관련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계획의 단순 변경이나 전체 사업비의 10%(세부 사업비의 20%) 이내 변경은 시·군에서 (도와 협의 후) 승인
- 시·군에서는 상반기(1~2월)에 농가교육(사업설명회)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3월 말까지 도에 제출하고, 하반기에도 농가교육(사업설명회, 결과보고회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추진실태 수시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 추진상황, 부진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 연 4회 이상 지원 사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목적에 위반한 경우 지원 자금 회수 조치
- 참여농가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바. 보고사항

-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도, 서식 1) : 1월 중
- 참여농가 사업신청 및 확정(농가 → 축협, 서식 2) : 수시
- 상반기 농가 교육실시 보고(시·군 → 도) : 3. 31.까지
- 참여농가 선정 및 추진실적 보고(축협 → 시·군 → 도, 서식 5) : 매월 5일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축협 → 시·군 → 도, 서식 6) : 12. 31.까지

<붙임 1> 한우 유전체 검사 시행지침

□ 추진계획

①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 시·군별 신청(계획)두수에 따라 사업량·사업비 확정

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으뜸한우' 및 '으뜸한우송아지' 보유농가
 -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제외 대상과 동일

- 지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 단, 10두(보조)+1두(자담) 형태로 추진

※ 예시) 33두의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시 30두(보조)+3두(자담)으로 추진

- 사업내용 : 한우암소 유전체 분석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90천원/두

다. 우선순위

- ① '전남 으뜸한우' 보유 두수
- ②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보유 두수
- ③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개량의식 높은 농가

②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주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축협

나. 사업기간 : 2023. 1. ~ 12.

다. 사업 시행절차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으뜸한우 보유농가 현황을 축협에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축협(시·군)에서 선정
 - 분석(검사)두수는 가급적 가임암소의 최소 40%이상 실시하고, 가임암소가 20두 미만이면 대상 두수 50%이상 분석 추진(최소 10두 이상 추진)
- 시료채취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가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장 현장 컨설팅 반드시 실행

10.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태원 담당자 강대진	061-286-6520 061-286-6522

1. 추진방침

- 증체율 향상 보조사료를 공급하여 단기 비육 또는 증체량 증가로 농가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20%)	시·군비(50%)	자부담(30%)
700호	1,400	280	700	420

2)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한우(법인)농가
- 지원한도 : 2백만원/호 이내
 - 마리당 급여 권장량만큼만 지원 가능하며 최대 6개월 사용량 지원(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육중인 한우 사육두수만큼만 지원)

【예시】 한우 50두 사육농가, 일 권장량 20g 제품 신청 시(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20g \times 30일(1개월) \times 6개월 \times 50두 = 180kg$ 까지 지원 가능(단, 2백만원 한도)

- 지원내용 : 한우 증체율 향상을 위한 보조사료 지원
- 지원품목 : 도내 생산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사료효율 개선 및 생산성 향상(증체율 향상) 목적을 가진 보조사료
 -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제품 중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청(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장기능 개선, 사료효율 개선, 스트레스 완화, 증체율 향상 등 생산성 향상에 효능(효과)이 있는 제품
 - 송아지 설사예방 등 면역증진에 효능(효과)이 있는 제품
- ※ (품목제외) ①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도 자체)으로 지원하는 제품
- ② 2020년 이후 사료관리법으로 처분받은 업체의 모든 제품

3)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 제외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미지원 농가 중 중·소규모(50두 미만) 농가(사육두수 적을수록 우선)
 - 단, 신청농가의 사육두수 규모 차이가 5두 미만일 경우 축산관련 인증* 농가 우선
- ②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1억원 미만 지원 농가 중 사육두수 50두 미만 농가 (축산관련 인증* 농가 우선)
- ③ 그 외 사육두수 100두 미만 농가

* 축산관련 인증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정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 녹색축산농장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HACCP 인증

○ 대상자 선정 지원제외

- ① 가축 사육밀도 초과 농가
- ② 한우 자연종부 농가
- ③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한 정액이 아닌 사설 업체에서 생산한 정액을 구입하여 인공수정하는 농가
- ④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2.12.31.기준)
- ⑤ 기업농 농가(사육두수 100두 이상/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3. 1. ~ 12.

3) 제품선정

- 한우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선정 가능)

4) 사업추진 절차

-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지원 적정성 등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 ③ 사업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농가는 제품인수 시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을 확인 후 인수증에 서명
 - 업체는 제품 생산일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반드시 스티커 부착)
-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3.1.1. 이후)에 대해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 소급 적용 집행 가능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5)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이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와 해당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검증) 시·군에서는 사업비(보조금) 집행 전 반드시 1회 이상 농가별 제품 공급 실태 점검 후 자금 집행
 - 공급업체에서 농가와 계약된 이외의 제품을 대체 공급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 엄금
- 시·군에서는 농가별 공급량을 감안하여 사업 완료 전에도 중간 정산 가능
 - 정산 시, 타 지역 제품·축종별 공급제품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3.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제품을 인수받은 농가에서 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품 공급상황 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 실태조사하여 문제점 보완 조치(연 1회 이상)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추진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4. 시·군 협조사항

- 참여농가 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 '23. 2. 28.까지
-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시·군 → 도, 서식 2): '23. 3. 31.까지
- 제품 구입내역 및 공급현황, 사업완료 정산결과 제출(시·군 → 도, 서식 4) : '23. 12. 31.까지

11.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태원 담당자 조아현	061-286-6520 061-286-6525

I. 추진방향

□ 사업 목적

- 사료 급여시 개체별 정량 급여로 생산성 향상
- 인공수정, 채혈 검사 시 개체의 스트레스 감소로 고급육 생산 기여
- 한우 개체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개체관리용 자동목걸이 공급
- 사업 추진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상반기 내 설치 완료

II. 추진계획

①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20,000개
- 사업비 : 1,400백만원(도비 252^{18%}, 시·군비 588^{42%}, 자담 560^{40%})
 - 지원단가 : 70천원/개
 - 지원한도 : (사업비) 5백만원 이내/호, (사업량)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두수 내

나. 지원대상 : '20. 12. 31.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150두 미만* 한우·젓소 사육농가

- 단, 축산업 신규 허가등록 농가가 '20. 12. 31. 이전 축사임을 증빙(건축물대장 등)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소유자

* 사육두수 기준시점 : 해당 연도 사업 지침 시행일

다. 사업내용 : 자동목걸림장치 구입·설치비 지원 ※ 개보수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②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3. 1. ~ 12.

다. 대상자 선정

- 시·군은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내 대상자 선정
 -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방법 :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 1순위 : 한우·젓소 100두 미만 사육 농가
- 2순위 : 한우·젓소 100두 이상 150두 미만 사육 농가

※ 우선 순위 농가 내에서 아래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 ①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
- ② 전라남도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참여 농가
- ③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장
- ④ HACCP 인증 농장
- ⑤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농장

라. 제품 공급·설치

- 시·군은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가급적 6월 말까지 제품 설치 완료
- * 우리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제품 선정
- 사업 추진 상황 현장 점검 및 지도(수시)
 - 대상자 사업비 변경시, 예산범위 내 추진 후 도에 보고
 - 업체는 장비 설치 후 사용 전 장비활용법 교육 실시(단, 부부가 함께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부 공동 참여 권고)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시·군은 제출서류 검토 후,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중 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 한도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바. 사후관리

- 연 2회 이상 시장·군수 책임 하에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목적에 위반시 자금 회수
 - 사후관리 :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환수(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사. 기타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III.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모집 (농가→시·군, 서식 1) : '23. 2. 10.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군→도, 서식 2) : '23. 2. 15.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서식 3) : '23. 12. 29.

동물복지팀 소관

12.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박진영 담당자 송정아	061-286-6530 061-286-6532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

I. 추진방향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 기반 구축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축산 인증비용 및 가축 출하 장려금, 녹색축산농장·유기축산·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 장려금을 지원하여 환경 친화형 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으로 인증확대 도모

II.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량 : 2,000호(인증목표 2,000호)
- 사업비 : 4,000백만원(도비 1,000^{25%}, 시·군비 3,000^{75%})
- 지원축종 :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
- 사업내용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 출하장려금 지원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지원 : 녹색축산농장,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절차 : 인증신청(농가) → 접수 → 검토 → 심사 →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인증업체) → 인증비 지원
- 지원한도액
 -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무항생제축산물 : 1백만원 이내/호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3백만원 이내/호
- 지정장려금 : 녹색축산농장,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각 1백만원/호
- 지급 대상 기간 :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②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① 인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사업내용 : 인증신청비(수수료, 출장비, 심사·관리비), 시료분석비(수질, 농약, 항생제 등)
- 지원한도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2백만원 이내/호, 동물복지축산 0.5백만원 이내/호
 - 지원단가 : 인증신청비 및 시료분석 비용 등 실 인증 심사비용 적용
 - ※ 인증 신청 후 가축분뇨 등 환경시료 검사 부적합으로 심사 탈락한 경우 1회에 한해 가축 분뇨 시료검사 비용의 100% 지원(신규인증농가에 한함)
- 지급방법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의 인증서 사본과 인증비용(인증 수수료, 시료 분석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 ※ 인증 탈락 농가의 경우 가축분뇨 시료 검사 비용 입금 확인 후 집행
- 추진요령
 - 시장·군수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및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가능 농가를 파악하여 대장 관리하고, 농가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속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읍면) 소속부서 개인별로 목표량 부여 및 인증대상자 지정·관리
 - 인증 대상농가 선정 : 재인증(갱신) 및 신규 농가
 - 건축물관리대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 구비농가
 - ※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업체와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허가(신고)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인증업체와 충분한 협의 필요)
 - 축산물 브랜드 및 계열업체 참여농가로 친환경축산 마인드가 높은 농가
 - 재인증 도래농가는 반드시 인증 받도록 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리 철저
 - 법적조건이 구비된 정책사업 대상자 중 미 인증농가 반드시 선정

- 인증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인증 대상농가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단(무허가 축사 보유,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 인증 신청서 작성요령 지도 및 신청서류 발급 협조
 - ※ 인증 신청농가의 애로사항이 경영장부의 기록관리 사항이므로 인증업체와 합동으로 인증대상농가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

○ 인증기준 및 절차 등

- 인증기관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민간 전문인증기관/ 동물복지축산(정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 인증신청 : 연중 가능
- 인증종류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정부)
- 인증기준 : 사육환경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입식 및 출하,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인증절차 : 인증신청 → 접수 → 검토 → 심사 → 인증 → 인증비 지원
- 유효기간 : 1년

② 출하(생산)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농업법인)

-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위탁사육 수수료를 받는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 ※ 계열화 사업자가 아닌 사육농가에 지원 * 지역축협은 지원 제외
- 가족 등 동업인에 대해서는 “구성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서 출하분 인정
 - ※ 인증받은 동일 농장 및 가축이어야 하며, 관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업인의 명의로 출하한 경우에만 인정(축산물이력제 등으로 확인)
 - 예) 동일 농장의 인증 한우를 거세우는 남편 명의로, 육우는 아내 명의로 출하
-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부부의 경우는 1농가로 인정하고, 부자(녀)간에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는 개별농가로 구분하여 각각 지원

○ 지원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사업내용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증 받은 가축 및 인증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가축),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출하(생산)된 축산물(가축)에 대하여 출하(생산) 장려금 지원

○ 지원한도 : 무항생제축산물 1백만원 이내/호,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3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 최대 지원한도 : 농가당 3백만원

○ 지원단가

- 무항생제축산물 : 한우(65천원/두), 젓소(우유, 10원/1ℓ), 돼지(6천원/두), 산란계(달걀, 1원/개), 육계(60원/수), 오리(120원/수), 메추리(알, 4원/10개), 산양(4,580원/두), 사슴(녹용, 513원/냥)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 한우(170천원/두), 젓소(우유, 50원/1ℓ), 돼지(16천원/두), 산란계(달걀, 10원/개), 육계(200원/수), 산양(4,580원/두)

※ 지급단가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급기준 적용

○ 지급방법 : 인증 유효기간 내 출하된 축산물의 매매증명서(가축시장 등) 및 출하증명서 (도축장, 도계장, 도압장, 유업체 등), 송아지 생산내역 확인 후 농가에 지급

- 시·군은 지급 시점에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지 확인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않은 가축 및 생산물에 장려금을 지원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철저

· 농가에서 부분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한우 번식우 등은 인증을 받지 않고 비육동안 인증을 받는 경우 등) 인증받지 않은 축산물에 대한 출하(생산)장려금 지급 제외

○ 지급시기 : 연중 상시 지원(월별 또는 분기별 등)

○ 추진요령

① (장려금 신청)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는 인증서 사본과 출하(생산) 가축(생산물)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

※ 생산 송아지에 대해서는 이력제 출생 신고 완료 후 장려금 신청

※ 단체 인증을 받은 경우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축산농가에 지원

② (인증 유효기간 확인) 시·군은 장려금 신청이 접수되면 인증 유효기간 확인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조회

* 동물복지축산농장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조회

- 인증이 취소되고 신규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규 인증일을 최초 인증일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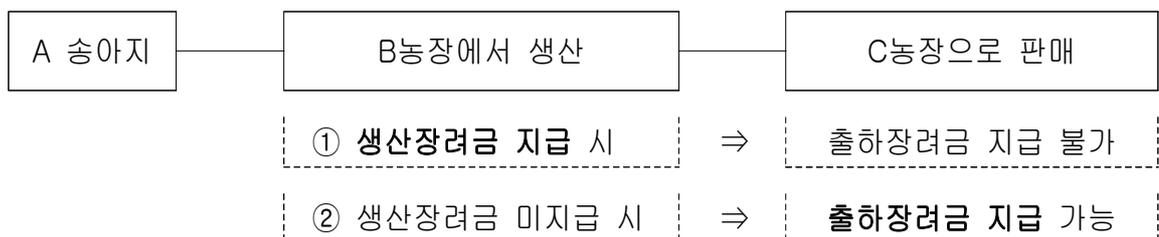
※ 인증기관의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기간의 단절이 생긴 경우에는 공백 이전의 최초 인증일을 인정. 단, 그 기간은 2개월 이내여야 함

③ (사업비 집행) 시·군은 출하(생산) 가축(생산물)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인증 농가에게 사업비 집행

- 지원금 신청서와 생산·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 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일치 여부 검토

· 신청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입식자료와 판매자료, 실제 사육면적, 회전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 동일 농장에서 동일 개체에 대한 중복 지급 불가



< 출하내역 확인 증빙서류(예시) >

- 한·육우 : 가축시장 출하 정산내역(축협) 및 도축장 정산서(도축장)
 - ※ 출하가축에 대한 이력추적번호 확인 등(소 이력관리시스템 조회)
- 젓소 : 유업체 납유실적 증명서(낙농협동조합)
- 돼지 : 생돈 출하정산서(도축장)
- 육계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산란계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 집하장·유통상인)
- 오리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메추리알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 집하장·유통상인)
- 산양 : 도축검사 증명서(도축장), 유통상인 등 거래(전자세금계산서)
- 사슴 : 녹용출하 증명서(한국양토양록조합 등), 일반거래(전자세금계산서)
- 기타 지급기준(계란, 메추리알)
 - 산출기초 : $\{(인증마리수 \times 20개 \times 단가 \times 개월 수) - (입증량 \times 단가)\} \times 0.5$
 - 위 산출 기초는 농가가 입증자료 외 슈퍼, 식당, 빵집 등 소매로 출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간이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경우, 소매로 다량 판매되는 계란, 메추리알만 현재 출하사항을 고려해 인정함
 - ※ 객관적인 서류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은 1/2만 지급(계란, 메추리알) 서식의 (입증량 \times 단가)란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한 출하량에 대한 장려금

<산출서식 이용의 예>

조건	- 인증종류: 무항생제 - 인증품목: 산란계(계란) - 인증마리수:20,000마리(12개월 유지) - 출하실적: (전자세금계산서) 2,400,000개 / (간이영수증) 2,000,000개
직불금 계산	$= \textcircled{㉠} \text{ 전자세금계산서} + \textcircled{㉡} \text{ 간이영수증 등 부분 산출 서식}$ $= 2,400,000\text{원} + 1,200,000\text{원} = 3,600,000\text{원}$ ※ $\textcircled{㉠} : 2,400,000\text{개} \times 1\text{원/개} = 2,400,000\text{원}$ $\textcircled{㉡} : \{(20,000\text{마리} \times 20\text{개/마리} \cdot \text{개월} \times 1\text{원/개} \times 12\text{개월}) - (\textcircled{㉠})\} \times 0.5 = 1,200,000\text{원}$

③ 지정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받은 날로부터, 지정 자격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농업법인)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농업법인)

○ 지원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

○ 지원한도(규모와 관계없이 호당 지급)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각 1백만원/호

○ 지급방법

- (최초지급)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반복 지급) 최초 지급 후 매 1년 단위 시점 인증 유지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인증 유지 확인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s://www.enviagro.go.kr>), 동물보호관리 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인증농가 명단 확인
- 현지출장 확인 : 불임 3, 4 활용

★ 장려금(출하, 지정) 지급 제외

- 장려금 지급대상 농가 중 주요가축전염병(구제역, 소브루셀라, 소결핵, ASF, AI) 발생농장은 전염병 발생 이후 연속 2회 장려금 지급 제외

III. 행정사항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방지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3. 1. 1.이후)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를 소급 적용하여 집행
- 인증비 집행에 차질 없도록 시·군비 등 예산 확보 철저
- 각종 축산시책 사업은 인증을 받은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 확산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소비가 확대 되도록 지역행사에 우선 지원하는 등 유통·홍보 강화 (인증농가 조직화 포함)
- 분기별 시·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장려금 지급 농가의 녹색축산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서 제출 :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시·군 → 도) : '24. 1. 10.까지
 - 예산 이월시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보고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현황(광주·전남)

인증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주)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김하연	광주 서구 상무화원로	062-385-8882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민정준	광주 북구 용봉동	062-530-2034	
토지글로닉스 주식회사	김덕주	광주 서구 매월동	062-655-0755	
해진친환경영농조합법인	김대영	광주 광산구 목련로	062-956-9320	
농업회사법인 제이케이 (주)	이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062-418-5867	
(주)한국농산업인증원	장용준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062-973-9002	
국립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허재선	순천시 중앙로 255	061-750-5471	
(주) 유기식품평가원	장우진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062-953-0411	
(주) 유기농진흥원	오영현	담양군 담양읍 객사2길	061-381-1217	
도담친환경(유)	선중근	광주 북구 본촌택지로	062-574-9339	
(주)그린인증원	김생훈	광주 북구 양산제로	062-464-9300	
(주)친환경인증센터	문현욱	순천시 서면 화정길	061-753-5115	

13.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박진영 담당자 송정아	061-286-6530 061-286-6532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농가를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

I. 추진방향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준비 중인 농가에 축사 시설 개선 비용 등을 지원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기 위한 시설 위주 지원으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확대 도모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특징>

- 사육밀도 : 적정 사육밀도 기준보다 5~15% 이상 저밀도 사육
- 가축운동장 : 축종별 권장면적 확보(한우 5㎡, 돼지 1.4㎡, 닭 1.1㎡ 이상 등)
- 자연환기 : 투광 지붕 및 개폐식 지붕 설치
- 농장경관 : 축사 주변 조경수 등 농촌경관 조성 등

II.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100호	1,000	150	450	4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45%, 자담 40%

* 지원한도 : 10백만원/호, 지원한도액 내에서 실 구입비 지원

- 사업대상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인증 농장,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중 1가지 이상 기 지정(인증) 및 지정(인증) 준비 농가

- 대상 축종 :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염소

* 염소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제외

○ 지원기준

- ①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증(유기·무항생제인증, HACCP 인증) 농가는 녹색축산농장 지정 기준 중 필수사항 의무 설치 시 지원대상에 포함
 - 필수 의무 사항 : 사육밀도 5~15% 확보, 가축운동장 확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방지턱 설치, 농장 주변 경관 확보
 - ※ 축사 내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를 초과하여 면적 확보 시 운동장 확보 인정
- 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기위해 준비 중인 농가에서 지정 기준에 맞게 설치(또는 시설개선)시 지원
- ③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기 지정 농가도 동물복지형 농장 유지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차순위로 지원
- ④ 유기·무항생제 인증 준비 중이거나 안전관리인증(HACCP)을 준비 중인 농가에서 인증기준에 맞게 설치(또는 시설개선) 시 지원

○ 우선 순위

- ① 금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을 받으려는 농가
 - ②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으려는 농가
 - ③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기 지정 농가
 - ④ 유기·무항생제 인증 준비 중인 농가, 안전관리인증(HACCP)준비 중인 농가
- 사업내용 : 동물복지형 축산 사육시설 설치 및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비용 등
- 축사시설 개·보수, 사양관리·사육환경·방역시설 개선, 축사주변 경관조성 등

2 추진방법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지원자격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하지 않은 농가
 - 축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적법화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장, 안전관리인증(HACCP)을 지정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및 교체 지원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환경보전을 위한 주변 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기타시설 : 가축운동장 설치,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방지턱, 차량 및 출입자 소독시설 등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상적 보조*를 제외한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개선 및 깨끗한 축산농장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
 - * 깔짚, 소독약품, 미생물제, 악취저감제 등
 - * 단 도에서 지원하는 타 사업과 중복지원 농가는 제외
 - 예) 가축 폭염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품목(환풍기 등)

○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농가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인증농장,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중 1가지 이상 지정(인증)을 받아야 함, 위반 시 보조금 회수
 -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 지정기한 연장 가능

3] 추진요령

< 사업 신청 >

- 시·군에서는 연초 사업지침에 따라 농가에 사업 홍보 실시
 - 사업 홍보 시 신청농가 사업 의무사항 필히 안내
 - *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또는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인증 농장,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중 1가지 이상 지정(인증) 받는 조건으로 사업 신청
- 농가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또는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인증, 안전관리인증(HACCP) 자가점검표 점검 후 시·군 및 읍·면·동에 사업 신청

< 사업 대상자 선정 >

- 시·군은 사업신청자 자가채점표 확인 후 사업목적에 적합한 신청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시·군은 사업 대상자 확정 결과를 도에 보고(3.15.까지)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

- 지원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교부 신청
 - 지원대상자는 시·군에서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교부 결정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시·군은 지원대상자의 교부 신청에 따라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미비 시 보완 조치 지시
 - * 사업주관 부서(시·군)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지원대상자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사업추진 >

- 시·군은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현장 확인
 - * 교부결정 이후 지원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사업 미 추진시 시·군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 미 추진 사유서 징구 등 연내 사업 완료토록 적극 조치

< 자금교부 및 집행 >

- 시·군은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시·군은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통장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인
 - * 시·군은 지원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위임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 환급 받는 경우 사업비 정산 시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미리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 추진 및 관련 법령 위반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대상자가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았는지 확인, 미 지정시 보조금 회수 조치. 단, 기한 내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 지정기한 연장 가능
- 도 또는 시·군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평가 현장심사 시 지원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III. 행정사항

- 시·군은 깨끗한 축산농장 및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동시 지정 받도록 사업신청 유도(붙임 3 참고)
- 시·군은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시는 대상자 신속히 변경 추진
- 해당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지원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가능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군 → 도) : '23. 3. 15.까지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시·군 → 도) : '24. 1. 10.까지
 - 예산 이월시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보고

14.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김고은 주무관 노금성	044-201-2616 044-201-2617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장 박진영 담당자 송정아	061-286-6530 061-286-6532

I. 사업개요

1. 목적

- 신규 참여 희망농가 및 기 인증 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을 통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2.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3. 사업 주요내용

- 농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

II.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 동물복지축산농장 신규 참여 희망 경영체(개인·법인) 및 기 인증 경영체(개인·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하지 않은 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3. 지원자 우선대상

- 동물복지축산농장 신규 참여 희망 농가(법인)

4.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10백만원(국비 4백만원, 지방비 3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이내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7. 지원형태 및 지급대상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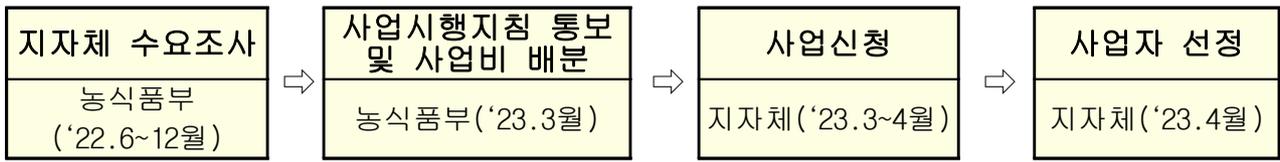
-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지급대상기간 : '23. 1. 1. ~ '23. 12. 31.(1년간)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방지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3. 1. 1.이후)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를 소급 적용하여 집행
- 컨설팅 완료보고서 등을 확인 후 지급

8. 컨설팅 지원분야

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지원 대상자
기반 조성	시설/ 운영개선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재고관리, 각종 서류 및 절차 지원 등 컨설팅 수행	<u>신규참여 희망 경영체 (개인법인)</u>
경영 역량 강화	생산관리	농가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보급, 축산 사양 및 사료 관리, 종축 및 번식관리, 질병관리, 노동력 및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질병관리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른 질병예방프로그램 및 건강관리에 대한 컨설팅 수행	
지속 성장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관리 컨설팅 수행	<u>기 인증 경영체 (개인법인)</u>
	6차산업화	생산된 축산물 또는 농장을 활용하여 상품 아이템을 발굴하고 판매 및 서비스를 하기 위한 상품개발, 가공기반 구축, 유통 및 판매 전략 수립,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Ⅲ.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신청 및 사업자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23년 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수요조사 등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사업량 통보

<동물복지 축산 인증 농가 및 희망 농가>

- (컨설팅 업체선정)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인증 컨설팅업체와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업체('21년부터 추가) 중 컨설팅 추진실적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업체 선정
 - 컨설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인증 업체와 외부 전문가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외부 전문가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구성)
- (수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업체와의 협의(경영체 현황진단, 희망내용, 목적 등)를 통해 수행계획서 작성
- (사업신청) 접수기간 동안 사업신청서와 사업신청 관련서류 및 수행계획서를 모두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접수처 :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
 - 접수기간 : 4월 이내 상시 접수(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하여 추가 접수)
 - 구비서류

사업신청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윤리강령 서약서	별지 제2호의1서식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결산서로 대체 가능
농업경영체 증명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증		
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컨설팅업체>

- (수행계획서 작성) 컨설팅업체는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수행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수행계획서 작성 기준

(컨설팅분야) 성장 단계를 고려한 컨설팅 분야 선택 권장. 단, 수요자 요구에 따라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컨설팅 분야 3개 이내로 설정)

(수행기간·횟수) 컨설팅분야를 고려하여 3~5개월 이내, 컨설팅 횟수는 15회 이상으로 하되, 수행계획서 상에 사업기간 산정기준 및 당위성을 명확히 기재

* 컨설팅 시작일 : 수행계획심사 승인 완료일 이후 컨설팅 시작일 반영 필수

* 컨설팅 완료일 : ~'23년 11월 29일 이전 완료 필수

(투입인력구성)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투입일수 비율은 내부인력 50% 이상으로 해야 함

*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외부 전문가 활용 시 외부 컨설턴트로 추가 등록(자격기준 관련 증명서, 사업참여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컨설턴트로 등록 및 승인 후 활용

○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성과목표) 각 항목별 컨설팅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핵심성과지표 제시

* 정성적 지표 1개, 정량적 지표 1개 이상 필수

(컨설턴트) 1인당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50일 이하 제한

<시·군·구>

- (사업홍보) 사업 지원조건, 지침 안내를 위한 자체 설명회 등 추진
- (사업신청접수 및 사업자선정) 경영체로부터 사업신청 관련서류 및 수행계획서를 접수받아 수행계획서와 지원자격 및 요건, 우선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경영체를 심사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보고
- (선정결과 통보) 최종 선정된 경영체에 결과 통보하고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 추진 절차, 지침 등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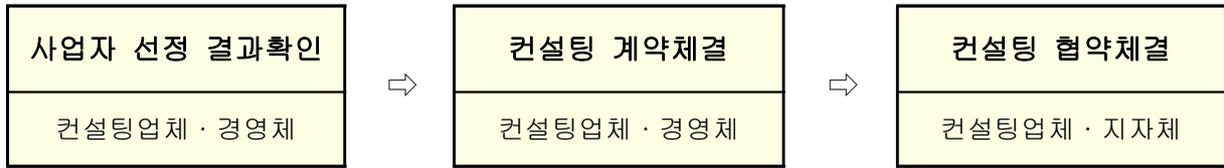
<시·도>

-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지원대상 선정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최종 선정된 경영체 명단 시·군·구에 통보
- (사업비 배분) 시·군별 컨설팅 수요와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사업비 배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분)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비 배분

2. 계약 및 협약체결



<경영체>

- **(계약체결)** 시·군·구 선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컨설팅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 계약서 사본을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제출 후 컨설팅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통장에 입금('23년부터 예치형으로 사업 전환)
 - 컨설팅 자부담금이 컨설팅업체에 우선 입금된 뒤 사업경영체는 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증권을 받아 보관
 - 경영체는 계약 시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구는 컨설팅업체에 직접 비용 지급 가능
 - * 자부담금은 사업시작 전 50%, 중간점검 이전까지 50% 2회에 한해 분할 납부 가능

<컨설팅업체>

- **(협약체결)** 시·군·구 선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시·군·구와 '동물복지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 를 작성하고 협약체결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 자부담 입금확인서(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 컨설턴트 윤리강령서약서 원본[별지 제2호의2서식]

<시·군·구>

- **(협약체결)** 컨설팅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동물복지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 를 작성하고 협약 체결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 (지자체 요청) 컨설팅 관련 서류 및 외부컨설턴트 사업참여 동의서(별표4)
- (계약금 입금 확인) 보조금 입금영부(입금통장 사본 등) 확인

- **(협약중지)** 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컨설팅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항' 에 해당될 경우 협약 중지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영체에 통보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항(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 * 사업포기의 경우 반드시 사업포기서(공문포함)[별지 제18호서식] 제출(지자체 → 농식품부)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
- 컨설팅 운영 부실 및 부정한 용도로 사업비 사용

3. 사업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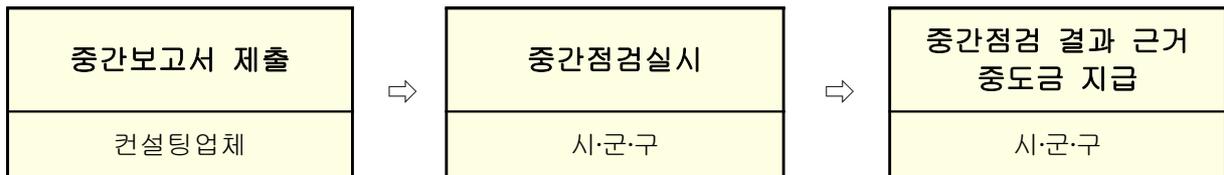
<컨설팅업체>

- (수행일지 작성)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컨설팅 투입일수에 맞추어 컨설팅 건별 수행 일지 등을 작성하여 컨설팅 수행 후 10일 이내 시·군·구 제출
 - 수행일지 작성 및 제출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고속도로 통행요금 영수증, 출장이행 증빙자료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함
 - * 수행일지는 컨설팅 추진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면담, 인터뷰 내용, 제공자료 등)

<시·군·구>

- (컨설팅수행점검) 수행일지(현지영수증 등)를 확인하고 지원 경영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내용 및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

4. 중간점검



<컨설팅업체>

- (중간보고서 작성)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간보고일(또는 계약기간이 1/3 경과 시) 까지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시·군·구에 제출
- (중도금 신청) 시·군·구의 중간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의 경우, 시·군·구에 경영체를 통해 중도금 신청
 - * 시·군·구는 농업경영체가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경우 컨설팅업체에 중도금 지급 가능

<경영체>

- (중간보고서 확인) 컨설팅업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기타 컨설팅 수행결과 산출물을 확인한 후 원문에 서명

<시·군·구>

- (중간점검 실시) 컨설팅업체가 중간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중간점검 평가표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컨설팅 수행 효과 및 계약 불이행 사항 등 확인
 - * 중간보고서 원문에 경영체가 서명했는지 여부 확인

중간점검 개요

- (점검방법) 현장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의 면담 및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점검
 (점검시기) 컨설팅업체의 중간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주 이내
 (점검항목)
- ① 수행계획서 대비 컨설팅 추진의 적합성(수행일지 확인)
 - ② 수행과정의 효율성과 충실도(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중간보고서, 산출물 등 확인)
 - ③ 수행목표 대비 진행상태(중간보고서 요약 및 원문 확인)

- (중간점검결과) 중간점검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중간점검 결과가 ‘정상’ 인 경우 컨설팅업체에 중도급 지급, ‘미흡’ 인 경우 개선촉구 및 지원취소 조치

중간점검결과 조치사항

구분	세부내용	조치
정상	· ‘적정’ 6개 이상인 경우	중도급 지급
보완 요청	· ‘미흡’ 4~5개 또는 ‘관정보류’ 4개 이상 발생 시 · ‘미흡’ 및 ‘관정보류’를 합하여 6개 이상 발생 시	개선 촉구
협약 취소	· 미흡사항 6개 이상 발생 시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불량업체 신고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협약 취소

5. 완료보고

<컨설팅업체>

- (완료보고 제출)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완료보고일(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까지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아래의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① 완료보고서 요약, ② 완료보고서 원문, ③ 수행일지 사본, ④ 기타 산출물 (회계장부 등), ⑤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

* 단, 컨설팅업체는 사전·사후 역량진단 분석결과보고서도 제출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완료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방법) 경영체, 지자체 대상 서면 제출

* 단,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는 경영체 서명 포함하여 지자체 별도 제출

- (완료보고 보완)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보완’의 경우 1개월 이내 보완사항을 이행 후 경영체와 시·군·구에 재보고

<경영체>

- (개별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 협조) 개별경영체는 컨설팅업체가 실시하는 사후 역량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 (완료보고 확인)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컨설팅업체가 시·군·구에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
- (완료보고 보완이행) 완료보고서 점검결과 ‘보완요청’에 해당될 경우 컨설팅업체와 협의하여 보완사항 이행

<시·군·구>

- (완료확인서 접수확인) 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를 접수확인 하여 사업완료현황 파악
- (완료점검 실시) 컨설팅업체가 완료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점검 평가표에 따라 심사실시(심사는 정상완료/재작성/감액/협약취소로 구분하여 평가)
- (협약취소)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계약기간(수정·보완기간 포함)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취소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 (완료점검 결과) 심사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해당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정상완료’ 이외의 경우(보완, 재작성, 감액, 협약취소) 다음과 같이 조치

완료점검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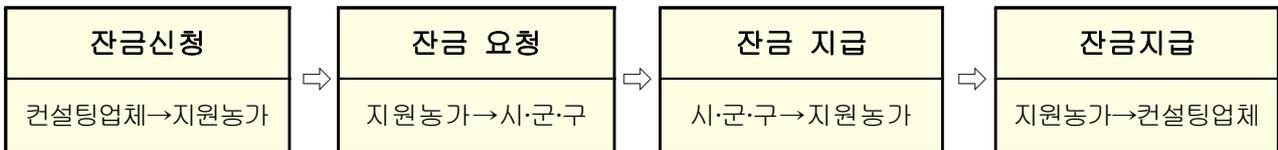
구분	점검
정상완료	60점 이상
보완 (부분수정)	55점 이상~60점 미만
재작성 (전면수정)	55점 미만
협약취소	50점 미만

구분	재점검
정상완료	60점 이상
감액	55점 이상~60점 미만
협약취소	50점 미만 또는 제출기한 위반 (1차 15일, 2차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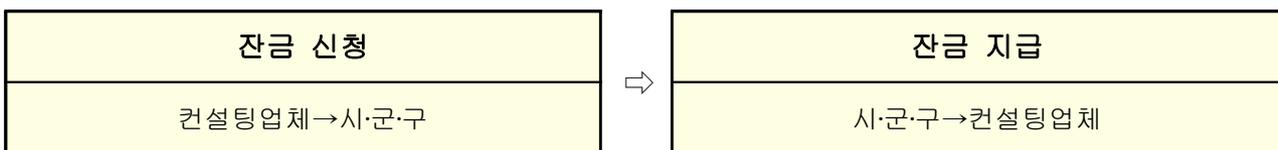
완료점검 조치사항

평가결과	조치사항	비고
정상완료	· 사업비 잔금 지급	사업비정산
보완	· 점검 결과 55점 이상~60점 미만일 경우 30일 이내에 완료 보고서를 보완·수정하여 경영체와 시·군·구에 보고	개선촉구
재작성	· 점검결과 55점 미만일 경우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재작성(100%)하여 경영체와 시·군·구에 보고	
감액	· 재점검 결과도 50점 이상~60점 미만일 경우 감액산출기준에 근거하여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 회수 또는 미지급	감액반영
협약취소	· 점검 및 재점검 결과 50점미만일 경우 - 귀책 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 회수 - 귀책 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금 회수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6. 사업비 정산



* 정산위임시



<컨설팅업체>

- (사업비 잔금 신청) 완료보고서 ‘정상완료’ 인 경우, 경영체에 잔금 지급 신청

<경영체>

- (사업비 잔금 요청) 시·군·구에 잔금 요청
- (사업비 잔금 지급) 시·군·구에서 지급받은 잔금 컨설팅업체에 지급

<시·군·구>

- (사업비 잔금 지급) 경영체가 잔금신청을 하면, 지급기준일(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 인 경우 10일 이내)을 준수하여 지원농가에 사업비 잔금 지급
 - * 경영체가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경우 시·군·구는 컨설팅업체에 잔금 지급 가능

IV. 사후관리 및 기타 사항

1.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계약의 무효·해지>

- (협약해지) 시·군·구는 아래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컨설팅업체와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협약해지 사유

-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사업완료 및 컨설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체 또는 컨설팅업체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간·완료점검 및 기타 필요에 의한 수시 점검 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사업관리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지자체의 수행계획서 심사, 중간·완료점검결과가 부적합하여 선정취소가 된 경우 등
- 법인경영체의 경우 사전역량진단결과 컨설팅성과 및 기대효과가 미흡한 경우(선정 취소)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금회수)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가 확인된 경우, 즉시 자금을 회수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중도해지 등에 따른 실비 정산 시 투입일수를 근거하여 산출하되 국고/지방비/자부담 비율대로 정산

<계약의 변경>

- (수행계획변경요청) 아래의 사유에 의한 계약변경은 중간보고 전 1회에 한하여 경영체와 컨설팅업체 간 합의 후,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승인 요청서에 서명날인 후, 시·군·구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 그 외 사유에 의해 계약변경 승인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 및 감액 처리

계약변경 사유

- 컨설팅 내용, 기간,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등 변경
- 투입인력의 구성변경(단, 컨설턴트 변경 시 동일한 등급의 컨설턴트를 투입하여야 하며, 당초 협약 금액 변경 불가)
- 컨설팅 비용 변경
- 컨설팅업체 변경 * 이때 사업기간은 계약일 이내 잔여기간으로 함
- 그 외 컨설팅 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조치보고)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시 그 내용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취합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현장점검

<농식품부>

- (합동점검)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사업담당자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성과지표 관리, 컨설팅 추진현황 및 계약 이행 여부 등 지도·감독

<시·도>

- (현장점검결과보고) 현장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제재 및 처벌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 및 처벌 조치
 - 문제 발생 시 지자체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 중대한 사항 발생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활용 가능)하여 문제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재수위 결정
 - 부정수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예: 미자격자가 보조금 수령 등), 당사자가 부정수급 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환수 결정, 그 외 검찰 기소 처분시 환수 결정

<컨설팅업체>

- 결격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관련 결과를 농정원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통보
 -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차기 해당사업 참여 제한하고, 농정원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관련 결과를 통보하여 농업경영컨설팅사업(농정원 일자리지원실 044-861-8774) 및 축산물 HACCP 컨설팅업체 인증에 통보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인증(계약)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며, 향후 해당사업 참여불가
 - 컨설팅 성과물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 컨설턴트 경력 및 자격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컨설팅 업체가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컨설팅>

- 컨설팅이 컨설팅과 연계하여 판매행위 등을 하는 경우 향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경영체>

- 경영체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구자료 미제출 시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회수
- 시·군·구의 중간점검, 완료점검 및 컨설팅업체의 역량진단을 받지 않는 등 사업협조에 불성실할 경우 향후 1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보조사업 지원 제한
-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
 - 부정행위 금액에 따라 농림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부당사용사유 등의 지원의 제한

- ①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 ②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 ③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 ④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 ⑤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5. 보고 및 사후관리

- 시·군·구는 계약체결, 사업추진현황, 사업성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는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의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군·구는 컨설팅 계약체결 및 취소상황 등을 수시로 시·도에 보고하고 관리
 - 시·군·구는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의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
- 시·군·구는 컨설팅 완료 신규참여 농가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3년 이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정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사후 관리(시·도는 시·군·구 진행상황을 반기별 확인)

V. 평가 및 환류

1. 평가

- 농식품부로 사업 종료 후 정산 결과보고서 및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

2. 환류

- 컨설팅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한 경영체에 대해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15.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박진영 담당자 송정아	061-286-6530 061-286-6532

1. 목 적

- 낙농 환경(질병)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대체인력) 지원으로 낙농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
- 낙농가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력 재충전으로 생산성 향상

2. 추진방침

- 낙농가의 신청에 의거 해당지역 컨설팅 요원이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
- 낙농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시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3. 지원계획

- 사업량 : 2,500회
- 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100, 시·군비 250, 자담 150)
 - 재원 : 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 *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재원별 지원 비율을 준수하고,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지원단가 : 200천원/회
 - * 시·군별 여건(이용농가 수 등)에 따라 이용횟수는 증가 가능하나 이용단가는 지원단가 이하 추가
- 지원내용 : 낙농 환경(질병) 개선을 위한 컨설팅 이용료 지원

4. 세부 실시요령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방법 : 시·군에서 직접 시행 또는 보조사업자가 대행
 - * 보조사업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 집유조합,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
 - * 보조사업자가 시행할 경우 시·군별 자체 세부기준 마련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한 컨설팅 요원
 - 현장 낙농경험이 풍부하고 낙농가에 대한 봉사자세를 갖춘 심신이 건강한 컨설팅 요원
- 수혜대상 : 다음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 농가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에 의한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낙농가
 -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 농가당 이용횟수 한도
 - 사업시행기관에서 참여농가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횟수 배정
 - 갑작스런 애사 등 발생 농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

5. 담당기관별 역할

- 도
 -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실시요령 시행 및 사업추진 지도·감독
 -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낙농가)에 홍보
 - 시·군 자체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실시요령 시행 및 사업추진 지도·감독
 - 자부담금 부담 이행여부, 이용농가 호응도, 일지 기록관리, 작업이행 실태 등
 -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
 - 다음 내용을 포함한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컨설팅 요원 확보방법, 인건비 지급기준, 업무 및 책임 등
 - 컨설팅 요원 교육(축산관련 교육 수료 후 사업에 참여 조치)
 - 컨설팅 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후 사업 참여 조치
 -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이용료 중 농가 부담액 확보 방안
 - 소 질병발생, 도난, 폐사 등 이용농가 피해 발생의 경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명시
 - 분쟁 발생으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민법 등에 의한 해결 방안 등
 - 사업추진 기간 중 수시 및 분기별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컨설팅 요원의 업무 실적에 따른 관련 서류 및 이용농가 확인 후 보조금을 컨설팅 요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 조치
- 컨설팅 요원
 - 자 격 : 현장 낙농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낙농가에 대한 봉사자세를 갖춘 심신이 건강한 자
 - 업무 범위 : 착유, 질병관리, 사양관리 등 지원
 - 1일 작업이 끝난 후 이상 유무를 이용농가에 인계할 것
 -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작업일지 작성[서식 3] 후 농가의 확인(날인)을 받아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6. 사업추진요령

- 보조사업자는 농가로부터 컨설팅 이용 신청이 접수되면 농가가 신청한 날짜에 맞춰 시행하되 농가가 신청한 이용일이 겹칠 경우는 농가와 날짜를 조정하여 시행
- 길흉사·질병·불의의 사고 농가에 컨설팅 우선 지원 조치
- 컨설팅 이용에 따른 사고시 책임 소재는 농가나 컨설팅 요원간에 책임 정도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처리 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는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
- 기타 컨설팅요원의 근무시간, 업무, 이용자의 의무 등 제반 사항은 사업시행 기관의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시행

7. 자금집행과 정산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방지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3.1.1. 이후)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를 소급 적용하여 집행
 -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보조사업자는 농가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비를 관할 시·군에 보조금 신청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검토 후 농가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비를 보조사업자에게 송금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컨설팅요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 조치
 - 농가 자부담은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
- 시·군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업비를 중간 정산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도에 완료·정산보고 실시

8. 사후관리(시·군)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연 2회이상 점검하여 지원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등 조치
- 관련 서류 허위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정부지원 사업 자금 지원 중단

9. 행정사항(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제출
-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정산 결과 제출 : '24. 1. 31.까지

16. 젖소 개량(등록·심사)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박진영 담당자 송정아	061-286-6530 061-286-6532

I. 추진방향

- 전남 젖소개량의 선제사업으로 젖소 혈통(기초·혈통·고등)등록, 선형심사 및 검정을 지원하여 유전적·경제적으로 우수한 젖소개량 집단 확보
- 등록·심사 및 검정 사업을 통한 전남 젖소 개량기반 구축 및 농가 개량인식 제고

II. 추진계획

1]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30%)	시·군비(70%)	자담	
4,000두	80,000	24,000	56,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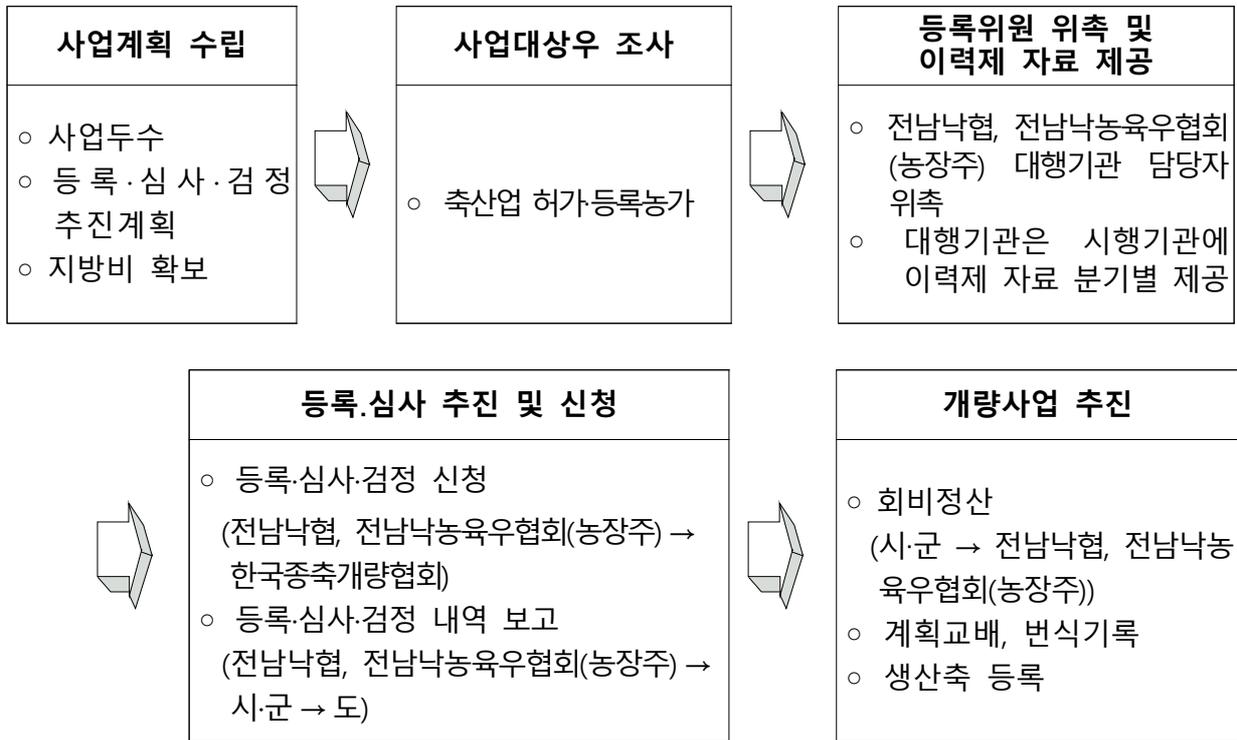
나.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젖소 사육농가
- 지원우선 순위
 -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농가
 - ② 농림축산식품부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 농가
- 사업내용 : 젖소 능력 개량을 위한 등록·심사 및 검정 비용 지원
 - 등록·심사를 필한 농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검정비용 지원

다. 등록·심사 및 검정 요건

- 등록·심사 및 검정은 한국종축개량협회 공고 2009-11(2009.8.20.) “가축외모심사기준”, 한국종축개량협회 “종축등록기준”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젖소검정기준”에 따르는 젖소에 한함

〈업무 추진절차〉



○ 기초등록 절차

- 기초등록 신청 ⇒ 홀스타인종 기준(모색 등) 적합 ⇒ 기초등록 ⇒ 농가에 우편 발송

○ 혈통등록 절차

- 송아지 생산신고 ⇒ 생산개체 확인 ⇒ 혈통등록 신청 ⇒ 혈통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 고등등록 및 선형심사 절차

- 심사 신청(낙협·농가) ⇒ 심사대상우 파악 ⇒ 심사일정 협의 ⇒ 심사 및 심사결과 현장제공 (연 1회 이상 실시) ⇒ 신규 고등등록우 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 유우군 능력검정 및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에 고시된 젖소검정기준과 가축개량사업 세부시행지침 규정에 의거 검정항목 및 절차 이행

* 검정항목 : 산유능력, 번식능력 등 16개 항목

- 검정원 입회하에 검정하되 검정시기는 30±5일 간격으로 실시 될 때 지원
- 질병치료, 방역, 품평회 등 공식행사 참여 또는 검정입회 간격이 31~35일이 되어 특정 월에 검정이 안 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일시 검정중지 젖소에 대하여는 1비유기중 1회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을 허용
- 기타 검정방법은 세부추진계획(농협중앙회) 준용

라. 등록단계별 지원금액

구분		금액	지원비율		
			도 비	시·군비	자 담
등록비	기 초	8,000~10,000원/두	30%	70%	-
	혈 통	5,000~10,000원/두	30%	70%	-
	고 등	20,000원/두	30%	70%	-
선형심사비		12,000원/두	30%	70%	-
검 정 비		15,000원/두	30%	70%	-

※ 검정비(15,000원/두)는 10회(월) 지원비용임.

② 추진체계

- 총괄기관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주관기관 : 시·군
- 시행기관 : 한국중축개량협회
- 대행기관 : 전남낙협(농장주 포함)
- 협조기관 : 농협 전남지역본부(축산)

<기관별 역할 분담>

구분	기관명	주요업무
총괄기관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재원확보 및 시·군별 자금 배정
주관기관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사업에 따른 시·군비 확보 및 집행 ○ 등록·심사·검정사업 점검 및 지도
시행기관	한국중축개량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심사·협회검정농가 검정우 전산입력 및 전산서비스 제공 ○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등록·심사·검정사업 지도 ○ 공무원, 낙협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대행기관	전남낙협, 전남낙농육우협회 (농장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청, 등록우 관리, 이력제 자료제공 ○ 낙협 검정농가 검정우 전산입력 및 전산서비스 제공 ○ 등록·심사·검정회비 정산
협조기관	농협전남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낙협 업무협조 독려·지도

③ 사업시행

가. 등록·심사 및 검정 계획수립

- 시·군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 젓소개량 지원계획 수립 및 시·군비 확보
- 시·군은 농식품부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에서 사육 중인 두수가 우선 등록 (기초, 혈통, 고등) 및 심사되도록 계획에 포함
 - 시장·군수는 전남낙협으로부터 젓소개량 참여농가별 사육두수, 등록두수, 송아지 생산두수 등을 제출받아 등록·심사 및 검정계획수립

나. 등록·심사 및 검정기준

- 등록·심사 및 검정대상우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의 젓소와 그 젓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 등록·심사 및 검정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 '종축등록규정' 및 '홀스타인종 선형평가 표준'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젓소검정기준'에 의함
- 등록·심사 및 검정 단계별 대상우
 - 기초등록 : 등록된 홀스타인 수소와 홀스타인종의 모색 및 특징을 가진 암소에서 생산된 개체
 - 혈통등록 : 혈통등록 된 홀스타인종 씨수소와 기초등록 된 암소 이상에서 생산된 개체 또는 혈통등록된 부·모에서 생산된 개체
 - 고등등록 : 부모가 혈통등록우 이상으로서 생후 24개월 이상에 선형심사를 필한 개체 중 심사결과 암컷은 83점 이상에 혈통세대수가 5대 이상 개체
 - 선형심사 : 기초등록 이상의 착유중인 개체
 - 유우군 능력검정 : 기초등록 이상의 착유중인 개체

다. 등록·심사 및 검정 추진

- 시·군 및 전남낙협, 전남낙농육우협회(농장주)는 현지 등록·심사 및 검정 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심사·검정 추진
 - 현지 등록 추진 시 종축등록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활용 등
- 농식품부 유우군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농가 우선등록

라. 제반양식의 공급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등록·심사·검정 신청서, 관리대장 등을 제작하여 전남낙협,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낙농육우협회 시·군지부 등에 공급

마. 등록·심사·검정 신청 및 증명서 발급

- 전남낙협, 낙농육우협회(농장주)는 한국종축개량협회로 등록·심사·검정 신청하고 동시에 시·군에 등록·심사·검정 신청내역을 보고(서식 1)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신청서에 따라 전산입력 후 등록증명서, 관리카드 및 심사결과를 해당농가에 직접 발송하고, 반기별 젖소 등록·심사·검정 현황(서식 4)을 도(시·군별 총괄내역)와 시·군(개인별내역)에 송부

바. 등록우, 후대축 및 농가 관리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등록자료를 전산관리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제공
- 전남낙협 등은 등록우 보유농가에 별도 개량교육 실시
- 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젖소등록규정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
- 대행기관은 시행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에 이력제 등 자료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제공하여 각종 통계분석 및 농가 컨설팅자료로 활용

사. 등록우 및 후대축의 활용

- 우수 혈통 번식우는 개체관리 및 장기 사육되도록 시·군에서 시책강구
 - 축주에게 번식 밀소로 활용토록 권장하되 매도를 원할 경우 관내 번식 농가에게 매도를 유도하여 번식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치

아.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시·군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통보한 반기별 등록현황<서식 4>과 전남낙협, 낙농육우협회(농장주) 등의 보고서를 대조 검토한 후 등록회비 지급
 - 시·군 실정에 따라 전남낙협, 전남낙농육우협회(농장주)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를 선택하여 지급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서식 4>에 의거 반기별로 도 및 시·군에 등록·심사·검정 현황 및 등록회비 납부실적을 통보

III. 행정사항

- 시·군별로 추진단계별, 등록단계별 계획 수립·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전남낙협, 낙농육우협회(농장주) 등에서 보고한 등록내역에 의거 귀표부착, 증명서 교부 등 등록사업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 추진토록 독려
- 추진일정
 - 사업참여 신청(농가 → 시·군) : '23. 1월말까지 (서식 1)
 - 대상자 선정 통보(시·군 → 한국종축개량협회) : '23. 2월말까지 (서식 2)
 - 혈통등록, 선형심사 및 유우군 능력검정(한국종축개량협회, 전남낙협) : '23. 3월부터
 - 등록·심사·검정 내역 보고(한국종축개량협회 → 시·군 → 도) : 분기별 (서식 3)
 - 정산 보고(시·군 → 도) : '23. 12월말까지 (서식4)

17.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홍석구	044-201-2340
		주무관 이민구	044-201-2341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박진영	061-286-6530
		담당자 송정아	061-286-6532

I. 사업개요

1. 목 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우유 음용 습관 지도 및 영양교육 실시 등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

2.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학교우유 급식률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 및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

성과지표	202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	'21	'22(P)		
▪ 학교우유 급식률(%)	35.0	29.2	28.1	30.0	익년 3월	급식률(%)=(급식학생수/전체 학생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 학교우유급식	61,945	75,483	78,240	78,240	234,720
- 보 조	37,256	45,383	47,040	47,040	141,120
- 지방비	24,689	30,100	31,200	31,200	93,600

* '24년 이후는 중기수치임(650천명*480원*250일*3년)

5. 사업량(전남) : 60,810명(취약계층 22,220, 확대 공모 38,590)

-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 (확대 공모) 전체 초등학생,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 * 확대 공모 선정 대상(100천명)은 농식품부 사업과 도 자체사업 모두 적용 가능

6. 사업비(전남) : 6,000백만원(국비 3,600^{60%}, 도비 600^{10%}, 시·군비 1,800^{30%})

- (당초) 2,666(취약계층) → (변경) 6,000(증액 3,334/ 확대 공모)
- * 확대 공모 지원대상 : 1차 추경 완료 후 집행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지방비100%)으로 사업 확대 가능

2.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

○ 품목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치즈*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국산 원유 함량 50% 이상인 제품에 한함

○ 용량

- 우유 및 가공유 : 100ml 이상

- 유제품 : 치즈 15g 이상, 발효유 80ml 또는 80g 이상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 등 지원대상 품목을 급식하고 공급 업체에 보조금 지급

4. 지원형태 및 급식기준

○ 지원형태 : 보조 100%(축발기금 60%, 지방비 40%)

○ 지방비 부담비율

- 특·광역시 100%, 도는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 가능

○ 지원한도 : 480원/개

- 단, 530원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 : 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③ 학교에서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하여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백색우유 등(멸균유 제외)을 주 2회 이상 배달 시 무상급식에 한하여 530원까지 지원 가능(서울시 초등학교의 경우 전원 무상급식을 학교에서 실시하여 해당 없음), ④ 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급식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멸균유를 택배 등으로 배달 시 지원 가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우유급식 지원 한도 금액인 480원으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지원한도 이상의 우유 급식시 지방비 또는 학생 자부담을 추가하여 급식 가능

○ 급식일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 급식일 판단기준 : 학기중은 등교일, 방학중은 가정배송으로 인하여 여름방학 24일, 겨울방학 48일을 의미하며, 최근 1월 조기 졸업이 확대되고 있어 해당 학생이 공급을 원할 경우 교육기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2월말까지 지원 가능

* 학기중 공휴일이라도 등교를 하거나, 학교 특성상 1일 2회 유상급식을 하는데 무상급식만 1회 지원할 경우 학생의 신분노출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시 지자체와 교육기관간 협의하여 예산 범위내 지원 가능

Ⅲ. 학교우유급식 실시 절차

1. 우유급식 실시 여부 결정

○ 우유급식 수요조사

- 수요조사는 전체학생(졸업예정자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초 우유급식 실시가 늦어 지지 않도록 조치

※ 기존 우유급식 실시교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생략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유급식 수요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국·공립 학교) 또는 자문(사립 학교)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

* 기존 우유급식 실시학교는 수요조사 대신 전년도 우유급식 현황자료 활용 가능

- 교육청은 매년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여부 확인 점검·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학교우유급식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 공급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 선정

○ 공급업체 선정

- 공급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

- 21억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호, '17.8.1)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 ~ 5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 개학 후 3월 중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 선정

○ 급식우유 품목 선정

- 학교장은 우유급식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II.2.(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의 기준내에서 공급품목 및 품목별 공급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

3. 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및 보고사항

○ 유상급식

- 유상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실시(제품 및 가격은 무상과 동일)

○ 무상급식

- (농림축산식품부) '23년도 사업비를 시·도에 가내시('22.12월)
- (시·도(시·군·구)) '23년 사업비를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통보('23.2월)
- (교육청, 교육지원청) '23년 사업비를 학교에 통보('23.2월)
- (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급식하고 <서식2>에 따라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5월하순)

* 법적 기준 명확화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선정 생략 가능

★ 지자체 및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지원 가능한 사항

○ (지원대상자 확인이전) 지원대상자 확인이전(3~5월)기간은 전년도 지원대상자(재학생), 교육비 납부 유예* 신청 학생(신입생)에 대하여 지자체, 교육청,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 교육비 납부 유예 : 신입생의 경우,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가 학교에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 확인이전까지 교육비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

-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고한 대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식2>에 따라 통보(6월 상순)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당 교육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통보한 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여 <서식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중순)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가 보고한 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 및 대상자 확정 통보(6월 하순)
- (사업비 재배정) 대상자 증감 시 시·도간(시·군·구간) 재배정 가능

4. 우유급식 공급방법

○ 학기중 우유급식(유·무상)

- 학기중 무상우유급식 지원은 유상 우유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출·입학생 발생시 확인 후 공급업체에 통보하여 우유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방학 중 우유급식(무상)

- 공급 개수 : 여름방학 24개, 겨울방학 48개
- 시·도(시·군)에서는 해당 교육기관(시·도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공급업체가 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소 및 연락처 등 사전 안내 조치

★ 공급업체는 대상학생의 개인정보 취급 철저히

-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3자 제공 금지
-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사업종료 후 5일 이내)

- 단, 계약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국내산 치즈(원유함량 50% 이상)로 공급 가능
-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멸균유(치즈)의 유통기한이 준수되도록 충분히 고려

5. 우유급식 관리

○ 공통사항

-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시까지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학교장은 우유 공급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물 이용 요청시 최대한 협조(안전수칙 준수)
-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제한
- 무상우유급식
 - 무상우유급식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타 시·군 전입 또는 전학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시 우선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해당 교육청과 학교별 사업물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우유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 부득이하게 유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해당학교 및 공급업체 등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별도 강구
- 지도·감독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이 학교급식법시행령(제2조제2항제8호)에 의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협조(학교급식 운영평가시 병행 확인 등)
 - 시·도교육청은 학교우유급식 지침 작성시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별첨 ‘2023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

IV.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시·도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교육청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다음 연도 지원대상자를 파악하여 <서식1>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사업시행 전년도 8월 하순까지) -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사업 신청 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구비)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

2. 사업비 확보 및 배정단계

농림축산 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신청내역 및 교육부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가내시(사업시행 전년도) • 예산확정 시 시·도별 사업비 확정 통보(사업시행연도 6월 하순)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도별로 지원대상 학생수 선정 및 통보 •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까지)
-------------	--

↓

시·도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배정된 사업비로 지방비 확보
--------------	--

3. 사업자 선정단계 및 변경

시·도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시·군)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에 학교별 사업량(지원대상 인원)을 수립하여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로 통지(2월) * 시·도(시·군)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무상 우유급식 지원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지원 무상 우유급식과 구분하여 통지 • 시·도(시·군)은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검토하여 <서식2>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중순)
--------------	---



학교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교육지원청) 각 학교에 사업량(지원대상인원) 통지(2월) • (학교) 무상우유급식 대상자 선정결과를 <서식2>로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5월 하순) •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고한 대상자 선정결과를 <서식2>로 시·도(시·군·구)에 통보(6월 상순)
-----------	---

4. 자금배정 및 보조금교부 단계

시·도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4>에 의거 분기별 소요액을 매분기 첫 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



농림축산 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축발기금사무국)로 보조금 교부결정서 통보
-------------	---



농협 경제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에 보조금 교부(별도 계정 설정)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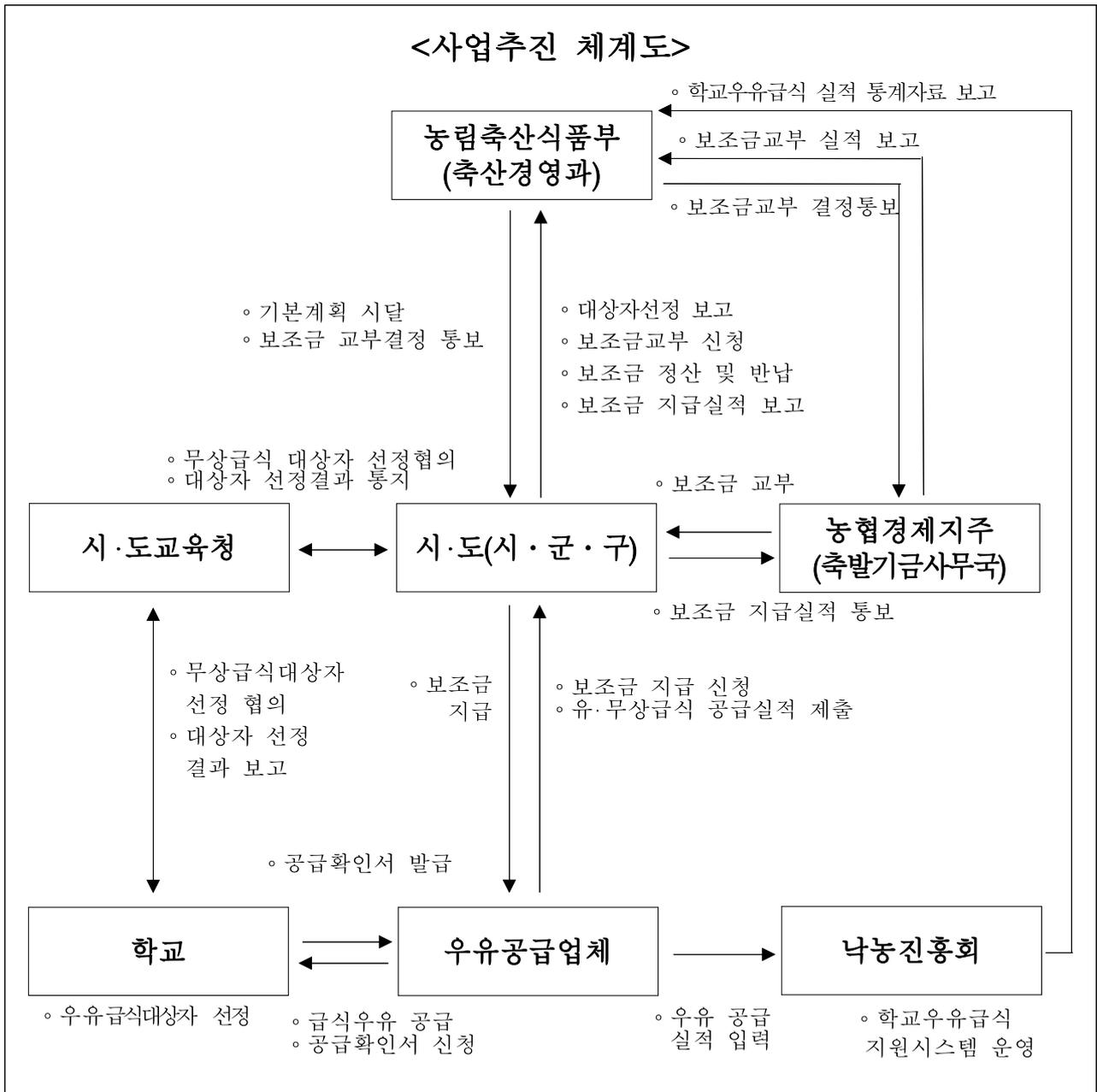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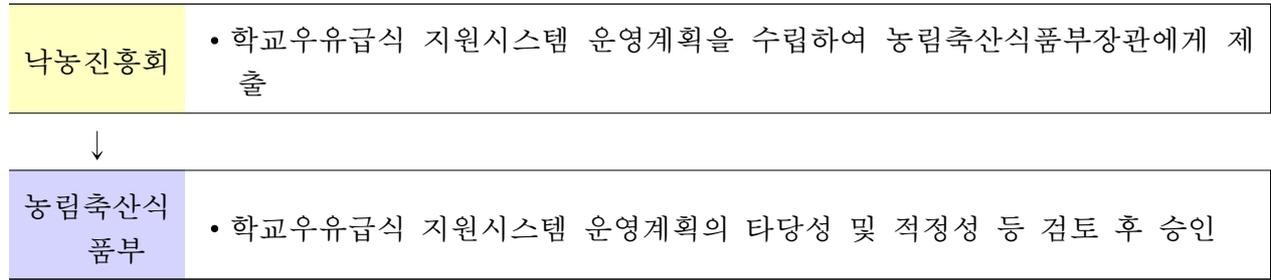


시·도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비 중 시·군·구에서도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시·도에서 시·군·구에 보조금을 재교부하여 집행 가능
--------------	--

5. 사업비 정산단계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은 공급업체가 등록한 월간 우유 공급량을 익월 5일까지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www.schoolmilk.or.kr)을 통해 공급업체와 상호 확인 - 학교가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 주문기능 사용시 월간 우유 공급량은 자동 등록 • 학교장은 공급업체에게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으로 월별 공급 확인서<서식5> 온라인 발급 - 수기 발급할 경우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서 월별 공급 확인서를 출력하여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한 파일을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12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간 변경에 따라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급 조치
↕	
공급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업체는 학교장에게 월별 공급 확인서<서식5> 발급 신청하고,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출력) • 보조금 지급 청구시 학교장에게 발급받은 월별 공급 확인서와 <서식6>의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을 익월 25일까지 해당 시·도 또는 시·군에 제출(단, 12월의 경우 당월에 제출) - 공급업체는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 보고기한 준수 철저 - <서식5>와 <서식6>의 급식단가 및 유상급식 실적은 실제 공급단가와 해당월에 실제 공급한 유상급식 수량으로 반드시 기록 - 공급업체는 유상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서식5>의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식6>의 유·무상급식 공급실적에 반드시 포함
↓	
시·도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우유급식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액 = 무상급식 공급수량 × 공급단가 * 공급업체가 제출한 월별 공급확인서는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에서 학교가 발행한 월별 공급확인서와 대조 가능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시 <서식3>에 의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등을 정산하여 농협경제지주(축발기금사무국)로 반납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6. 사업지원 단계



7. 이행점검단계

○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공급업체의 급식 우유 대상품목 공급 여부 및 납품기피·급식중단·품목변경 등에 대한 지도·관리를 연2회 실시(최소 1회 이상 방학기간 중 점검 포함)

* 신규사업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시·도지사는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 및 유상급식 확대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및 교사 대표, 낙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도별 “학교우유급식 추진협의체”를 운영하여 학교우유급식 업무 협력체제 확립토록 노력(우유정보교육 실시, 우유급식 실시교 확대 방안, 우유급식 우수학교 선정, 우유급식 업무경감 방안 등 협의)

○ 농협경제지주(축산발전기금사무국)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서를 받는 즉시 시·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교부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낙농진흥회

- 공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유·무상급식 공급실적을 기초로 익년도 3월말까지 전년도 연간 우유급식 실적<서식7>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 학교우유급식 현지 실태조사(연 1회)를 통해 문제점 발견 시 개선방안 마련
-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점검

8. 제재 및 보고

-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자금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는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및 보고

○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기한	보고 기관	비고
○ '23년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결과	'23년 6월 중순	시·도	서식 2
○ '24년 학교우유급식 사업신청	'23년 8월 하순	시·도	서식 1
○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24년 1월 31일	시·도	서식 3
○ 연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24년 1월 31일	낙농진흥회	서식 7

9.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사도 교육청으로부터 전체 학생수 및 우유급식 실적을 집계하여 학교우유급식률을 측정(다음 연도 3월경)

○ 만족도 조사

-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 지자체, 시·도 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우유급식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시기 : 매년 12월 경
- 조사대상 : 학교우유급식 관련기관 및 단체
- 조사방법 : 팩스, e-mail 등으로 설문 취합·정리
- 조사주관 : 낙농진흥회

10. 사업평가, 환류 및 포상단계

○ 사업평가

- 시·도별 학교우유급식률(학생수, 학교수, 학교급별), 기대효과 및 자금 집행실적 등을 분석 (농림축산식품부)

○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우유급식률이 높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시·도에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을 확대하고, 우유급식률이 낮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 축소

○ 포상

- 유공자 표창 : 학교우유급식 유공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4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교육기관(시·도 교육청)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2024년도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학생수를 파악하여 <서식1>에 의거 2023년 8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 신청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구비)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2. 202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3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18.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박진영 주무관 송정아	061-286-6530 061-286-6532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우유급식 추진 관련 기타 사항은 농식품부의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 지침'에 준하여 추진

1. 사업개요

1. 목 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도내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우유 음용 습관 지도 및 영양교육 실시 등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

2. 근거법령(지침)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전라남도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
- 2023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및 매뉴얼(농식품부)

3. 성과목표 및 지표

-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학교우유 급식률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 및 도내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

4. 사업량 : (학교우유급식) 61,410명/ (배송비) 22,220명

※ 농식품부 확대 공모 선정 대상(100천명)은 농식품부 사업과 도 자체사업 모두 적용 가능

5. 사업비 : 5,306백만원(도비 1,061^{20%}, 시·군비 4,245^{80%})

6. 사업내용

- (학교우유급식) 도 확대 지원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우유 무상공급 지원
 - * 사업 추진 중 농식품부 지원 사업비 전액 소진 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도자체사업비를 활용하여 우유 지원 가능
- (배송비) 취약계층 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방학 분 우유 공급 배송비 지원

II.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1. 학교우유급식

가.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전체 초등학교 학생) 도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
- (240인 이하 학교 학생) 전체 학생수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
 - * 기존 지원대상자(학생수 240명 이하 학교 학생) 중 학교 통폐합에 따라 학교 학생수가 24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자녀 중 1명만 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
 - * 시·군 특성을 감안하여 시·군 자체예산으로 기타 학생 선정 및 지원 가능

나.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

* 「전라남도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도내 생산 원유를 사용하는 유업체(붙임 1) 생산 품목 우선 지원 권장

- 전남산 원유 사용현황(2022년 전남 낙협 원유 배송 현황 자료)
 - 총 집유량 114,838톤 중 ①매일 60,730(53%), ②동원 41,553(36%), ③남양 3,358(3%)
- 품목
 -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 ②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치즈*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 국산 원유 함량 50% 이상인 제품에 한함
- 용량
 - 우유 및 가공유 : 100ml 이상
 - 유제품 : 치즈 15g 이상, 발효유 80ml 또는 80g 이상

다. 지원형태 및 급식기준

- 지원형태 : 보조 100%(도비 20%, 시·군비 80%)
- 지원한도 : 480원/개

- 단, 530원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 : 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③ 학교에서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하여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백색우유 등(멸균유 제외)을 주 2회 이상 배달 시 무상급식에 한하여 530원까지 지원 가능, ④ 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급식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멸균유를 택배 등으로 배달 시 지원 가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우유급식 지원한도 금액인 480원으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지원한도 이상의 우유 급식시 지방비 또는 학생 자부담을 추가하여 급식 가능

○ 급식일 : 190일 내외(등교일 기준)

라. 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 유상급식

- 유상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실시(제품 및 가격은 무상과 동일)

○ 무상급식

- 무상우유급식 지원 가능 학생을 대상으로 백색우유 공급 희망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희망자에 한해 무상우유급식 지원

마. 공급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 선정

*** 「전라남도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도내 생산 원유를 사용하는 유업체(붙임 1) 생산 품목 우선 지원 권장**

○ 공급업체 선정

- 공급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
 - 21억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호, '17.8.1)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5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 개학 후 3월 중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 선정

○ 급식우유 품목 선정

- 학교장은 우유급식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II.1.나.(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의 기준내에서 공급품목 및 품목별 공급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

바. 우유급식 공급방법

○ 학기중 우유급식(유·무상)

- 학기중 무상우유급식 지원은 유상 우유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출·입학생 발생시 확인 후 공급업체에 통보하여 우유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사. 우유급식 관리

○ 공통사항

-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시까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학교장은 우유 공급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물 이용 요청시 최대한 협조(안전수칙 준수)
-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제한

○ 무상우유급식

- 무상우유급식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타 시·군 전입 또는 전학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시 우선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해당 교육청과 학교별 사업물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우유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 부득이하게 유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해당학교 및 공급업체 등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별도 강구

2. 배송비

가.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학교우유급식 계약 공급 업체(대리점)
- 지원조건 : 취약계층 지원 대상자 중 방학 중 우유(멸균우유) 공급 희망자에 대해 택배 등을 통한 개별 가정 배송(학생을 통한 전달 금지)

나. 사업량 및 지원한도

- 사업량 : 학교우유급식 취약계층 지원대상 22,220명
- 지원한도 : 6,000원/명(3,000원/회 × 2회*) * 여름방학, 겨울방학
 - 학생 1명당 1회 최대 3,000원 이내 지원 가능

다. 사업 추진 체계

- (학교) 여름·겨울 방학 시작 전 방학 중 우유공급 희망자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공급대상자 내역을 시·군과 공급 업체(대리점)에 통보(서식 1)
 - ★ 공급대상자 개인정보동의서 확인 필수

- (공급 업체) 학교에서 제출받은 방학 중 우유 공급대상자에게 우유 가정 개별 배송을 실시하고, 배송 완료 후 방학 중 우유배송 내역서(서식 2)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시·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 학교에서 제출받은 공급대상자 개인 정보는 우유배송용으로만 사용하고,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증빙서류**

【택배배송】

- 택배업체 배송 확인서(수취인 내역, 배송일, 금액 명시)
- 택배비가 착불인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실제로 보내지 않은 전표로 사업비를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 사실이 있을 경우 지급된 사업비 회수 조치

【직접배송】

- 수취 학생의 보호자 또는 학생의 공급 수령 서명과 사진증빙
- 택배 견적서(가정 직접 배송의 경우 해당 지역 택배단가로 책정하여 집행)

- (시·군) 학교에서 제출받은 방학 중 우유 공급대상자 내역과 공급업체에서 제출받은 보조금 지급 신청 내역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III. 행정사항

- (학교) 희망자 조사, 공급확인서 발급 등 철저
 -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무상우유 공급 희망자 조사 철저 및 우유 음용 지도 실시
 - 공급확인서 상 급식학생수 구분(지자체-도 확대, 농식품부-취약계층) 입력 철저
- (교육지원청) 사업 추진 관련 시·군과 지속 협의, 학교 전달 등
 - 학교우유급식 관련 사업 추진 내용 및 시·군 협의 사항 등 각 학교 전달 철저
 - 관내 학교별 각종 보고사항 취합 후 시·군 제출
- (시·군) 사업 추진 관련 교육지원청과 지속 협의, 보조금 집행 철저
 - 학교우유급식 추진 관련 추진 상황 교육지원청과 지속 공유 및 협의
 - 공급확인서, 택배비 증빙서류 확인 등 보조금 집행 철저
- (보고) 공급업체 계약 현황(3월 말), 대상자 선정 결과(5월 중), 사업비 집행 현황(수시) 등
 - * 보고 서식은 추후 공문으로 별도 시달 예정

19.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박진영 담당자 김숙현	061-286-6530 061-286-6531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 및 동물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 및 이미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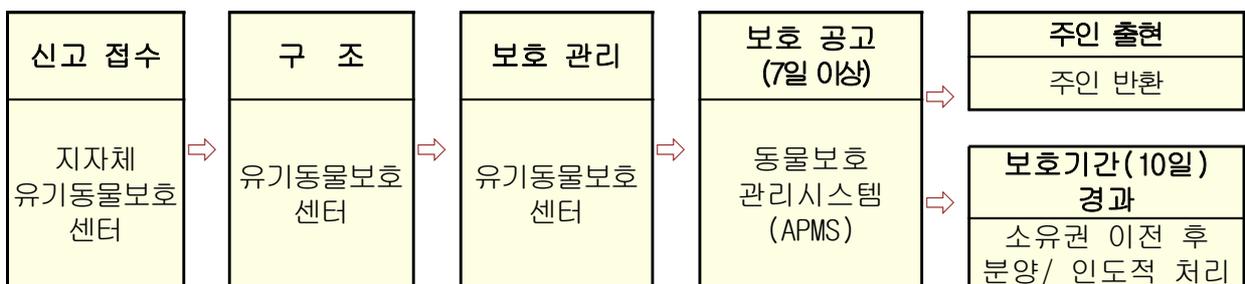
I. 추진계획

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량 : 5,000마리
- 사업비 : 1,000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800)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80%
- 지원한도 : 20만원/두 * 한도 내에서 시·군 별도 규정하여 시행 가능
 -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 사육환경개선 : 유기동물보호센터 내 기자재 지원(실제 처리비용)
- 사업내용
 - 유실·유기된 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포획(구조), 보호(치료, 사료), 관리(사체처리) 및 사육환경 개선 지원

②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시·군(직영 또는 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
- 사업절차



- 시장·군수는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 4를 충족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정·위탁
- 신고(민원인) → 시·군 접수 → 직영 및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민원접수 사항을 전달 → 직영 및 위탁 동물보호센터는 포획인을 동원, 민원인과 연락 후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포획)
- 포획인이 민원인과 연락 후 현장 출동하여 현장확인, 포획 후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필요 시 연계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 동물보호센터 자체 구조(포획)시 보호 및 필요 시 자체 치료(센터 내 수의사 상주 등) 또는 위탁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 자연사 및 인도적으로 처리(안락사)한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

< 인도적 처리(안락사) 사체의 처리 요령 >

◇ 안락사 처리 절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 안락사 처치는 수의사가 시행하며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1명이상 입회하에 실시
- 마취를 실시한 후 심장정지, 호흡마비 유발 약제 사용
- 보호동물 개체 관리카드에 기록

【안락사 처리 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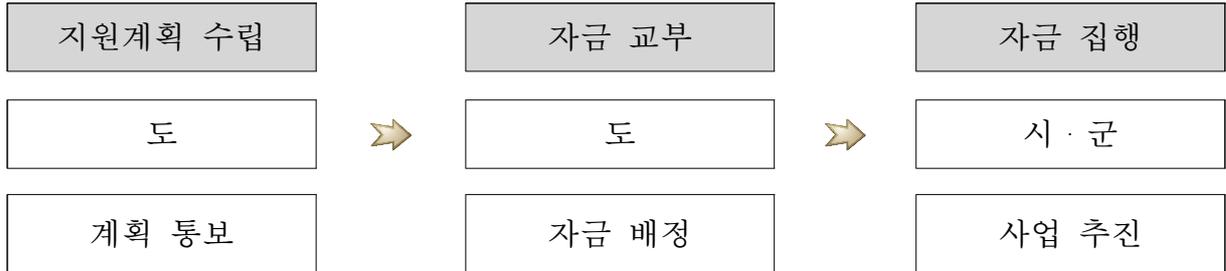
-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 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장·군수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세부기준을 포획(구조), 치료, 보호·관리, 사체처리비 등을 구분하여 산출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단,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처리비용 우선 지급 후 예산 잔액발생 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내 사육환경 개선 지원(온습도, 환기, 보호 등 기자재)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점검은 도 또는 시·군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충족 여부를 연 2회 이상 실시
- 시·군에서는 월 1회 이상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
 - 위탁 동물보호센터 관리실태 점검 결과 관리대장 기록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등록 누락 시 위탁처리비 지급 제한
-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보고(시·군 → 도) : 매 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II. 행정사항

①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자금배정 및 집행



-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용으로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
 - ※ 마리당 처리비용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필요시 시·군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급 가능
 - 동물병원 외 위탁기관은 계약 동물병원에 치료비 등 직접 지급 가능
 - 동물병원 진료영수증 및 세부내역(진료내역서,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등 진료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을 확인 후 지급
- 사업비는 보호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사후처리가 완료된 개체에 한하여 지급
- 매월 지급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의 실정에 따라 분기 및 일괄지급 가능
-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도비 보조금을 배정하고 사업 완료 후 시·군은 정산을 실시하여 집행 잔액 회수
 - ※ 시·군에서는 사업비 집행 전 정부 지원사업(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집행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방지 및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3. 1. 1. 이후)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를 소급 적용하여 집행
 - * 소급 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실집행률 70% 이하)하거나 사업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익년도 사업비를 감액할 수 있음

② 사후관리

- 보조금 배정 이후라도 적정 집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 동물보호법 및 정책, 다른 법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당하게 집행했을 경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③ 보고사항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시·군 → 도) : '24. 1. 10.

20.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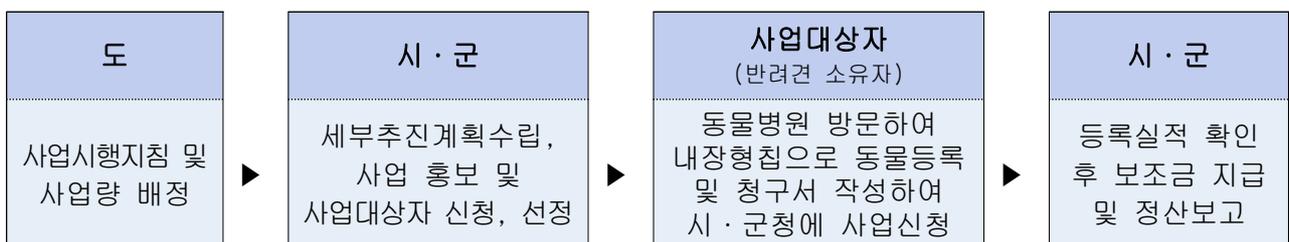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박진영 담당자 김숙현	061-286-6530 061-286-6531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량 : 5,000마리
- 사업비 : 150백만원(도비 45, 시·군비 105)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내장형칩으로 동물 등록한 반려견 소유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후순위 지원
- 지원한도 : 3만원/마리
 - ※ 1인당 5마리 한도로 제한하며, 업체(동물판매업 등) 소유 반려견 제외
- 사업내용 :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 시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비 등 일부 지원
 - ※ 내장형칩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단,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 가능.

2]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시·군
- 사업절차



- 시장·군수는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 우선순위 결정 시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 내장형칩만 지원하며 등록대행기관 중 동물병원과 협조 시행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작성하여 시·군 제출
- 사업대상자는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후 청구서 작성하여 시·군 제출
- 시·군에서는 청구서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③ 행정사항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시·군 → 도) : '23. 2월말까지
- 사업추진 실적보고(시·군 → 도) :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 사업 정산결과 보고(시·군 → 도) : '24. 1. 10.

21.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안영창	044-201-2618
		담당자 박현석	044-201-2619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장 박진영	061-286-6530
		담당자 김숙현	061-286-6531

I 사업개요

□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업량/ 사업비 (천원)
1.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3,090마리/ 286,500
- 입양비 지원	일반국민	- 마리당 최고 25만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분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390마리/ 97,500
- 구조보호비 지원	지자체장	- 마리당 최고 7만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70% *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추가 편성 운영	2,700마리/ 189,000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자체장	- 마리당 20만원 - 국비 20%, 지방비 80% *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추가 편성 운영	3,110마리/ 622,000
3.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일반국민	- 마리당 40만원 기준, '22사업량 18,750마리 - 국비 20%, 지방비 70%, 자부담 10% * 자부담분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2,420마리/ 968,000
4.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보조)	민간동물 보호시설 위탁동물 보호센터 운영자	- 개소당 최고 240백만원 한도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3%, 2년 거치 3년 상환	1개소/ 240,000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융자)			

□ 목 적

- (입양비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를 통한 동물보호·복지 실현
- (구조·보호비지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원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
- (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한 공중위해방지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완화
-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 농촌지역 실외사육되는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의 위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으로 동물보호·관리수준 개선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자금재원 : 농특회계(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계정)

□ 사업수행자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3. 1. 1. ~ '23. 12. 31.

II.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21-1.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사업

□ 지원기준 및 대상

-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 비용 및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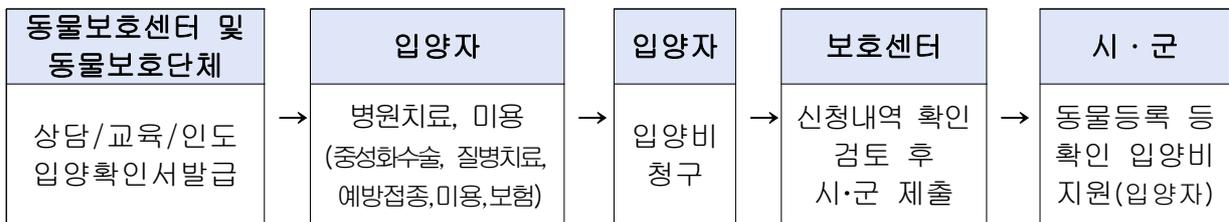
사업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지급) 대상
입양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 국비 7.5만원, 지방비 7.5, 자부담10 - 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비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 등 단, 펫보험의 경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험 유효 여부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단체가 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

사업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지급) 대상
구조·보호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당 7만원(국비30%, 지방비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구조(포획) 용역비 - 구충·백신접종·검진·질병 진단(키트검사 등)·치료비(수술 포함) 등 외부 동물병원 치료비용 - 직영 동물보호센터 재료비(백신, 의약품, 전염병 진단키트, 의료소모품 등*) * 주사기, 거즈, 글러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시장·군수 및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 지원절차

-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 신청(방문, FAX, 메일)
 - **(구비서류)** ①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진료비 영수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붙임서식3, 4, 5 참조)
 -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인지 확인(입양확인서, 동물등록증, 통장명의자 등)하고, APMS에서 동일 주소지 내 동물등록을 확인하여 타 센터에서의 입양실적 등 확인(고시 참고)
 -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 지자체에 거주하는 자가 고양이를 입양할 경우 반드시 등록 확인
 - * 청구서 내 기재된 동물등록번호를 APMS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지급
 - ※ 법인·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이 단체로부터 입양한 경우, 입양자가 입양비 신청 가능(단체가 센터로부터 분양·기증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 이 경우 단체는 입양자에게 센터로부터 받은 ‘입양확인서’를 입양자에게 제공 필요)
 - ※ 입양자가 타 지자체에 거주할 경우, 동물보호(입양)센터 관할 지자체에서 입양비 지원, 1개의 동물 보호센터에 여러 지자체가 지정한 경우, 구조동물을 공고한 지자체에 입양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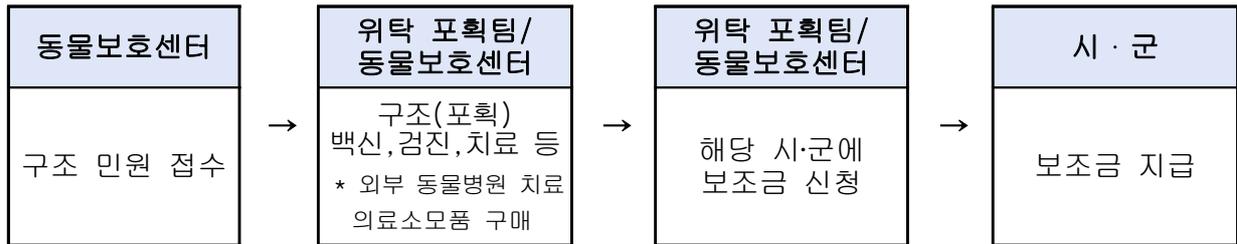
【보조금 지급 절차】



- **(구조·보호비 지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16조 고려하여 집행
 - **(구조·포획비)**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유실·유기동물 공고 내역,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포획, 진료사항 등 확인), 동물병원 진료영수증 및 세부내역(진료 내역서,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등 진료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인 후 지급

- (재료비)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재료 구입 시 거래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지출부서에 제출
- *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 시 구조(포획), 치료비 등 실적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별 사업 여건에 따라 지급(월, 분기, 반기별) 가능

【보조금 지급 절차】



21-2.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 세부 추진계획은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기준 및 지원 대상

-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한 길고양이*의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고자 하는 시·도(시·군·구)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 ** 1차 종합백신(3종), 광견병백신 접종비를 포함할 수 있음
- 길고양이 1마리당 최대 20만원 이내(국비 20% 4만, 지방비 80% 16만원)
- *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추가 예산편성 가능

<TNR 제외 대상>

- 몸무게가 2kg 미만,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 수태(受胎) 또는 포유(哺乳)중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방사, 다만,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
 1.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가 확인된 경우 수술 후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쳐 방사
 2. 마취 중 포유가 확인된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마취가 깨어나는 즉시 방사
- * 기준 위반시 보조사업수행자(동물병원 등)에게 보조금 지급 금지(환수) 및 위반행위 반복시 지정 취소 등 조치

-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비 지급 실적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별 사업 여건에 따라(월, 분기, 반기별) 지급이 가능함
- 길고양이 TNR 실시보고서 등을 확인 후 지급(붙임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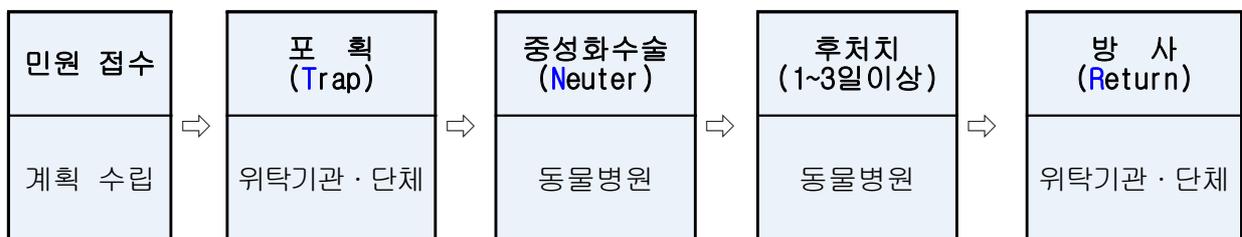
□ 사업추진 방식

- 각 지자체장은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을 위해 군집·지역내 길고양이를 집중적으로 동시에 중성화 수술 시행
 - 재개발지역, 민원다발지역, 동물보호센터내 고양이 입소 두수가 많은 지역, 길고양이 고밀도지역 등을 선별하여 지역별 집중적인 TNR 실시
 - 단순 민원 해결을 위한 나눠주기식 사업량 배정을 금지하고 지자체별 적절한 기간내* '길고양이 중성화 주간'을 기획하여 사업 시행
- * 상·하반기 집중 TNR 시기(예시) : 2~3월, 9~11월, 기간내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 가능
- 시장·군수는 많은 고양이를 단시간에 중성화 수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후, 관련단체·동물병원·활동가(캣맘) 등과 협약 체결을 통해 동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TNR 실시보고서(붙임 서식6) 등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증거서류 및 APMS 확인

□ 길고양이 처리기록 관리 등

- 사업수행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기록 사항(포획 고양이 특징 및 건강상태, 포획·수술·방사 위치 등)과 각 과정의 전·후 사진 등의 기록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PMS)에 입력 관리
-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농식품부 고시)

【사업 추진 절차】



- 신고(민원인) → 시·군 접수 → 시·군 총괄 취합 → 직영·위탁업체에 민원접수 사항을 전달 → 직영 및 위탁업체는 포획인을 동원, 민원인과 연락 후 현장에 출동
- 포획인이 민원인과 연락 후 현장 출동하여 사진 촬영, 포획 후 연계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이송
- 수술 후 처치가 끝나면 회복 후 포획장소에 방사

21-3.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① 시의 동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제주시·서귀포시 포함)

* 용도지역 : 전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② 자치구의 동지역 중 다음 용도지역(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자치구는 제외)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녹지)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나. 관리지역(생산·보전·계획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촌 지역 : 음영 표시>

1. 읍·면		전체 용도지역			
		시의 동		자치구의 동	
2. 동	도시지역	(1) 주거지역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① 생산녹지	(4) 녹지지역	① 생산녹지
	② 보전녹지		② 보전녹지		
	③ 자연녹지		③ 자연녹지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사업대상 주소지의 용도지역 확인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토지이용계획 열람

- ※ 단, ‘농촌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는 사업목적에 맞게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사업대상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농촌지역에서 실외 사육*하는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비용 및 제반 비용**

* (실외사육견) 농촌 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

** 동물등록비 및 이동 서비스를 위한 차량운행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

- (지원조건) 단가 마리당 40만원 한도(암컷기준, 국비 20%, 지방비 70%, 자부담 10%)
 - * 자부담 분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하며, 암·수컷의 수술비 단가, 병원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단가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

※ 지원한도(예시)

구 분	암 컷		수 컷		비 고
	중성화	중성화+동물등록	중성화	중성화+동물등록	
단가(만원)	36	40	16	20	*등록비(내장형) 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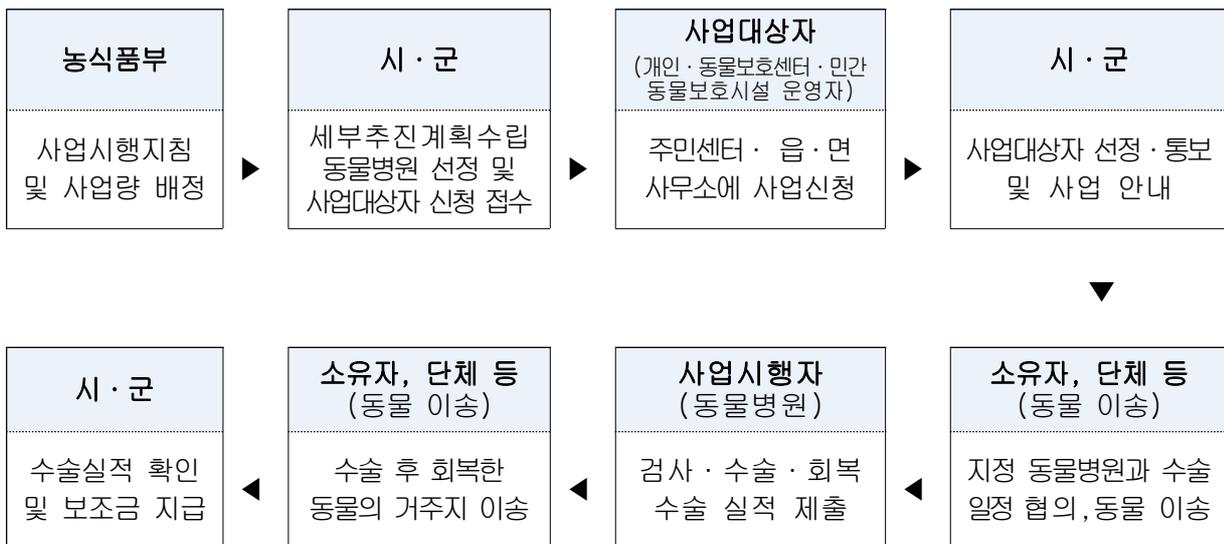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 병행

□ 사업추진 방식

- (지자체) 시·군 여건에 따라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공고를 통해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 * 사업신청 마릿수를 감안하여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다수 지정 가능
 -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개별 선정하거나, 사업의 효율성 및 중성화 효과를 위해 마을별로 집단화하여 시행할 수 있음
 - * 지자체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촌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후 순위(사설동물보호시설 등) 지원
 -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가구당 지원 마릿수를 정하여 사업시행
 - 이동 수단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지자체 동물구조 요원의 협력을 통해 병원 이송 등을 대행할 수 있음
 - * 차량 운행 등 제반 비용은 배정물량(마릿수)의 5% 이내에서 지원
- (소유자) 사육장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복합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또는 마을대표(이장·통장)를 통해 마을별로 신청 가능
 -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신청서[서식2] 및 수술·마취동의서[서식3]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지정 동물병원) 신청자별로 수술 날짜를 협의 후 대상 동물의 중성화 수술 등 시행
 - 사업대상자와 중성화 수술 사전 예약 및 안내

- 중성화 수술 전 동물에 대한 건강 상태 등을 검사하고,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수술 제외, 단, 임신으로 진단된 경우 출산 후 수술 실시
 - 수술 전 사업대상자에게 수술 과정, 주의사항 등 안내 및 수술·마취 동의서[서식3] 작성 안내
 - 미등록 동물일 경우 수술 전 반드시 동물등록 후 수술
 - 수술 후 보호 및 후 처치 등 관리 철저, 보호자 인계 시 퇴원 안내[서식4]
 - 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중성화 수술에 따른 동물이동 협조를 받은 경우, 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동물병원 이송 전 소유자로부터 수술·마취 동의서[서식3]를 받아 동물병원에 전달하고 퇴원안내서는 소유자에게 전달
 - 지원대상 동물의 중성화 수술 진료기록(진료차트 등) 작성·보관 철저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중성화 수술비 청구
 - * [서식3], [서식5], [서식6], [서식7]
- ※ 대한수의사회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대한수의사회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사업 추진

III. 사업추진 절차



IV.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전년 12월)
- 동물병원 등 사업시행자 선정(1월), 사업 홍보·안내 및 사업신청 접수(2월)
- 사업시행(3월~), 사업 정산 보고(익년 1. 15.까지)
- 진료기록 미작성, 거짓 또는 부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21-4.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 지원 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지자체장이 지정·위탁한 동물 보호센터 운영자
 - (민간동물보호시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보호·관리하는 자로서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따른 ‘신고’ 요건을 갖추려는 자
 -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21.9.30) 에 따라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타법에 따른 입지요건 충족 필요)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우선 지원하되, 허가(신고) 건축물은 지원 가능
 - (지정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 지원조건 및 지원 우선순위

- (지원조건) 개소당 최고 240백만원까지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형태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 용자조건 : 금리 연3.0%(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농·축협포함)
 - * 용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또는 용자·자부담 분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시설 소재지가 행정구역을 달리할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지원대상 우선순위)
 - i)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설치한 민간 동물보호시설로 상시 보호·관리하는 동물의 수가 50마리 이상인 경우
 -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ii)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보호·관리동물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
 - iii)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 * 지자체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 동물병원 등을 지정한 경우는 지자체 직영 센터로 전환계획이 없거나, 지정한 센터가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사업 신청자 및 지자체 확인 사항>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조치함.

* 시·군에서는 후 순위 및 지원 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 지원내역

○ 신고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환경개선

- 시설 : 환기, 소음·악취방지, 냉·난방, 분노처리, 급수·급이, 차광막, 조명 시설, CCTV 설치, 간판 등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교체
 - 보수 : 사육실 등 견사 시설 보수(바닥공사, 헨스, 케이지 교체, 철망 바닥 평판 설치, 건물 페인트 칠 등)
 - 놀이터(운동장) 조성 등
 - 기타 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 여부를 판단
- * 예)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이전 신축시 기존 시설의 철거비 등

<지원 제외사항>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지 못한 불법 건축물
- 나. 삭제
- 다.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
- 라. 삭제
- 마.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중 동물병원 내에 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경우(단, 동물병원 외부에 별도의 동물보호관리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
- 바.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다만, 용자 상환기간 동안 장기간 임차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동물보호시설(동물보호센터 포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동물보호시설 이전시 이전설치가 가능한 시설(냉난방기, 케이지 등)의 환경개선인 경우 지원 가능
- 아. 토지 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자. 시설물의 신규 건축비용 및 건축물의 증축 비용
- 차. 시설·장비 임차료, 운영자금
- 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 비용

- **(지원액 산정기준)** 시설 규모 및 시설 내역 등에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 산출 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시중 시세 등을 통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당 시·군에서 타당성 검토)
 - 보호·관리 마릿수를 감안하여 지원한도 시설별 상한액 산출
- **(의무 준수사항)** 지원 받은 해당 시설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설치
 -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7년간) 내 지원받은 시설을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지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 단, 지원범위가 건축물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설치 및 이전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환경개선인 경우는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의무 미 이행자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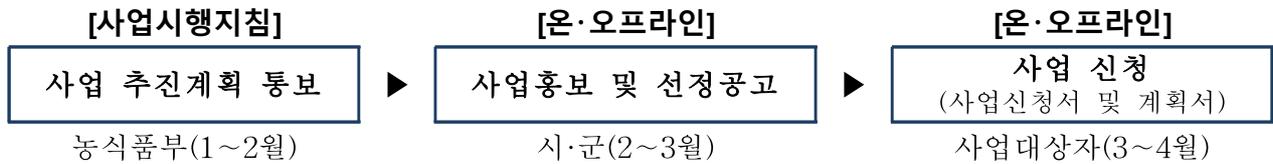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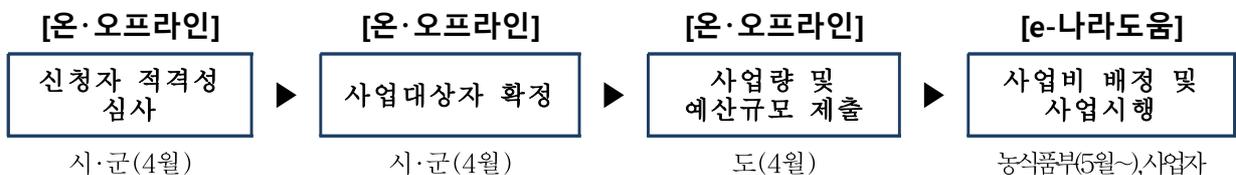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1. 사업 신청



- 도 및 관계 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축산식품부, 1~2월)
- 시·군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도, 2월)
- 관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및 위탁동물보호센터 운영자에게 사업내용 홍보·안내 (시·군, 2~3월말)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3월)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사업대상자, 3~4월)
 - 융자금 신청 희망자는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 [별지 제5호 서식] 제출)

2. 사업자 선정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확정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4~5월)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의 지원 자격 및 요건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도, 4~5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예산확정 통보(3~5월)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시·군, 4~5월)
- 도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 수립》

- **(사업착수)**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사업계획 변경)**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대상지역, 지원시설·장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신청[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검토하여 집행해야 함

《자금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으로 자금을 배정

지방자치단체

- 도(시·군)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요청
- 도(시·군)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도(시·군)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사업실적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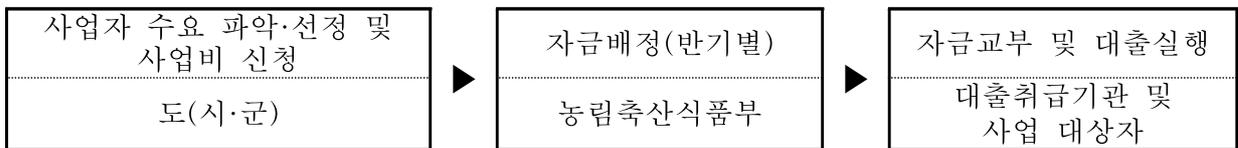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 지원액 및 지자체가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금액의 범위 내 대출 실행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서류[별지 제6호~제7호 서식]를 준비하여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

《사업추진체계》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시설물)	완공일	7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음.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 규정 제63조제1항(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 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사업 대상자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 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 관련근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
 - 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7년간(기계·장비는 5년) 동물보호시설 내 동물의 보호관리 여부 확인, 미 운영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이행점검단계》

- 사업비 집행단계 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반기 1회)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 시·도지사가 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 자금배정 및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의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도 통보
- (지자체장) 동 사업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및 자금 집행 추진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실집행률 90% 미만)하거나 사업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익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비를 감액할 수 있음
 - 지자체별 정산보고서 제출(붙임 서식1, 2, 7)
 - 도(시·군)별 자체 점검 시행(연 2회 이상)

□ 보조금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환수 및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 부과
- 동물 분양 후 입양비 지급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19조제6항에 따라 준수사항(적절한 사육관리, 상업적이용 및 과양금지, 동물등록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 사업담당자는 지급 관련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비를 편취 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라 사업비 지급 정지, 사업수행 지정 취소 등 조치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동물보호법 제15조제6항)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추진 상황점검(농식품부) 및 사업추진 실적 보고(시·도)
- 시·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을 배정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을 시행하여 집행 잔액 회수
- 보조금 배정 이후라도 적정 집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수시점검을 시행, 동물보호법 및 관련 고시,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당하게 집행했을 경우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축산경영팀 소관

22.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김보민 담당자 허혜민	044-201-2355 044-201-2356
농협경제지주	축산건설팅부	부 장 전세우 팀 장 류지만	02-2079-8440 02-2080-8541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이두규 담당자 장용연	061-286-6540 061-286-6543

※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확정 시 별도 시달 계획

□ 사업개요

- 목 적 : 초식가축(한우, 젓소 등)에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 공급하여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재배면적 : 60천ha(전국 169천ha의 36%, 전국 1위)
- 사 업 량 : 3개사업(12종)
 - 조사료 생산 지원(8종)
 - ①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② 일반단지 종자구입, ③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④ 전문단지 종자구입, ⑤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 ⑥ 전문단지 퇴액비, ⑦ 전문단지 등급제, ⑧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 조사료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3종)
 - ① 일반단지 기계·장비, ② 전문단지 기계·장비 ③ 조사료 가공·유통
 -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지원(1종)
- 사 업 비 : 1,037억원(3개사업, 12종) * 농식품부 확정내시
 - 사일리지 제조비(60천ha, 797억원), 기계·장비(2종, 111억원)
 - 조사료 가공·유통(2개소, 39억원),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90억원)
 - ※ ('22년 본예산) 10종/870억원 * ('23년 증감) 증 2종/167억원
 - ※ ('22년 최종예산) 12종/1,024억원 * ('23년 증감) 증 -/13억원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영농법인, 농·축협,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 사업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수확 기계·장비, 종자 구입비, 품질등급제, 품질관리 등 지원

※ 지원실적 : '19) 11개사업 / 920억원 → '20) 13 / 922 → '21) 10/863 → '22) 13/ 1,013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용자	자담
합 계		3개사업 (12종)	103,747	35,201	3,391	41,773	3,337	20,045
조 사 료 생 산	소 계	8종	79,724	30,062	2,327	35,130	0	12,205
	일반단지 사일리지	40,123ha(72천톤)	43,333	13,000	2,167	23,833	-	4,333
	일반단지 종자구입	34,343ha	5,667	1,700	-	-	-	3,967
	전문단지 사일리지	18,065ha(35천톤)	19,510	9,755	-	7,804	-	1,951
	전문단지 종자구입	16,800ha	2,772	1,386	-	-	-	1,386
	전문단지 퇴·액비	8,125ha	3,250	1,625	-	1,625	-	-
	전문단지 입모종 파종비	7,491ha	1,236	618	-	371	-	247
	전문단지 품질등급	2,967ha	3,204	1,602	160	1,121	-	321
	품질관리	3종(16개소)	752	376	-	376	-	-
조 사 료 설 기 장 계 비	소 계	3종	15,023	2,439	414	4,093	3,337	4,740
	일반단지 기계·장비	69세트	10,340	1,034	414	2,688	3,102	3,102
	전문단지 기계·장비	2.6세트	783	235	-	235	235	78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2개소	3,900	1,170	-	1,170	-	1,560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1개소	9,000	2,700	650	2,550	-	3,100

23.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이동언 담당자 김소연	044-201-2352 044-201-2354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이두규 담당자 장용연	061-286-6540 061-286-6541

I. 추진방향

□ 목 적

- 유희 산지·농지·기타토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축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지원

□ 사업내용

-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등 지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23년 예산 : 1,443백만원
- (초지조성, 658백만원) 국고 50%, 용자 50%
- (울타리설치, 400백만원) 국고 50%, 용자 50%
- (경영지원, 200백만원) 용자 80%, 자부담 20%
- (교육·홍보, 185백만원) 국고 100%, (사)친환경축산협회

II.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산지나 농지, 기타토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초지 또는 임간 방목지의 기준면적은 1ha 이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일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자*,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하려는 자

*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지정서 발급 전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완료하고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협 등
-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법」에 제2조에 따른 사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 우선순위
 - 신규 신청농장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 신규 신청농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기존 지정농장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 기존 지정농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지원 제한 》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초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

형벌 및 처분 내용	지원제한 기간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3년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2년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처분 결정시 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동 제한규정은 '20년 법령위반자부터 적용하되 '19년까지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원

《 우선지원 가능 사업 》

- 직접지원 가능 사업 외의 기타 사업(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사·도 가축방역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은 개별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영

□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돼지 등 축종 제한 없음
 - 다만, 축종별 목초 활용 및 방목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용 울타리 설치비 등
 - * 농장별 동일 면적에 대하여 동일 항목으로 5년 이내에 중복지원 불가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 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 이하	31 이상	입사질토

–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

-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조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 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의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1ha당 초지조성단가로 지원 금액 한도를 산정하되, 지출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제출하여 초지조성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한도 내에서 지원

* 초지조성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항목별로 세부 지출내역 제출 (향후 초지조성단가 산출 근거 등으로 활용 계획)

○ 울타리설치 : 초지 조성 후 유회 방목을 위한 울타리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대, 설치 인건비 등

– 울타리는 면적이 아닌 설치 길이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초지 면적별 내·외책 필요 길이는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산정

– 지출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제출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만 한도 내 지원

* 목구구분·유회방목 계획을 제출하여 목초 생산성 회복 및 사료 자급 가능성 등 평가

- ◆ 초지 내·외곽 경계 울타리,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경영지원 : 초지조성부담금, 기계·장비, 기반시설 지원

* 초지를 조성할 토지 확보 후 현장심사를 거쳐 ‘관리농장’으로 평가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및 재해영향성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 및 부담금(국유지·공유지, 사유지 모두 지원)

– 기계·장비 : 가축사육 및 방목에 필요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기계·장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항목 및 그 외 별도 산지에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장비 추가 지원(예: 미니굴삭기, 돌파쇄기 등 읍경사 지역의 산지 초지 이동식 시비시설)

* 농장별 동일 기계·장비에 한하여 5년 이내에 중복지원 불가

-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비가림 시설, 체험·관광 시설

-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 시설이 필요한 지역
 - ◆ 전기시설 : 건조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 내 전기시설에 한함)
 - ◆ 진입로 개설 등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 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 부지는 자체부담
 - ◆ 비가림 시설 등 : 초지 내 가축 대피시설, 수조 및 저수탱크 등
 - ◆ 체험·관광시설 : 치즈가공, 착유시설, 축산물판매시설 등
- *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명시된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등

□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용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울타리설치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용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지원 시 사업비는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용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는 없음. 다만,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
- 경영지원 : 용자 80%, 자부담 2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 용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 용자금은 대출 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초지조성은 1ha(10천㎡)당 9,291천원*으로 최대 15ha 한도 내에서 지원
 - * '22년 경우초지 조성단가
- 울타리설치는 1km 당 최대 15,335천원*으로 지원 금액은 평가 후 결정
 - * '22년 내책 300m, 외책 700m 기준 단가
- 경영지원은 한 농가당 최대 50백만원까지 총 소요액의 80%까지 용자 지원
- 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계획과는 별도로, 지원 금액은 매년 평가 후 결정

□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 및 관리 등

- 방목생태축산농장은 다음과 같이 관리
 - 관리농장 :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 또는 초지조성허가를 받는 농장 중 관련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농장*은 사업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 등을 평가하여 관리농장으로 분류, 예산지원 등을 통해 방목생태축산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 * 사업대상자 신청 시,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및 지자체 초지적지조사 및 토지전용 가능성 협의 후 회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 관리농장은 지정서를 발급하지 않고,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을 완료하면 현장심사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지정서를 발급함

- 지정농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로, 사업비 지원과 별개로 교육·홍보사업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지정서(이하 “지정서”라고 한다.) 발급, 현판 제작 보급,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방목생태축산농장 로고 사용 허용, Biz-컨설팅, 자문위원 컨설팅(초지조성, 사양관리, 체험·관광산업 부문), 온라인 홍보 등 각종 혜택 부여

*** 지정서 발급 농장에 한해서만 현판 제작 보급, 로고 사용 허용**

- 지정서 발급된 지정농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여 갱신
- 교육·홍보 계획은 매년 초에 수립하는 교육·홍보 계획에 따름

III. 사업추진체계

◇ '22년도 부터는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차년도 예산편성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므로 사업추진 시기는 아래와 다를 수 있고 추진내용은 이 지침을 따름

□ 사업 공고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및 다음 연도 사업 공고계획을 각 도에 통보(전년도 4월)

도(시·군)

- 도는 사업 공고계획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사업신청 결과를 취합하여 도에 제출, 도는 최종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전년도 4월)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붙임)”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전년도 4월)
 - 해당토지의 초지조성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대상자는 시·군에 제출한 초지조성허가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도(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에 대해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도에 추천(전년도 4월)

- 초지조성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초지적지조사 및 토지전용 가능성 협의 후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자료와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전년도 4월)

농림축산식품부

-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대상자의 제출자료 및 도(시·군)가 제출한 체크리스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따라 서류심사 추진(전년도 5월)
 - 심사위원 평가결과 전체 ‘부’ 개수가 25% 미만일 경우 “통과”
 - *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
-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사업대상자는 심사위원회 현장평가단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장평가를 통해 심사
 - 현장평가 시 일관된 평가를 위해 동일한 현장평가단* 구성
 - * **자문위원 3명, 최대한 동일한 평가단을 구성하되 긴급한 평가 추진 시 다른 위원 가능**
 - 현장평가 후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 농식품부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순위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전년도 6월)
 - * **예산 규모에 따라, 신청 수요가 추가로 생길 경우 수시 선정 절차** 可
-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은 예산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서와 시·군의 체크리스트, 현장평가 등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음
 - 다만,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 현장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하여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지정서 발급)
 - * **[별지 제5호서식]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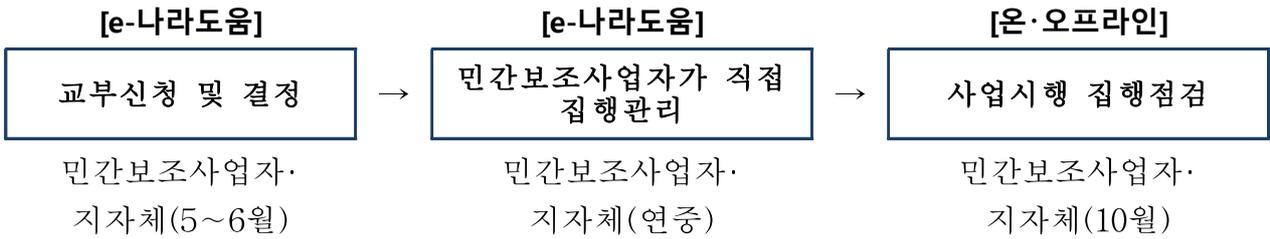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과 본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군 책임 하에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 단가 및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군은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 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 운영 요령」 등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IV. 사업 시행 및 관리

□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비예치일 경우 지자체)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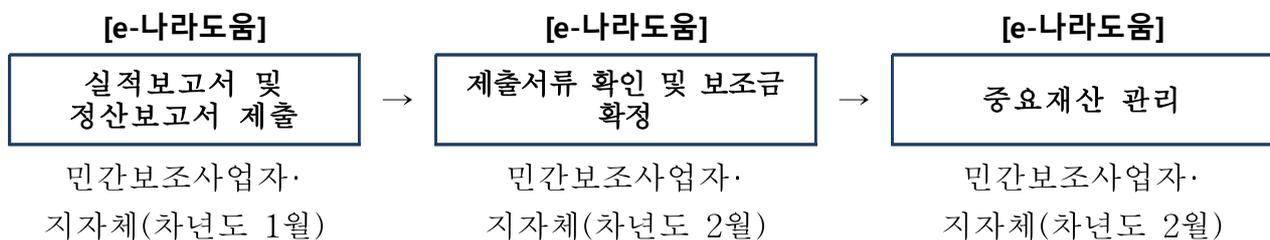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등

-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청 전에도 최초 정산 시 미리 공제하도록 변경하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환급금 재투자를 승인하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자부담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변경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전·후 사진을 포함한 정산 서류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에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농식품부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3, 제33조의2에 따라 민간보조 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조치를 하고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의 요청을 받아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공개 하여야함.

위의 사항은 예치사업에 해당하며, 비예치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상황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나 ‘지자체’로 보면 됨

□ 의무사항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를 통해서 방목생태 축산 농장을 운영
 - (분뇨처리) 방목축산에 따른 분뇨의 자연순환 처리 또는 퇴·액비 전환을 통한 적정하게 관리
 - (방역관리) 사람과 차량출입 등에 대한 차단방역 및 방목사육에 따른 질병피해를 방지
 - (위해요소중점관리)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 사전 관리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 친환경·동물복지를 고려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 (친환경축산물 생산)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순환형 축산(유기사료)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원칙(배고픔, 불편함, 질병, 고통, 행동표현)에 따른 사육환경 및 관리 추진하도록 노력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지급신청 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받은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제출

도(시·군)

-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 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용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개별사업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관리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집행실적보고

-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의 집행실적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보고(사업종료 즉시)

*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초지조성 실제 지출내역 포함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정산은 개별 사업에 따라 보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1개 이상), 연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도 및 시·군 담당자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적정성, 사업비 항목별 적정 집행 여부 등

□ 제재조치

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별지 제7호서식]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시·군)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실시

○ [별지 제8호서식]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의 기계·장비 용자 및 보조에 대한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또는 용자금 회수 조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에서는 농협경제제주와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

* 시·군은 보조지원 받은 방목생태축산농장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방목생태축산농장이 용자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도에서는 경고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 준수

□ 협조사항

(사)친환경축산협회

- 시·군에서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관리카드”를 지속 관리 및 보완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실시
-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 운영실태 점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온라인 홍보 등 지원
- 신규 신청농가, 관심농가, 부실관리농가 등에 대해 분야별 컨설팅 지원

농협경제지주

- 시·도(시·군)와 협조하여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중 기계·장비 구입비에 대한 보조 및 용자 이중지원 등을 지도·점검하고, 필요시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산 립 청

- 방목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대부) 등 제도개선 추진
- 보전국유림 내 가축방목을 위한 허용범위 검토(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협의)

농촌진흥청

- 초지 조성 및 관리 이용기술, 축종별 산지초지 방목 이용기술, 산지축산 환경보전 및 방목가축 질병관리기술 등 연구
- 현장적용 기술의 보급 및 컨설팅 등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직불금 지급 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인센티브 부여([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 확인)

V. 평가 및 환류

□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초지조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전·후 사진을 포함한 정산 서류 제출
- (울타리설치)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전·후 사진을 포함한 정산 서류 제출
- (경영지원) [별지 제6호서식] 및 전·후 사진을 포함한 정산 서류 제출
- (교육·홍보) 매년 수립하는 교육·홍보 추진계획 내 서식에 따라 제출

24. 조사료(볏짚) 스팀 가공장비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이두규 담당자 장용연	061-286-6540 061-286-6541

I. 추진방향

□ 사업 목적

- 국내산 조사료(볏짚)의 영양가를 높여 사료 효율 향상을 통한 사료비 부담완화
 - 영양가 상승 : 조단백질(2.3% → 4.2), 조섬유(9.9% → 29), 가용무질소(14.7% → 43.8)
- 조사료(볏짚)의 열처리 가공을 통해 가축의 소화율(25~30% ↑)을 개선하고 기호성을 증진시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

II. 추진계획

①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70대
- 사업비 : 462,000천원(도비 69,300^{15%}, 시·군비 161,700^{35%}, 자담 231,000^{50%})
 - 지원단가 : 6,600천원/대

나. 지원대상 : 소(한우, 젖소) 사육농가

다. 사업내용 : 조사료(볏짚) 스팀 가공장비 지원

②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3. 1. ~ 12.

다. 대상자 선정

- 시·군은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내 대상자 선정
 -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방법 :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 1순위 : 50마리 미만 도 한우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참여 농가
 - 2순위 : 50마리 미만 사육 농가
 - 3순위 : 50마리 이상 도 한우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참여 농가
 - 4순위 : 50~100마리 사육 농가
 - * 단 우선순위 내 대상 농가 없을 시 100마리 이상 사육 농가 선정 가능
 - ** 사업 업체 생산 정액 사육농가 사업대상사 제외

- ※ 우선 순위 농가 내에서 아래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 ①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
 - ②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장
 - ③ HACCP 인증 농장
 - ④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농장

라. 제품 공급·설치

- 시·군은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가급적 6월 말까지 제품 설치 완료
- ※ 제품의 수리 및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공급업체 제품 우선구매
- 사업 추진 상황 현장 점검 및 지도(수시)
 - 대상자 사업비 변경시, 예산범위 내 추진 후 도에 보고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시·군은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중 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 단가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바. 사후관리

- 연 2회 이상 시장·군수 책임하에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목적 위반 시 자금 회수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환수(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 제한)

사. 기타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III.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모집(농가→시·군) : '23. 1. 20.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군→도) : '23. 2. 3.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3. 12. 30.

25.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서주형	044-201-2359
		주무관 신준호	044-201-2360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이두규	061-286-6540
		담당자 오성준	061-286-6543

I. 추진방향

□ 목적

-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사업비(추정) : 600억원(융자 100%, 연리 1.8%, 2년거치 일시상환)

II.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상환용도 불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
 - *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 지원제외자
 - 공무원·교사, 정부(지방) 또는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비정규*의 계약직은 가능)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 계열화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커녕 가능(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 '20.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자연인 또는 법인)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지원내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료 공급업체의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지원한도 :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600백만원), 사슴·꿀벌(90백만원)

□ 사업시행기관

- 시행주체 : 도(시·군),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26.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 (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이두규 담당자 오성준	061-286-6540 061-286-6543

I. 추진방향

□ 사업목적

- 생산비 증가 및 소득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의 금리부담 경감

□ 추진방침

-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영농의욕 고취
- 2022년에 실행된 대출금액에 대해 한시적 이자 지원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II. 추진계획

①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3.1. ~ 12.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30%}	시군비 ^{70%}
3,000호	2,400	720	1,680

* 시·군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비율 조정 가능

라. 사업내용 : 2022년 사료구매자금 대출이자(1%) 지원

마.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 2022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도내 축산농가 및 법인
- * 금융기관(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실행 사실이 확인된 자

바. 지원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 : 2022년 대출 실행된 사료구매자금의 1%

사. 실시요령

○ 추진절차

① 사업대상 검토(도, 시·군)

- 농·축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대출실행자 명단 검토

② 사업대상 확정(시·군)

- 확인된 명단 및 대출실행액을 검토하고 자체심의회 등을 통해 대상자 확정

③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도 → 시·군)

④ 보조금 지급(시·군 → 농·축협)

⑤ 사업비 정산(농·축협 → 시·군 → 도)

○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도	-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 총괄 - 대출실행자 파악 - 보조금 교부 및 시·군 송금, 정산
시·군	- 농가안내 및 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정산
농·축협	- 대출현황 및 대상자 명단 작성 - 보조금 청구 및 정산 보고

○ 지급방법

- 확정된 사업비를 각 금융기관에 연 2회(6월·12월) 지급
- (유의사항) 지원대상 여부 및 이자 산정기간 등 확인 철저
- 지원금액 산정 시 원단위 금액 절사(예, 123,456원 → 123,450원)

② 추진체계

가. 선정단계



도

-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알림
- 농·축협에서 제출된 명단의 적정성 검토

농·축협

- 사업지침을 기준으로 사료구매자금 대출실행자 명단 작성·제출

시·군

- 농·축협에서 제출된 명단의 적정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

나. 시행 및 정산단계



도

- 선정된 명단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시·군

- 도 보조금 교부결정 즉시 농·축협별 보조금 교부결정
- 연 2회(6월, 12월) 대출이자금을 확인하고 농·축협에 보조금 지급

농·축협

- 대출 상환명단 작성 및 제출(도, 시·군)

III. 행정사항

- 사료구매자금 대출실행액 파악 : '23. 1.
- 사업대상자 선정 : '23. 3.
- 사업 정산결과 제출 : '23. 12. 30.까지

27. 한우경진대회 및 축산인 한마음 대회(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이두규 담당자 윤재현	061-286-6540 061-286-6542

I. 추진방향

- 유전능력 평가·확인을 통한 전남산 한우의 개량성과 측정
- 우량 가축 선발, 고급육 생산을 통한 차별화로 전남산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
- 우수 축산물 기자재(기계, 장비, 사료 등) 전시 등 축산관련 정보 제공

II. 추진계획

- 주최/주관 : 시·군/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
 - 후 원 : 전라남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협 조 : 시·군, 전국한우협회전남도지회, 한국종축개량협회호남지부 등
- 일 시 : 2023. 10월 예정(전국대회 일정 감안 추후 확정)
- 장 소 : 시·군 수요조사 후 개최 시·군 결정
- 참가 예정인원 : 500명
- 사업량/사업비 : 1회/50백만원(도비 100%) * 시·군비, 농협전남지역본부, 한우자조금 별도편성
 - 행사장 및 전시관 설치, 홍보관, 부대행사, 시상금, 가축 운송비, 시식회비용, 방역비 등
- 주요 내용 : 우량한우선발, 고급육품평회, 기자재 전시, 소비촉진행사, 이벤트 등
 - ※ 세부추진계획 별도 시달

III. 기관별 협조사항

- 시·군은 경진대회 및 고급육 품평회 참가축 사전 선발 철저
- 동물위생시험소는 시·군 출품축의 의무검사 대상 질병의 신속한 검사
- 관내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 유도

28.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이두규 담당자 윤재현	061-286-6540 061-286-6542

I. 추진방향

- 축산물 품질 관리 강화로 수익성 개선 및 한우·돼지고기 수출 활성화
-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여 상품성 향상 및 전남 축산물 소비자 신뢰 도모

II.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3. 1. 1. ~ 12. 31.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50%}	자 담 ^{50%}	
-	160	80	80	

- 사업대상 : 수출협의체에 참여한 광역브랜드 및 축산물가공업체(소·돼지고기)
 - 우선순위
 - ① 수출실적('21년 이후)이 있는 광역브랜드(녹색한우, 지리산순한한우)·축산물가공업체*
 - ② 축산물 수출협의체 참여하여 수출 준비 중인 광역브랜드
 - ③ 수출 준비 중인 광역브랜드
 - * 축산물가공업체 조건 : 식육포장처리업체, 브랜드명 특허보유업체, 도지사인증, 시·군인증,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득한 축산물가공업체
- 지원한도 : 개소당 52~56백만원(사업수요에 결과 반영)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사업비를 지원(정산)하되 한도 초과 시는 자부담 처리
- 사업내용 : 축산물 품질관리 강화 및 한우·돼지고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III. 사업시행요령

- 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 절차
 - 사업 신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도에서 선정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화재보험증권,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완료 후 신속한 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사후관리
 - 연 2회 이상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태조사 실시, 지원목적 위반 시 자금 회수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환수(농가와 납품업체는 2년간 사업 제한)

IV. 행정사항

- 사업지침 안내 및 접수(농가 → 시·군) : '23. 1. 20.까지
- 사업대상자 검토보고(시·군 → 도) : '23. 1. 27.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도 → 시·군) : '23. 2. 3.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대상자 → 시·군 → 도)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29. 축산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이두규 담당자 윤재현	061-286-6540 061-286-6542

I. 추진방향

- 축산물 수출 강소(強小)기업 육성으로 수출 확대 및 경쟁력 확보
- 가축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하락 및 재고량 증가 대비, 전남산 축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 기반 육성

II.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3. 1. 1. ~ 12. 31.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300	60	90	150	

- 사업대상 : 도 수출협의체에 참여한 광역브랜드 및 축산물 가공업체(한우·돼지고기)

* 수출협의체(10개소) : 지리산순한한우, 녹색한우, 함평천지한우, 장흥한우, 영암매력한우, 순천광양축협, 화순축협, 고흥축협, 동명축산, 대원축산

- 사업내용 : 한우·돼지고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해당년도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① 수출물류비, 포장재 구입비
- ② 판촉 행사비(홍보물 제작, 시식용 원물 구입비 등)
- ③ 판촉 마케팅비(포장·용기 디자인 및 상품개발, 사업설명회, 박람회 참가비 등)
- ④ 안정성 검사 및 품질 인증비

※ 상기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도와 별도 협의 후 진행

III. 사업시행요령

- 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3. 1. ~ 12.
- 대상자 선정
 - 시·군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 신청서를 제출받아 증빙서류 및 우선순위 등 지원 대상 적격 여부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 우선순위
 - ① 도 수출협의회에 참여하고, 수출실적('22년 이후)이 있는 광역브랜드 및 축산물가공업체
 - ② 도 수출협의회에 참여하고, 수출 준비 중인 광역브랜드 및 축산물가공업체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정산
 - 수출물류비
 - 수출실적 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선적확인서(B/L), 수출물류비 내역서, 금융기관 입금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 등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업비 집행
 - * 제출서류 :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별지 1), 수출실적 증명서(별지 2), 수출신고필증, 선적확인서(B/L), 수출물류비 내역서, 금융기관 입금확인서 등
 - 공통사항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집행
 - ① 사업비 중 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②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 한도 미만은 실구입 비용으로 보조금 집행
 - ③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사후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환수(2년간 사업 제한)
- 기타
 -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적용

IV. 행정사항

- 사업지침 안내 및 접수(수출기업 → 시·군) : '23. 1. 20.까지
- 사업대상자 검토보고(시·군 → 도) : '23. 1. 27.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도 → 시·군) : '23. 2. 3.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대상자 → 시·군 → 도)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30.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 참가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이두규 담당자 윤재현	061-286-6540 061-286-6542

I. 추진방향

-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브랜드육 판매 및 홍보의 장 마련
 - FTA 등 수입 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 브랜드 육성
- 우수 브랜드 축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경영체간 경쟁 유도를 통한 고품질 차별화 촉진

II. 행사개요

- 행사명 : 2023년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 기간/장소 : 미정
 - 사업비 : 40백만원(도비 100%)
 - 참가대상 : 브랜드 경영체
 -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참여 경영체, 브랜드 경진대회 수상 경영체, 소비자시민모임 우수 브랜드 인증 경영체, 지자체 추천 경영체 등
 - 주요행사 내용
 - 축산물 브랜드 종합 홍보관 설치(실내), 축산물 브랜드 전시, 판매관 운영(실외)
 - 즉석 숯불 구이존 운영(실외), 비즈니스 상담관 운영(실내 또는 실외), 부대행사(안)
 - 시·군 교류의 날(희망 브랜드 경영체 6개소)
 - 축산물을 이용한 요리 경연대회(한우프라자), 캠핑 레시피 공모전(일반) 및 유명셰프 초청 시연
 - 체험 프로그램 및 현장 이벤트 실시
 - 야(夜)시장(푸드트럭 운영), 영화상영 및 이벤트 공연 진행 등
- ※ 세부사업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 후 별도 시행예정

< 제 재 >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동 시행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31. 축산물 이력제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도재규	044-201-2346
		담당자 이태은	044-201-2347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이두규	061-286-6540
		담당자 오성준	061-286-6543

I. 사업개요

□ 목 적

- 소, 돼지, 닭·오리·계란의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판매단계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방역 등의 효율성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2종(귀표부착비, DNA 검사비)
- 지원대상 : 위탁기관 19개소(축협 17, 낙농육우협회, 전남광주한우조합), DNA검사기관(순천대학교)
-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계	183,917	1,779,901	889,951	274,644	615,306	
귀표장착비	183,127	1,758,018	879,009	263,703	615,306	
DNA검사비	790	21,883	10,942	10,941	-	

- 지원단가 : 귀표장착비 9,600원/두, DNA검사비 27,700원/건
- 지원방법
 - 농식품부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주체 별로 세부시행계획 마련 후 사업 추진
 - 사업시행주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사업운영비 등 지원

□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II. 사업 주요내용

□ 지원 예산의 용도

- 소 위탁기관 이력관리비(귀표부착 등), 소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 사업내용(단계별 추진체계)

< 쇠고기이력제 >

① 사육단계

- 출생등 신고 및 귀표부착
 - 농장경영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양수·이동·폐사·수출입 등) 한 경우 해당 지역의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 전국 시·군별로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축산관련 법인 중에서 지정, 업무 위탁 수행
 - * 가축거래상인은 거래(양도·양수)한 경우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30일 내 귀표부착(육우의 경우 7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사육규모에 따라 귀표 자가부착농가를 확대·운영하여 소 출생에 따른 귀표 부착은 농가에서 스스로 부착하고, 탈락 귀표의 재부착은 위탁기관에서 부착
- 가축시장 개설자는 가축시장 내 소 거래내역을 신고(거래완료 다음날까지)

② 도축단계

- 도축장에서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
 - 도축장 경영자는 귀표 부착여부와 전산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 시 도축금지(귀표 미부착 등 개체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 검사관의 위생검사 합격여부와 등급판정 결과 등 즉시 입력
-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의 도매시장 경매내역을 신고(당일)

③ 포장처리단계

- 포장처리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거래실적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거래·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에 기록·보관

④ 판매단계

-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실적 관리
 - 식육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판매
 -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⑤ 소비단계

- 스마트 폰 앱(축산물이력제) 또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농장경영자, 가축사육시설, 소의 종류, 출생일, 도축장 명칭, 도체중, 식육포장처리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12여개 정보 공개

<사업추진체계>



<기관별 역할과 기능>

기관명	역할 및 기능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총괄 및 지도감독 · 쇠고기 이력시스템 DB운영
시·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도축·포장처리단계 보고 및 출입감시에 관한 사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단계 보고 및 출입감시에 관한 사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소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 통보 · 유통 및 역학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축산물품질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유통·판매단계의 누락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유전자 검시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분석
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유통·판매 단계, 폐사 등 신고서와 결수 및 기록관리 · 위포의 부착 지원

< 돼지고기이력제 >

① 사육단계

- 농장식별번호 관리 및 사육두수 신고 등
 - 농장경영자(종돈, 일반돈)는 농장식별번호를 등록하여 관리(사육지, 농장정보 등)
 - 농장경영자는 매월 사육두수를 신고(익월 5일까지,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하고, 이동시 농장식별번호를 표시
 - 종돈의 경우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출생, 이동, 폐사신고(종돈 등록기관)

② 도축단계

- 도축 전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 도축업 경영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전산시스템에 농장식별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도축금지(농장식별번호 미표시 등 확인이 불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전 이력번호를 신청하여 발급(축평원)받고, 해당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 반출
 - 검사관의 위생검사 합격여부 등 즉시 입력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돼지고기의 도매시장 경매내역을 신고(즉시)

③ 식육포장처리단계

- 포장처리업소에서 해당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거래실적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돼지고기의 이력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거래·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에 기록·보관
 - 이력번호 단위로 포장처리 하되, 불가피하게 묶음번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거래내역 증명서(영수증 등)에 묶음번호를 기록

④ 판매단계

-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당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실적 관리
 - 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판매
 -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⑤ 소비단계

- 스마트 폰 앱(축산물이력제) 또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등을 통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농장경영자, 가축사육시설, 농장식별번호, 도축장 명칭, 도축년월일, 식육포장처리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12여개 정보 공개

< 사업시행 주체별 역할과 기능 >



기관	역할 및 기능
농림축산식품부 (지도 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수합 및 추진점검, 시스템 구축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 감독, 관련 법령 개정 등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DB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시정명령·출입·검사 및 수거(국내산 이력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의 과태료 부과, 징수(국내산 이력축산물)
시·도 (업무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독기관의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 법 제23조에 의한 시정명령 및 제24조에 의한 사육에서 판매단계까지 보고 및 출입검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시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서별번호 발급신청 및 부여 통보 태지의 이동신고 접수, 이력번호 발급신청 접수 및 부여 통보 가축 및 축산물서별대장의 기록, 관리 및 변경사항 접수·처리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등
이력지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기관 및 참여농가 제로이행 관련 업무 지원 정보 변경 관리, 이력번호 수거 부여, 이력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중등 등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등의 출생, 폐사, 이동 등 신고접수 및 사육현황신고 접수 중등의 가축 및 축산물서별대장의 기록 중등의 자체식별등록을 위한 귀표등의 수봉에 관한 사항 등

< 닭·오리·계란이력제 >

① 사육단계

- 농장식별번호 등록 관리, 수입·부화장 입란 및 사육현황·이동 신고 등
 - 농장경영자(닭·오리)는 농장식별번호를 등록하여 관리(사육지, 농장정보 등)
 - 농장경영자는 매월 사육두수를 신고(익월 5일까지,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농장간 이동 시 농장식별번호 기준 이동신고(이동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종축(종계·종오리 및 종란 등)의 경우 수입·이동신고(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 부화장의 경우 입란신고 및 초생추 이동신고시 농장식별번호 기준 기록·관리(입란한 날 또는 이동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② 도축선별포장단계

- 도축(가금)·선별포장(계란) 전 농장식별번호의 이력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 도축업 경영자는 이력시스템에 농장식별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력번호를 발급신청하고 도축(농장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력번호 발급 불가)
 -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선별포장 전 의뢰받은 계란에 대하여 난각번호를 이력번호로 등록한 후 선별포장 처리(농장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력번호 등록 불가)
 - * 국무조정실 조정·결정('20.12.2.)에 따른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후에는 계란 이력번호를 난각번호로 일원화하여 운영 예정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 처리된 닭·오리의 최소포장지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
 - * 계란은 계란접데기에 표시된 10자리로 대체(최소포장지 표시 없음)
- 닭·오리 도축 및 계란 선별포장 처리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도축장 영업자는 도축 처리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선별포장업 영업자는 선별포장 실적신고를 선별포장이 완료된 날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③ 포장처리단계

- 해당 닭·오리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 및 포장처리·거래실적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닭·오리고기를 포장처리한 최소포장지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 이력번호 단위로 포장처리 하되, 필요하여 묶음번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전산 신고하고 묶음번호를 최소포장지 및 거래내역서 등에 표시
 - 포장처리업소의 입·출고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④ 판매단계

- 판매되는 닭·오리고기·계란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확인 및 거래실적 관리
 -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판매가 의무화되어 있음
 -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⑤ 소비단계

○ 모바일 앱 또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모바일 앱(축산물이력제),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 농장경영자, 가축사육시설, 농장식별번호, 도축장(선별포장업소) 명칭, 계란의 산란일자, 도축연월일, 식육포장처리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정보 공개

< 사업시행 주체별 역할과 기능 >



기관	역할 및 기능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총괄 및 지도·감독, 시스템 구축, 예산, 법령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점검, DB운영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업소에 대한 시장명령·출입·검사 및 수거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의 과태료 부과·징수
시·도 (업무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독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시장명령(제23조), 보고 및 출입검사(제24조)
축산물품질평가원 (업무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식별번호 부여·통보 및 기록·관리 닭·오리 사육현황·이동신고 접수, 이력번호 발급 관리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관리 및 변경신고 등
이력지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대상자의 제도이행 관련 업무 지원 정보 변경관리,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등
종축등 수출입 신고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계·종오리 및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종계·종오리 및 종란) 기록·관리 및 변경신고 등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시달

도

- 도는 관할지역에서 사육 중인 소의 귀표부착 등의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붙임2 서식)를 2023.1.31.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위탁기관의 귀표부착 및 귀표의 소요 수량,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추진계획 및 이력관리 현장 지도단속 계획 등을 포함
 - 귀표부착 및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가축식별대장, 이력관리시스템 및 이력지원실 운영, DNA 동일성 검사, 교육·홍보 등의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2023.1.31.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이력관리비 운영, 귀표의 구매·배부, 사육단계 농가 교육·홍보 및 현장지도 등의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2023.1.31.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한국종축개량협회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귀표구입, 이력관리비 및 종돈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2022.1.31.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시행 단계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요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및 위탁기관은 관련 업무를 수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

□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후, 자금배정 요청에 따라 자금(지출한도액)을 배정
 - 농협경제지주 촉발기금사무국에 촉발기금 배분내역 통지

예산지원 사업시행기관

- 교부결정 후, 사업계획에 따라 소요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 농협경제지주 촉발기금사무국을 통해 사업비 집행
- 도는 위탁기관의 귀표부착 및 DNA 동일성 검사 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여 지급하고, 착오가 있는 경우 즉시 회수 조치

□ 보조금 예산의 교부, 집행 및 정산절차



① 세부집행 요령

- ① 보조금 예산 통지
 - 예산 심의·확정(국회) 후, 확정된 내역을 사업시행기관에게 통지(사업시행지침)
- ② 보조금 교부 신청(대상: 예산지원 사업시행기관)
 - 보조사업 목적·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붙임3 서식)와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붙임2 서식) 기재사항
 - 시행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주된 내용, 추진계획 등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보조사업의 효과 등

③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

④ 자금배정 신청

- 분기별 소요자금의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자금배정을 신청

⑤ 자금배정 통지

- 보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 소요자금을 배정 통지
-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 축발기금 지출한도액 배분 통지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을 통해 사업비 집행
- 자치단체보조는 자금 배정시 즉시 입금될 수 있도록 자금배정 신청 시 계좌번호(통장사본 제출)를 명시
- 위탁기관에서 축산물이력제 예산을 별도계정으로 운영토록 지도 철저

⑥ 보조사업 수행 및 실적 보고

-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개월(민간) 또는 3개월(지자체) 이내 제출
- 사·도는 귀표부착 및 DNA동일성검사 실적, 유통단계 이행주체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도단속 실적(과태료 부과횟수 현황 포함) 등을 제출
- 위반업소 내역은 타 단속기관의 과태료 부과횟수 산정과 공표대상자의 정확한 확인 등을 위하여 이력시스템(pub.mtrace.go.kr)에 등록(붙임8 참고)한 후 실적(붙임4 서식) 제출
- * 근거 : 「축산물이력법」 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DNA동일성검사 추진현황 등 사업추진실적 등을 제출
- 농협경제지주는 소 사육농가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귀표의 구매배부, 이력관리실적 등을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종돈 출생이동폐사신고, 귀표 구매배부 및 이력관리실적 등 사업추진실적을 제출

⑦ 보조금 예산확정(정산) 및 통지

-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보조금 예산을 확정하여 통지

⑧ 보조금의 반환

-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예산 등 정산 잔액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환

② '23년 보조금 예산 집행시 유의사항

- 정부에서는 국내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 중이므로 조기집행 준비에 철저
- 사업비가 원활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소요되는 물품 등의 조기 구매를 위한 계약체결 준비 등 추진

- 보조금 예산의 교부결정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신속히 제출
-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따른 월별 재정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
- 전년도 귀표부착비 지급 부족액은 당해연도 귀표부착비를 이용하여 집행 가능

□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기관에 대해 사업 지도·감독, 정부지원 예산(인건비, 사업비 등)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단, 예산 운영실태 점검은 예산지원 사업시행기관에 한함)

시·도

-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귀표부착 및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사육단계 이력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이력제 업무소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의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체계 구축(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위탁기관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예산은 즉시 회수 조치
 - 식육유통업체 등의 축산물이력제 이행상황을 수시 지도·단속하고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적극 추진
 -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이력제 추진실적(붙임4 서식) 제출
 - 위반업소 내역은 타 단속기관의 과태료 부과횟수 산정과 공표대상자의 정확한 확인 등을 위하여 이력시스템(pub.mtrace.go.kr)에 등록(붙임8 참고)한 후 실적(붙임4 서식) 제출
- * 근거 : 「축산물이력법」 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사업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 이력지원실 운영 및 DNA동일성검사 실적 등을 제출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위탁기관의 업무성실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 위탁기관 및 소 사육농가 등에 대한 지도·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

중도 등록기관

- 중도 등록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는 사업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 종축의 사육현황, 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 및 변경신고 내역 등을 제출

종축등 수출입 신고기관

- 종축등 수출입 신고기관(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은 사업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 내역 등을 제출

《제재》

- 시행기관의 사업실적에 따라 예산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
 - 이력관리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미흡한 기관은 포상 등 배제
- 사업시행기관의 자금 집행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사육, 유통단계의 이력제 이행실태를 지자체, 위탁기관별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환류

- 축산물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한 공로자 포상
-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 이력관리 이행실태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건의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실시 요령 개정 및 각종 지침 작성 시 반영

32. 꿀벌산업 육성사업(양봉) (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이두규 담당자 오성준	061-286-6540 061-286-6543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화분매개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산업의 보호 및 육성
- 이상기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 추진방침

- 양봉협회와 제품 선정 협의 및 공동구매 등으로 불량제품 공급 방지
-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분봉·채밀기 이전 제품 공급 독려

□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II. 추진계획

①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3.1. ~ 12.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500호	2,500	500	750	1,250

* 시·군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비율 조정 가능

라. 사업내용 : 꿀벌 사양관리 및 벌꿀 수확 관련 기자재 등 지원

마.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 지침 시행일 이전 전라남도 내 주소를 두고 양봉등록을 완료한 농가·법인

- 양봉농가 등록 시·군(사업장 소재지)에 사업 신청
- 2개 이상의 시·군(타 시·도 포함)에서 중복지원 여부 확인 철저(이중지원 불가)
-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등록을 완료(미등록 시 지원 불가)
- 등록기준(30군) 미만 사육농가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지원 가능

- 지원품목

- 사육 및 사양관리 관련 기자재
- 꿀 및 부산물 수확 관련 기자재
-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군수가 인정한 품목
- 실 구입비용으로 하되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꿀벌 사육농가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

마. 지원 우선순위

- ① 양봉자조금 납부 농가(납부내역 확인)
- ② 150군 이상, 300군 미만 사육농가(실태조사 기준)
- ③ 벌꿀 검사 실시 농가(증빙자료 제출)
- ④ 밀원수 식재농가(토지 등 보유·임대 및 식재 증빙)
- ⑤ 여성농업인(실태조사 기준/1인경영·고용경영일 경우에 한함)

바. 지원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 지원기준 : 12만원/군 * **꿀벌산업 실태조사 미실시 농가는 80% 적용**
- 중복·편중 지원 금지여부 : 해당 됨 [단, 소모성 기자재(벌통, 소초광 등)는 예외]

2 추진체계

가. 신청단계



도

- 세부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알림

시·군

- 도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나. 선정단계



시·군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 및 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즉시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사업대상자

-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즉시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다.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 도내 소재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 안됨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실제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 준수 여부, 선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라.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실시하여 임의 매각 등 방지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및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사후관리기간 : 건물·부속설비(준공일로부터 10년), 주요기계·장비(구입일로부터 5년)
- * 위 기간동안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사업대상자

- 사후관리기간 내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위 내용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III. 행정사항

- 사업홍보 및 희망농가 사업신청 : '23. 1. ~ 2.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3. 2. 28.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 : '23. 12. 30.까지
- * 사업 추진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분봉·채밀기 이전 사업 완료 독려

33. 꿀벌산업 육성사업(한봉) (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이두규 담당자 오성준	061-286-6540 061-286-6543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화분매개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산업의 보호 및 육성
- 이상기온, 낭충봉아부패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한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 추진방침

- 한봉협회와 제품 선정 협의 및 공동구매 등으로 불량제품 공급 방지
-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분봉·채밀기 이전 제품 공급 독려

□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II. 추진계획

①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3. 1. ~ 12.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410호	280	56	84	140

라.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 지침 시행일 이전 전라남도 내 주소를 두고 양봉등록을 완료한 농가·법인
- 양봉농가 등록 시·군(사업장 소재지)에 사업 신청
- 2개 이상의 시·군(타 시·도 포함)에서 중복지원 여부 확인 철저(이중지원 불가)

-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등록을 완료(미등록 시 지원 불가)
- '22. 1. 1.이후 한봉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가
- 등록기준(10군) 미만 사육농가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지원 가능

- 지원품목

- 사육 및 사양관리 관련 기자재
- 꿀 및 부산물 수확 관련 기자재
- 토종벌 입식
-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군수가 인정한 품목
- 실 구입비용으로 하되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꿀벌 사육농가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

마. 지원 우선순위

- ① 낭중봉아부패병 발생농가
- ② 한봉협회 도지회 회원
- ③ 밀원수 식재농가(토지 등 보유·임대 및 식재 증빙)
- ④ 여성농업인(실태조사 기준/1인경영·고용경영일 경우에 한함)

바. 지원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 : (기자재) 농가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토종벌 입식) 농가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 지원기준 : 13만원/군 * **꿀벌산업 실태조사 미실시 농가는 80% 적용**
- 지원단가 : (기자재) 실 구입비용으로 하되, 지원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토종벌 입식) : 40만원/군 내에서 실제 구입비용 지원
- 중복·편중 지원 금지여부 : 해당 됨 [단, 소모성 기자재(벌통, 소초광 등)는 예외]

② 추진체계

가. 신청단계



도

- 세부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알림

시·군

- 도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나. 선정단계



시·군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 및 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즉시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사업대상자

-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즉시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다.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 도내 소재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 안됨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실제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 준수 여부, 선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라.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실시하여 임의 매각 등 방지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및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사후관리기간 : 건물·부속설비(준공일로부터 10년), 주요기계·장비(구입일로부터 5년)
- * 위 기간동안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사업대상자

- 사후관리기간 내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위 내용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III. 행정사항

- 사업홍보 및 희망농가 사업신청 : '23. 1. ~ 2.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3. 2. 28.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 : '23. 12. 30.까지
- * 사업 추진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분봉·채밀기 이전 사업 완료 촉구

34.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 성	044-201-2335
		담당자 이정은	044-201-2334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이두규	061-286-6540
		담당자 오성준	061-286-6543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화분매개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산업의 보호 및 육성
- 말벌 퇴치 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 소득증대 유도

□ 추진방침

- 양봉·한봉협회와 제품 선정 협의 및 공동구매 등으로 불량제품 공급 방지
-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분봉·채밀기 이전 제품 공급 독려

□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II. 추진계획

①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3. 1. ~ 12.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기금 ^{30%}	시군비 ^{30%}	용자 ^{30%}	자담 ^{10%}
60호	60,000	18,000	18,000	18,000	6,000

* 용자 이자율 : 연리 2%, 5년거치 10년 상환(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라.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말벌퇴치장비) 양봉농가 등록^①을 한 양봉·한봉 사육농가 중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②을 이수자
- *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등록을 완료(미등록 시 지원 불가)

· (스마트센서) 양봉농가 등록을 한 양봉가·한봉 사육농가 중 100군 이상 사육농가

① 등록이 불가능한 등록기준(10군) 미만 사육농가는 등록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② 농촌진흥청, 농촌진흥기관 등 주관 교육(미이수 시 사업 완료 이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원품목 : 말벌 퇴치(포획) 장비, 스마트센서

마. 지원 우선순위

- ① 등록기준(양봉 30군, 한봉 10군) 이상, 300군 이하 농가
- ② 10군(양봉·한봉) 이상, 300군 이하 농가
- ③ 등록기준 미만, 300군 초과 농가

바. 지원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 : (말벌퇴치장비)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사업비 300만원 이내
(스마트센서) 농가당 510만원
- 지원단가 : (말벌퇴치장비) 10만원/개,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스마트센서) 온·습도, 가온판 40만원/군, MUC부자재 11만원/군
- 중복·편중 지원 금지여부 : 지원한도 범위 내의 경우 해당 되지 않음

② 추진체계

가. 신청단계



농식품부·도

- 세부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도(시·군)에 알림

시·군

- 사업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 신청 시 신청 방법을 별도 안내)

【 e나라도움 사용 시 】

-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
-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여 신청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 e나라도움 사용 시 】

- e나라도움상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사업계획서 등록) 또는 사업등록

나. 선정단계



시·군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 및 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말별 퇴치에 대한 교육 안내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즉시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 e나라도움 사용 시 】

- 심의회 등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비공개
-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사업대상자

-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즉시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 말별 퇴치에 대한 교육 이수(지도·홍보 책자, 온라인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다.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 도내 소재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 안됨

【 e나라도움 사용 시 】

-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사업완료 후 e나라도움에 전자증빙서류를 등록

사·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실제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 준수 여부, 선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 e나라도움 사용 시 】
·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10일 이내 현장 확인 후 결과 등록

라.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사·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및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사후관리기간 : 구입일로부터 3년간
- * 위 기간동안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등 제한

사업대상자

- 사후관리기간 내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위 내용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III. 행정사항

- 사업홍보 및 희망농가 사업신청 : '23. 1. ~ 2.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3. 2. 28.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 : '23. 12. 30.까지
- * 사업 추진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분봉·채밀기 이전 사업 완료 촉구

35. 축산계열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상훈 담당자 안준영	044-201-2338 044-201-2339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이두규 담당자 윤재현	061-286-6540 061-286-6542

1. 사업개요

- 목 적 : 축산계열화사업자 경영안정 지원으로 계약사육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에 따른 농가소득 및 생산성 향상
- 사 업 비 : 20억원
- 지원대상 : 닭·오리·염소 계열화사업자
- 지원한도 : 시설·운영 자금(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인센티브 자금 (개소당 30억원 이내)
 - * 인센티브자금: A방역을 위한 오리농가 사육제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로서 모범사업자
- 지원조건
 - 시설·운영자금 : 사업비의 70% 이내, 금리 2-3%, 3년 거치 7년 상환(시설비), 2년 이내 상환(운영비)
 - 인센티브 자금 : 금리 0 ~ 1%, 2년 이내 상환
- 자금용도 : 계열화 사업을 위해 가축 생산, 축산물의 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계열화사업 경영시스템, 사육비 등
 - ※ 지원실적('18~'22) : '18)68억 원 → '19)60 → '20)60 → '21)24 → '22)20

◀ '18 ~ '22 추진실적 ▶

- ◆ '18년 : 3개소(다슬, 사조화인코리아, 제이디팜)/ 68억원
 - 시설·운영비 : 1개소(다슬 20억원) / - 인센티브 자금 : 3개소(다슬, 사조화인코리아, 제이디팜) 48억원
- ◆ '19년 : 2개소(사조화인코리아, 제이디팜) 60억원(인센티브 자금)
- ◆ '20년 : 2개소(다슬, 제이디팜) 60억원(인센티브 자금)
- ◆ '21년 : 1개소(다슬)/ 24억 원(인센티브 자금)
- ◆ '22년 : 2개소(다슬, 제이디팜) 20억원(인센티브 자금)

2. 지금까지 추진상황

-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 관리업무 추진 : 10개소(돼지 4, 닭 1, 오리 3, 닭·오리 1, 염소 1)
- 사업대상자 선정(2개소 20억원) : 제이디팜(10억원), 다슬(10억원)

3. 향후 추진계획

- 2023년 축산 계열화 사업 지침 통보 시, 별도 시·군 시달

축산자원팀 소관

36.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서기관 정창남	044-201-2357
		사무관 이상준	044-201-2362
		주무관 이성원	044-201-2363
		주무관 황정훈	044-201-2358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고영민	061-286-6550 061-286-6552

I. 사업개요

1. 목 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154,170	153,865	133,606	154,444	150,954	110,651	100,988
국 고	43,150	36,908	35,050	45,049	49,401	34,071	30,231
용 자	65,822	55,710	48,295	55,523	60,917	48,556	38,980
지방비	33,591	39,509	33,162	39,319	30,095	20,755	19,894
자부담	11,607	21,738	17,099	14,553	10,541	7,269	11,883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축산악취개선)

I

사업 개요

□ 목적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고 축산악취를 저감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단년도)

○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유형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50, 자부담 10

- 가축분뇨처리시설: 퇴·액비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시설·장비 등
- 악취저감시설·장비: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등
- 부대기계·장비: 로더, 고액분리기, 퇴·액비 운반차량 등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시·도, 시·군·구는 사업계획 및 행정처분 사례 등 신청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서기관 이상준 주무관 황정훈	044-201-2362 044-201-2358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배출 시설을 운영 중인 축산농가
- 「가축분뇨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 처리업체
 - * 지원가능 범위: 악취저감시설·장비, 액비저장조, 축분 펠릿·고형화 장비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에 따라 퇴비·액비 유통 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자
 - * 지원가능 범위: 부대기계·장비, 액비저장조(액비 유통 전문조직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 다만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부속유기질비료제조업체 등 가축분뇨처리업체의 경우 선정 가능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4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제외(법률 의무사항)
 -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시·군에서는 축산악취개선 효과 제고를 위하여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 시·군(환경·인허가부서 포함), 농·축협, 축산·환경단체, 주민대표, 사업대상 농가·시설,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알맞도록 구성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 제22조에 따른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악취저감시설을 지원받은 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
- 「축산법」 제41조의14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축산환경 교육 시스템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가축분뇨처리시설(개보수 포함):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액비저장시설, 건조장, 정화시설(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포함) 등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받은 자는 반드시 처리시설 밀폐 또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 자원화시설(퇴비사, 액비화시설 등)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악취저감 장비·시설: 「축산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의 설치·구비 기준”에 적합한 장비·시설(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 성분 변화장비, 그 밖에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
- *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 성분 변화장비”의 경우 전자동으로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의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비에 한해 지원
- 부대기계·장비 :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 기계·장비,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고액분리기, 축분 펠릿·고형화 장비, 휴대용 부숙도 측정 장비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로더는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 로더 구입기준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장비(로더 등)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 전업농 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4. 지원형태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 국비 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용자 50%, 자부담 10%
 - 용자조건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 * 국비 용자는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하며 대체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단, 자부담 대체의 경우 신용불량 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총 사업비 3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한하여 대체 가능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역(시·군·구)별 총사업비 한도액 : 30억원
-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한도액(사후관리 기간 내 시설·장비 지원액의 총합을 말함)
 - * 사업비가 개소 당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대 지	한 우	젓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농가	500	300		200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600	360		240	
농업법인	1,000	600		400	
재활용 신고 업체, 퇴·액비 전문유통조직 등				200	

- 기타 가축분뇨 처리 관련 기계·장비 한도액(1회 한도 금액을 말함)
 - 로더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수거·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 지원되는 시설·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평가” 또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공한 기술·업체별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6. 사업 시·군 선정방법

- 「축산법」 제43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악취민원현황, 과거 사업 집행실적(시·도 및 시·군), 과거 악취저감 노력(지역협의체 운영 등), 주요 정책 사업* 참여 비율, 시·도별 예산분배 등을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 * 신청농가 중 모돈이력제 등 주요 정책사업 참여농가 비율(해당 정책 관련 축종에 한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문가 평가 위원회 구성

1. 사업신청단계(직전년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2월)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시도별 사업설명회(사업 세부설명, 선정 및 평가 방법,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 실시(2월)

시·도(시·군)

- 시·군에서는 지역 현황분석과 농가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약취개선계획 제출(4월)
 - 지역 내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약취민원 발생현황, 과거 사업 실효행, 약취원인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지역협의체 운영방안 등 기획
 - 지원농가의 과거 지원내역(사후관리기간 명시), 과태료 부과 내역, 지원시설에 대한 인허가 가능 여부, 주요 정책 사업 참여 여부 등 확인
- 시·도에서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을 평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직전년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축산환경관리원의 심사·평가 업무 관리
- 축산환경관리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자 선정(6월)
 - 예산 국회 확정 이후 최종 사업자 선정 및 통보(12월)

축산환경관리원

-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시·군의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결과 및 검토의견(보완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세부계획 수립(직전년도)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관리원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을 시·도에 통보
- 시·도에서 제출한 보완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확정(~7월)
 - 예산 확정 후 추가사업대상 시·군 발생 시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추가 확정(12월)

축산환경관리원

- 전문가를 구성하여 보완사항이 반영된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실시
 - 타당성 검토 결과를 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시·도(시·군)

- 평가결과 보완사항을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도에서는 통보받은 보완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구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점검
-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

4. 사업시행(직전년도~당해년도)

시·도(시·군)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약칭 :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다만, 5천만원(사업비) 이하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i)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ii)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iii)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사업포기, 지원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시·군의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가능
 - 시·군의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 내의 사업계획(사업대상자, 지원내용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시·도의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간 지원금액 변경(A시·군의 예산 감-B시·군 예산 증 등) 등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계약체결 등)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선정취소 및 차순위 희망자로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마. 악취개선 지역협의체 운영

- 시·군에서는 축산악취개선 효과 제고를 위하여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성 현황 및 운영 결과를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
 - 협의체는 시·군(환경·인허가부서 포함), 농·축협, 축산·환경단체, 주민대표, 사업대상자,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알맞도록 구성*
- * 지역협의체의 구성은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 농가·시설, 인근 거주민 등 악취개선 실 수혜자 위주로 구성
- 시·도에서는 시·군별 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가축분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설 계>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 설계도”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 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같음)
-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 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 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착공·시공>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공사감리>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용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5.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용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잔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용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반납해야 하는 용자금은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조치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용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6.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 * 연말 시·도별 성과지표를 평가(차년도 사업자 선정시 결과 반영)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 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시·군·구 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반기별)
- 사업결과(정산 등) 내역은 사업완료 즉시 또는 매년 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농가는 사업완료 후 1년 이내에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 저탄소 축산물 인증 중 1개 이상을 받도록 지도·권고

축산환경관리원

-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사항 이행여부(시설설치, 예산집행 등)를 점검(해당 시·도 합동)하고, 미흡한 시·군·구에 대한 컨설팅 실시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속된 가축분뇨 퇴비(‘20.3.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부속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액비부속도 측정 결과에 준함.

《중요재산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 가축분뇨처리시설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 약취저감 장비·시설 ○ 부대 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치단체 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2에 따라 민간보조 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환수 조치를 하고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의 요청을 받아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공개하여야함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의해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지자체는 제출된 사업 실적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 서식은 별도 통보

2. 평가

《환 류》

- 실집행 등을 추후 평가에 반영

<참고>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4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24년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23. 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23. 4월)

2. 기타 사항(예고)

- 사업주관기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또는 가축분뇨 관련 분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신기술 인증 등)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계약 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22년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24년 예산배정 및 교부
 - ‘22년 실집행액 70% 미만, 전전년도 이전 미반납액이 있는 지자체는 ’24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참여시 예산배정을 제한할 수 있음

사업명	현행(2022)	변경(2023)	변경사유																
가축분뇨처리지원 (축산악취개선)	<p><사업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속유기질비료제조업체 등은 제외대상에서 제외 신설 	<p><지침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속유기질비료제조업체 등 가축분뇨처리업체의 경우 선정 가능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교육 이수(5시간) 의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구 명확화 지원사업 대상자 교육을 통한 자발적 개선 유도 																
	<p><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취저감시설·장비: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 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 시설,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신설 	<p><사업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취저감 장비·시설: 「축산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의 설치·구비 기준”에 적합한 장비·시설(기존 장비에 음용수 성분 변화 장비(전자동에 한함), 그 밖에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 환원 또는 분해하는 장비 또는 시설 등 추가) 부대기계·장비에 축분 펠릿 고형화 장비, 휴용부속도 측정 장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법 시행령」 개정(’22.6)에 따라 축산 법령에서 제시하는 악취저감시설 기준과 용어 및 지원내용 통일 부속도 활성화 및 축분퇴비 이용 확대를 위한 기계장비 추가 																
	<p><지원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의 자부담 대체 2천만원까지 가능 	<p><지원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의 자부담 대체 3천만원까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여건별 유연한 사업추진 유도 																
	<p><지원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법인 지원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돼지</th> <th>한우 젓소</th> <th>닭</th> </tr> </thead> <tbody> <tr> <td>농업법인</td> <td>2,000</td> <td>800</td> <td>1,0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 처리 기계·장비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업체별 제공한 정보 기준 지원 	구분	돼지	한우 젓소	닭	농업법인	2,000	800	1,000	<p><지원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법인 지원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돼지</th> <th>한우 젓소</th> <th>닭</th> </tr> </thead> <tbody> <tr> <td>농업법인</td> <td>1,000</td> <td>600</td> <td>5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되는 시설·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가축분뇨 처리기술평가 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제공하는 기술·업체별 정보 기준 지원 	구분	돼지	한우 젓소	닭	농업법인	1,000	600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법인 지원한도 현실화 정보제공처 다양화
구분	돼지	한우 젓소	닭																
농업법인	2,000	800	1,000																
구분	돼지	한우 젓소	닭																
농업법인	1,000	600	500																

사업명	현행 (2022)	변경 (2023)	변경사유
	<p><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민원현황, 지역의 약취개선 계획, 과거 사업 집행실적(사도 및 사·군), 과거 약취저감 노력(지역 협의체 운영 등) 평가 	<p><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개선계획을 축산환경 개선계획으로 대체하고, 주요정책 사업 참여 비율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계획 수립 의무화 사항을 반영하고, 모돈이력제 등 정책사업 참여 유도
	<p><정산 및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p><정산 및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깨끗한 축산농장, HACCP인증, 저탄소 축산물 인증 중 1개 이상 받도록 지도·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 인증제도 연계 추진 ('22년 지침 예고사항)
	<p><중요재산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저감 장비·시설 사후관리기간 7년 	<p><중요재산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저감 장비·시설 사후관리기간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조건 사용 고려 약취저감 장비·시설 사후관리 기간을 기계·장비와 통일

I

사업 개요

□ 목 적

-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고체연료·바이오차 등 처리방식 다각화를 통한 이용 촉진 도모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퇴비살포)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확보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퇴비살포비 지원
- (액비살포) 비료사용차방서를 발급받고 지정된 재활용신고 필자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 (살포 외) 가축분뇨 활용, 퇴·액비 농경지 살포 외 처리(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해외수출)에 대한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퇴비) 축산농가 20호 이상 확보하고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살포하는 퇴비유통전문조직
- (액비) 액비살포지 200ha 이상,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를 유통하는 액비유통전문조직
- (살포 외) 관련 생산시설, 인허가 등을 갖추고 수요처와 계약행위를 통한 유통·판매 실적(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살포)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A"등급 300천원/ha, "B"등급 200, "C"등급 100
- (살포 외) 유통·판매·자카소비 등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50천원/톤 지급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서기관 정창남 주무관 이성원	044-201-2357 044-201-2363

1. 목적 및 사업내용

가. 목적

-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작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구축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 축사깔짚 및 처리시설 내 가축분뇨의 주기적인 교반을 통한 부숙 퇴비 생산·환원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보통비료 대체 등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기 위해 퇴비·액비 이용 편의성 및 품질 제고 필요
- 토양 양분과잉 지역의 경우 가축분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등 처리 방식 다각화를 통해 비농업계 이용 촉진 필요
- 퇴비·액비의 비농업계 이용 및 해외수출을 촉진함으로써 토양 양분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여

나. 사업내용

- 퇴액비살포비
 - (퇴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확보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퇴비유통전문조직*에 퇴비 살포비 일부 지원
 - * 퇴비유통전문조직: 퇴비 교반·운반·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적정량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경작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등)
 - (액비) 액비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고 지정된 초지·농경지, 골프장(이하 “액비살포지”라 함)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액비유통전문조직*에 액비살포비 일부 지원
 - * 액비유통전문조직: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액비살포지를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작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액비살포지 관련)

○ 농경지 살포 외

-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50% 이상 활용)를 활용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생산·저장시설을 갖추고 이용계획(수출 포함) 수립 및 수요처를 확보한 자로 생산·유통실적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에 이용촉진비 일부 지원

2. 추진방향

□ 퇴·액비유통전문조직

< 공통 >

- 지역 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시·군별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계획 수립
 - 보통비료 대신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 권장
 - 축산·경작농가·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해 살포비 일부 지원
- 가축분뇨 퇴비·액비 품질향상 추진

- (퇴비유통전문조직) 교반·운반·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면적을 확보한 자로 축사·처리시설 내 깔짚, 가축분 교반·부숙 관리 및 퇴비 살포 대행
- (액비유통전문조직) 액비 유통활성화를 위한 우수 전문조직 육성

□ 퇴·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가축분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이용 및 퇴비·액비 등 해외수출 계획수립
- 가축분 살포 외 농업계·비농업계 이용 촉진을 위해 이용촉진비 일부 지원
- 수요처 확보를 통한 비농업계 이용 확대
- 가축분 살포 처리방식의 이용 편의성 및 품질 제고

3.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ha, 백만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사업량	40,000	41,000	49,000	52,000	52,000	60,470	65,235	65,680	77,440	79,340	79,340	99,400	103,600	92,000	46,000	32,000
사업비	합계	6,000	8,200	9,800	10,400	10,400	12,094	13,047	13,136	15,488	15,868	19,880	20,720	18,400	9,200	6,400
	국비	3,000	4,100	4,900	5,200	5,200	6,047	6,524.5	6,568	7,744	7,934	9,940	10,360	9,200	4,600	3,200
	지방비	3,000	4,100	4,900	5,200	5,200	6,047	6,524.5	6,568	7,744	7,934	9,940	10,360	9,200	4,600	3,200

4. '23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내용

(1) 사업물량 및 사업비

사업명		물 량	단 가	사업비(백만원)		
				합 계	국고보조	지방비
'23년 예산(안)	살포	22,000ha	20만원/ha	4,400	2,200	2,200
	살포 외	40,000톤	5만원/ton	2,000	1,000	1,000

* 시·군별 살포 가능면적 및 유통주체의 처리능력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별 살포물량(면적), 생산·유통물량(톤) 배정

(2) 지원단가

○ 퇴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과 재배작물 비료요구량 등을 감안하여 ha당 살포량(비료사용 처방)을 정하여 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은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 작물별 비료요구량 차이가 큰 경우와 일반적인 경우(액비기준: 36톤/ha) 지원단가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살포비 차등 지급

* "A"등급 300천원/ha, "B"등급 200천원/ha, "C"등급 100천원/ha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및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제외

※ 자원화조직체 평가결과 우수 유통전문조직은 개보수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농경지 살포 외

- 가축분 퇴비·액비 살포 외 생산·유통 실적에 따라 지급(50천원/톤)

* 최종 생산된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및 해외수출의 유통·판매실적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살포 외)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화조직체 운영 실태 점검대상(다만, 점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대상 제외)

(3) 지원대상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공통 》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퇴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 중 퇴비 또는 액비 살포 능력, 살포면적 확보, 농가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동 사업 참여 대상 유통전문조직을 사업 교부결정 전 지정
 - * 계약농가의 퇴비사(발효·저장시설) 규모 및 관리 능력, 비료처방서 발급실적 등을 고려한 연간 축산 농가 관리 및 부속 퇴비 생산 능력과 부속 퇴비 살포 면적을 확인하여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지정
 - * 액비 발효·저장시설 규모 및 관리 능력, 비료처방서 발급실적, 재활용신고필증 등을 고려하여 연간 가축분뇨처리 물량 및 살포면적을 확정하여 액비유통전문조직을 지정
 - * 퇴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개 이상 시·군에 퇴비 또는 액비를 살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살포비는 유통협의체 소속 지자체가 지원
 -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살포비 지원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의 규정 준수)

○ 퇴비유통전문조직

-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운영하는 퇴비유통협의체(붙임5)에 참여, 분기별 1회 이상 축산농가의 약취저감, 퇴비 생산·저장·품질 관리 관련 회의 참석, 경작농가 등 살포지에 부속 퇴비 살포

○ 액비유통전문조직

-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붙임13)에 참여,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재활용신고를 득한 액비살포지에 액비 살포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중 생산 능력, 수요처 확보, 농가 및 시설 관리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동 사업 참여 대상 생산시설을 사업 교부결정 전 지정
 - * 처리시설은 소재지 외의 시·군에 위치한 업체에 고체연료, 바이오차 또는 바이오플라스틱을 유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촉진비는 생산시설이 소재한 지자체가 지원
 -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이용촉진비 지원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규정 준수)
-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및 유통

(4) 지원요건

< 공 통 >

- 경작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해야함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및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은 전년도 자원화조직체 점검을 받아야 함(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 퇴·액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살포 외 처리시설 지정 후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실시
 -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점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대상 제외
- 농가관리, 살포농경지 및 살포량에 대하여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
- 퇴비, 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차 또는 바이오플라스틱 수거·살포·유통 차량, 살포 인력 및 장비를 보유(임대, 위탁 가능)해야 함
- 「축산법」 제41조의 14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축산환경 교육 시스템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교육 등 연간 5시간이상 이수해야 함(사업 전년 기준)

○ 퇴비유통전문조직

- 축산농가 20호(가축분뇨법상 신고규모 이상, 계약서 첨부) 이상 확보, 부속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만 적정량 살포(관리대장 작성, 붙임8)
 - * 시장·군수 등이 판단하여 지리적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산농가 20호 미만일지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내부 방침 문서 必)
 - * 부속도 검사 등 소요비용은 축산농가에 부담 가능
-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확보된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퇴비양 만큼 축사* 깔짚 및 퇴비의 교반 등 부속도 관리(계약서 첨부, 관리대장 작성, 붙임6, 7)
 - * 교반관리 대상 농가: 한육우 1,920㎡, 낙농 2,000㎡, 양돈 3,200㎡, 육계(토종닭 포함)·산란계 5,000㎡, 오리 7,000㎡ 이하 농가 중 퇴비사가 없는 농가는 제외

○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부속된 가축분뇨 액비를 유통해야 함
- 미부속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민원 방지를 위해 후속 발효 후 살포할 수 있는 액비 유통전문조직(또는 법인 대표) 명의의 액비저장조를 최소 1천톤 이상 보유해야 하며, 농가 소유의 액비저장조 1천톤 이상을 위탁 사용 계약한 경우도 인정(증빙자료 첨부)
-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하고,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을 것
 - *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이상 권장,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은 상기 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지리적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지원 가능(지자체장 내부 방침 문서 必)

-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 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를 부착해야 함
 -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공사 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 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참여 제한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위탁 계약 농가 전체가 비료생산업 등록)
 - 액비는 액비의 살포기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재활용신고 필지에 살포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관련 생산시설, 인허가 등을 갖추고 수요처와 계약행위를 통한 유통·판매 실적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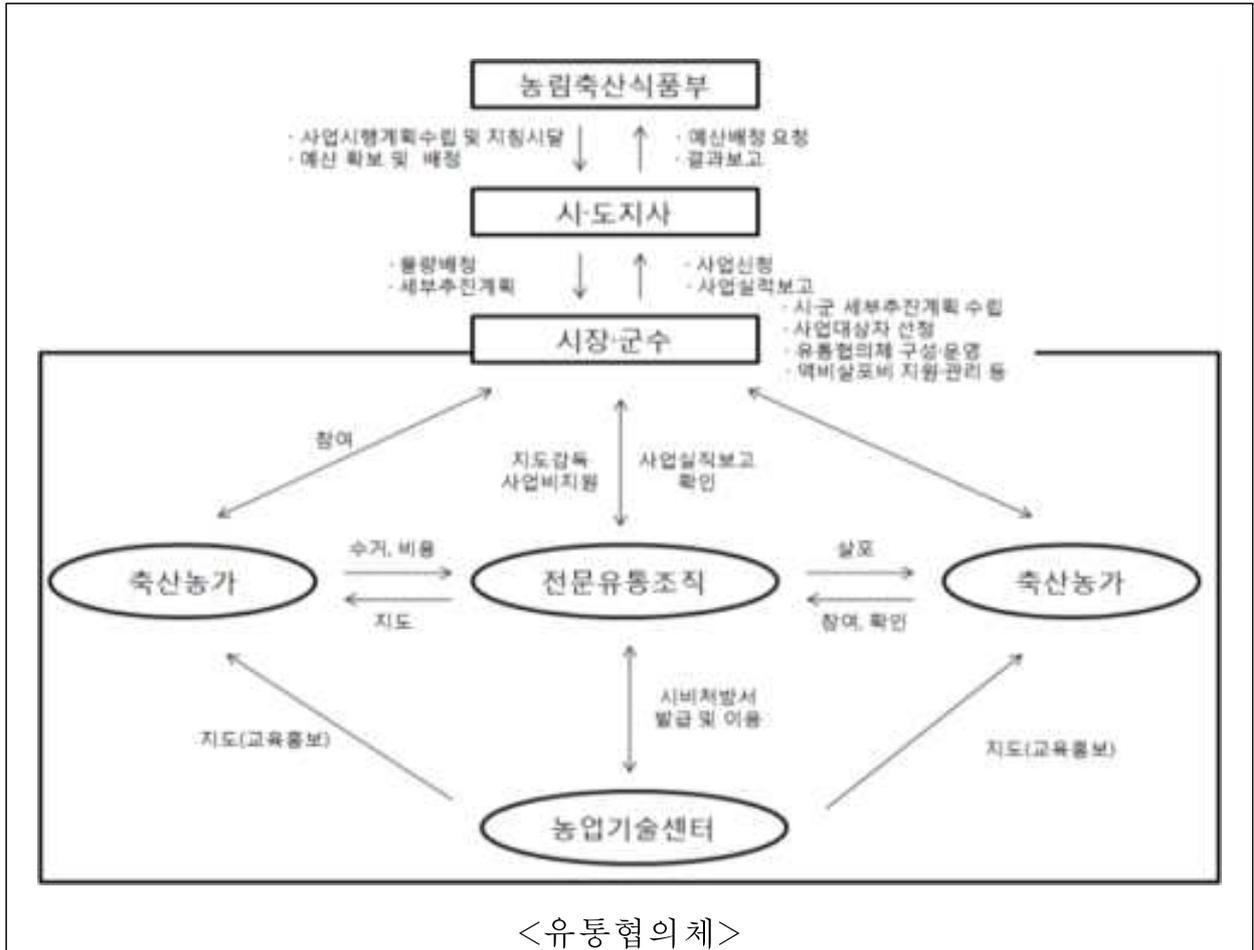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 신청단계 및 사업물량 배정

- 사업 주관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지원요건을 갖추고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붙임 1>,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붙임 9>,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지정신청서<붙임 14>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퇴액비살포비)
 - 1순위: (퇴비) 농·축협, (액비) 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업 등록 유통주체
 - 2순위: (퇴·액비) 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유통주체
 - 3순위: (퇴·액비) 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유통주체

○ 사업체제도(퇴·액비유통전문조직)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로 선정된 유통주체 또는 처리시설의 살포·유통 능력, 살포면적(수요처 확보), 참여 축산·경작농가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후 시·도지사에게 사업물량 배정 요청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지역 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계획
- 조사료생산기반조성 등 정책사업 대상지에 퇴비·액비 살포계획
- 사업시행 퇴비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 선정 결과 및 살포 능력 등
- 지역 내 퇴비 또는 액비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가축분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이용 및 퇴비·액비 등 해외수출 계획
- 퇴비·액비 살포 외 농업계 또는 비농업계 이용계획
- 사업시행 처리시설 지정 결과 및 유통·판매 능력 등

- 시·도지사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별 사업물량을 배정

2. 사업시행

가. 퇴·액비유통전문조직

< 공 통 >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주체가 퇴비 또는 액비 살포계획 등록 시 수시로 살포 현장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을 통하여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또는 액비 등 비료사용, 농작물 재배관리 등 교육 및 홍보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의 부속 퇴비 생산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등을 사용토록 권장
- 퇴·액비유통전문조직이 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퇴·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시 확정된 쿼터(처리물량 및 살포면적)를 초과한 경우 전문유통주체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자 선정 후 지원사업에 대한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퇴비유통전문조직

- 퇴비살포비는 부속도 기준을 준용하여 퇴비 살포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시군구청장은 유사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사업, 조사료생산사업)과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건으로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 후 살포비 지급

○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살포비는 액비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고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기지정 업체 중 가축분뇨 할당량(처리물량 및 살포면적)을 미확정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액비살포비 사업 대상자 선정전 연간 할당량을 확정하고, 확정량 변경 시 신청을 받아 확정량 변경 조치
- 전자인계관리시스템(환경부)과 AgriX 시스템(농림축산식품부)이 연계된 실적으로 액비살포비 지원

< 퇴비 살포 전 단계 >

- 퇴비 생산 및 살포 계획 수립

-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연간 부숙 퇴비 생산 및 살포 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까지 시·군에 제출
- * 퇴비 살포가 가능한 살포지 확보 현황 및 살포 계획, 이에 따른 퇴비 운반 및 살포 장비 및 인력 현황
- *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퇴비량에 대한 축산농가 계약 현황, 깔짚 및 퇴비 교반, 미생물 제제 사용 등 관리 계획과 장비·인력 현황

○ 퇴비 생산 관리

- 계약된 축산농가에 대한 깔짚 및 퇴비를 주기적(월 1회 이상)으로 교반, 미생물제제 살포 등 퇴비 부숙도 관리
- * 축사의 깔짚 및 퇴비사 퇴비 교반은 부숙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소 월 1회 이상 교반(관리대장 작성)하되 교반, 미생물제제 사용, 분뇨처리 비용은 농가부담이 원칙이나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자율 결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따라 축산농장 출입 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 실시

<퇴비 살포 후 단계>

- 경작농가와 계약된 필지(재활용신고 무관)에 한하여 부숙된 퇴비를 살포하고, 살포확인서 징구 및 퇴비 살포 후 7일 이내 살포 실적 입력
- 퇴비유통전문조직은 퇴비를 살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비 살포비 신청(붙임 4) 시 축산농가 퇴비 생산관리 내역, 살포 계약 및 확인 관련서류 등 제출
- * 퇴비를 살포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살포 동의를 받아야 함(토지소유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 살포동의 및 마을이장의 확인으로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퇴비 생산관리 내역, 살포확인서, 계약면적을 확인하고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근거로 퇴비 살포비 지원
- * 퇴비살포 실적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인정함

<액비 살포 전 단계>

○ 살포계획 수립

- 유통전문조직은 연간 액비유통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군·구에 제출
- * 동 계획에는 액비유통량, 성분분석결과, 살포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 가축분뇨 액비를 유통·살포하고자 하는 유통전문조직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살포하고자 하는 액비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 액비유통전문조직이 개별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경우, 축산농가 단위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 시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사용을 권장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살포를 원하는 액비살포지 대하여 재활용 신고를 득한 후 재활용 신고된 필지에 한하여 액비 살포

<액비 살포 단계>

- 유통전문조직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비료사용 처방서에 산정된 양을 살포
 - 액비를 살포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살포 동의를 받아야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살포지에 살포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대상자에 포함)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 위반 시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살포비는 환수하여야 함

<액비 살포 후 단계>

- 액비 살포 후 7일 이내 살포 실적 입력
 - 유통전문조직은 액비를 살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살포비 지원을 신청 (붙임 12)할 경우 액비 살포확인서를 함께 제출(비료사용 처방서는 흙토람시스템과 연계된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사용 처방서, 액비 살포확인서, 재활용신고 면적, 유사 지원사업 중보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확인하고 전자인계시스템과 연계된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 등록 실적을 근거로 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 * 액비살포 실적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인정함
- * 재활용 신고를 득한 필지가 아니거나, 비료사용 처방서 등 증빙 확인이 안되는 경우 살포비 지원 불가

나.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시설이 살포 외 유통계획 등록 시 수시로 현장 점검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이 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이용촉진비는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등 유통·판매 후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한 실적을 확인 및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유통·판매 전 단계 >

○ 생산 및 유통·판매 계획 수립

-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시설은 연간 생산 및 유통·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까지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해외수출 포함)
- * 수요처 확보 현황 및 유통·판매 계획, 이에 따른 장비 및 인력 현황 등

○ 생산 관리

-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
- * 바이오차의 경우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하에 열분해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 * 분뇨처리 비용은 농가부담이 원칙이나 생산시설에서 자율 결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따라 축산농장 출입 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 실시

< 유통·판매 후 단계 >

- 확보된 수요처에 우선적으로 유통·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유통·판매 관련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은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유통·판매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촉진비 신청 시 생산관리 내역, 유통·판매 계약 및 확인 관련 서류 등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관리 내역, 유통·판매확인서, 계약물량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근거로 하여 이용촉진비 지원
- * 유통·판매 실적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인정함

3. 사후관리

- 유통전문조직(퇴비·액비) 및 살포 외 처리시설(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해외수출)의 경우,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대상 의무화
- 운영실태점검, 시료채취 등 점검 거부 시, 당해 사업참여 취소 및 다음연도 사업참여 제한
- * 운영실태점검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유통전문조직 지정을 받은 경우 점검결과와 상관없이 “B”등급으로 하되, 점검점수가 “B”등급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으로 지정하여 살포비 등 지원
- *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살포 외)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대상 제외(단, 점검거부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
- 가축분뇨법 등 환경 관련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 관련 법률, 축산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대상,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처분결정일로부터 아래 기간동안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 개정 제재사항은 '21.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하며 '20.12.31.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 시 후순위 선정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1년
 -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 결정 미확정: 처분 결정 시까지 지원 보류
 -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부숙 가축분뇨 퇴비·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에 대한 반출 제한 위반 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액비 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하며,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의 판정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준함

4.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의해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지자체는 제출된 사업 실적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 서식은 별도 통보

IV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2)	변경(2023)	변경사유
가축분뇨처리지원 (가축분뇨이용촉진)	<지침운영> ○ 내역사업 명칭 변경 (퇴액비살포비지원)	<지침운영> ○ 내역사업 명칭 변경 (가축분뇨이용촉진)	○ 지원유형 확대(고체연료·바이오차 등)에 따른 명칭 변경
	<지원유형> ○ 퇴·액비 살포비 ○ (신설)	<지원유형> ○ 퇴·액비 살포비 ○ 퇴·액비 살포 외 -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해외수출	○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외 지원유형 신설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차등지급 대상 제외
	<지원금액> ○ (신설)	<지원금액> ○ 퇴비·액비 살포 외 - 50천원/톤 ※ 차등지급 대상 제외	
	<지원대상> ○ (신설)	<지원대상> ○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살포 외 전문유통전문조직 신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u>최소 계약량 5천톤 이상 확보</u> 하고 부속된 가축분뇨 액비를 유통해야 함 ○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하고,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을 것	<액비유통전문조직> ○ 최소 계약량 삭제 -저장조 1천톤이상 보유 조건 유지 ○ 지역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지자체장 내부 방침 문서 必)	○ 지원요건 완화 ○ 지역여건 반영
	<붙임12> ○ 액비살포 결과보고 시 비료사용처방서 첨부	<붙임12> ○ 비료사용처방서 제출 생략	○ 제출 서류 간소화 - 지자체 담당자 시스템 확인
	<붙임 14~16> ○ 신설	<붙임 14~16> ○ 서식 신설	○ 퇴액비 농경지 살포 외 관련서식 신설

가 사업 개요

□ 목적

- 축산악취개선 필요지역을 중심으로 ICT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환경·악취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악취저감 활동 지원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악취 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악취감지센서 및 축산환경의 센싱을 위한 기계·장비를 설치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악취개선 및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참여하거나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취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 지원유형

-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 및 관리 비용 지원(표준사업비 20백만원/개소)
-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시도별 악취측정 ICT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
-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적격여부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시군) 설치대상 농가·시설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 제출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서기관 이상준 주무관 황정훈	044-201-2362 044-201-2358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공동자원화시설 신규·개보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취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 축산악취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농가·시설에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우선 설치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공동자원화시설 신규·개보수 사업에 참여한 농가·시설 등에 설치되는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계·장비
 - 축산환경 정보(악취, 온도, 습도 등) 감지센서 및 측정정보의 모니터링·분석을 위한 통신장비 등을 갖춘 기계·장비
-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기계·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에서 제시하는 장비 및 통신규격을 따라야 하며, 측정되는 축산환경 정보를 “축산악취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함

4. 지원형태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 국비 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 주관 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한도액
 - 개소(축산농가·위탁처리시설)당 20백만원(2개 지점 이상 측정, 5년 사후 관리비용 포함)
 - * 사후관리 내용 : 악취측정 센서 및 기타소모성 부품(펌프, 호스 등) 장비 이전 시 발생비용(5회/5년), 출장비, 기타 장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자 선정 시 해당연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계획을 평가(직전년도 6월~12월)
-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시도별 악취측정 ICT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직전년도 12월)
 - 시도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규모는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 시군의 사업계획 중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자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

시·군

- 시·군에서는 관련 예산, 지역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계획, 지역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치대상 농가·시설별 세부 사업계획서(붙임1)를 작성하여 시·도 제출(~2월)
 - 광역축산악취개선 및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신규·개보수의 사후 관리 및 악취저감 효과 확인을 위해 사업 참여 농가·시설에 우선 설치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시도별 사업설명회(사업 세부설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 실시(직전년도 상반기)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설치대상 농가·시설의 세부 사업계획서 적격 여부를 설치대상 최종 선정 및 농식품부 제출(~2월)
 - ※ 시·도는 시·군별 설치대상 농가·시설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정

3. 사업시행(직전연도~당해연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해당 시·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사항을 안내한 후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검토하여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를 통지

축산환경관리원

-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 ICT장비 보급업체 정보, ‘장비설치 매뉴얼’을 제시하고, 필요시 기술 컨설팅 실시
- 시도로부터 제출된 설치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시스템 연계여부 및 분기별 운영성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시·군 또는 시·도)는 장비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에 따라 장비를 설치하게 하되, 사업대상자(시·군 또는 시·도)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장비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시·도에서는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시·군 또는 시·도)는 설치업체 선정 시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ICT기계·장비 업체정보를 참고하여, 축산악취관리시스템과(축산환경관리원) 데이터(측정값) 연계가 가능한 업체로 선정
 -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별도송부)를 참고하여 설치업체와 계약(지역특성을 고려한 일부사항 변경가능)
- 사업대상자(시·군 또는 시·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설치 매뉴얼’에 따라 장비를 설치할 위치를 선정한 후 [붙임2]의 “축산악취관리지원시스템 연계신청서”를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고, 코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장비 설치 추진
 - 사업대상자(시·군)는 장비 설치 및 시스템 연계 추진 결과를 [붙임3] 양식으로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설치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
-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다만, 5천만원(지자체 총사업비를 말함) 이하의 설치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시·군)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국고 보조금, 지방비 집행관 관련 된 법령 등을 확인하고 준수하여 집행

4. 사업변경절차

- 각 시군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도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요청하고, 시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후 농식품부에 보고
 - * 사업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필요 시 축산환경관리원에 컨설팅 요청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한도액을 매월 20일까지 시·군에게 제출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시·군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시·도 및 시·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 조치(승인 방법 4.사업변경 절차 참고)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6.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필요시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 점검 반 :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 및 설치 위치 적합성, 네트워크 연결 및 정보 송수신 상태
- * 연말 시·도별 성과지표를 평가(차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자 선정시 결과 반영)

시·도

-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시군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장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시·군

- 시·군은 장비를 설치한 농가·시설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4]양식으로 시도로 제출(정기점검은 장비설치업체 또는 관리업체 등에 위탁 가능)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계·장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이 장비는 정부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 구입한 기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악취관리대상 농가·시설 등에 대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활용 축산악취 관리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현황 점검

※ ICT 기계장비 활용 축산악취관리 세부계획은 별도 시달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
- 시·군은 설치된 ICT기계·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운영·관리
 -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관리대장(붙임 5)을 작성·관리하고, 문제발생(센서 오류 등) 시 설치 업체 등과 개선 조치하여 관련 내역 기재
- 시·군은 장비운영 현황을 상시 확인하기 위한 축산악취관리시스템 ID 신청(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악취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악취발생, 센서 에러 등 상황발생시 관련 정보를 농가 및 지자체에 제공(문자 등 발송)
 - * 지역별 전담공무원이 센서현황(등록센서, 설치센서, 연동, 단절 등), 악취발생 시설·농가 등에 대한 정보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시·도 및 시·군에서 제출된 점검 및 관리대장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분석·조치

《중요재산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구입 및 설치 완료 일부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장비는 계속 사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도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3, 제33조의2에 따라 보조 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조치를 하고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의 요청을 받아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공개하여야함

《제 재》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시·군이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의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지자체

- 시·군 및 시·도에서는 장비운영 후 측정되는 악취의 정확도 및 데이터 통신에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설치·납품업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
- 조치사항 및 정기 점검 미 이행 설치·납품 업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실적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검토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서식은 별도 통보

2. 악취관리 및 환류

《악취관리》

- 고농도 악취발생 농가 및 시설에 대한 관리대상 농가 지정 및 시설 점검
 - 점검대상: 고농도 악취물질 발생농가(별도 산정)
 - 점검기간: 2022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악취발생 현황, 악취관리 계획수립, 악취관리방법 등
 - 점검방법: ICT 장비운영 현황, ICT장비를 활용하여 수집된 악취데이터를 분석하여 악취발생 및 저감 현장 점검(3개월 단위 대상 지정 및 재지정, 월별 데이터 분석)

* 관리대상 선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악취저감 현장 점검: 축산환경관리원

《환 류》

- 악취관리대상 농가·시설 관리
 - 고농도 악취물질 발생 농가·시설 개선 사례 공유,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 사후관리 방안으로 활용
 - 악취물질 발생 지속 시 현장점검 강화
- 악취관리대상 농가·시설 관리

<기타사항(예고)>

- 점검 및 관리대상 등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 관련 서류 양식은 축산악취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선('23~) 이후 전산 시스템화 관리

사업명	현행(2022)	변경(2023)	변경사유
가축분뇨처리지원 (약취측정 ICT 기계·장비)	<p><사업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설치 및 시스템 연계 후 결과 제출 	<p><사업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설치위치 선정 후 연계신청서 제출 및 코드발급 등 확인 후 장비 설치 및 결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신청서 발급 시기 규정
	<p><이행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에서 설치 농가 시설 대상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설치업체 입회) 	<p><이행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에서 점검하되, 장비설치업체 또는 관리업체 등에 위탁 가능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기계장비 점검 특성 고려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업체 입회에서 위탁으로 변경
	<p><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p><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점검 및 관리대장 등 시스템 및 전산화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원 시스템 개선사항 반영
	<p><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치사항 미이행 업체 제재 	<p><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치사항 및 정기점검 미이행 업체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활한 점검 위한 제한규정 추가

37.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최아름	061-286-6550 061-286-6553

- 축산농장 및 자원화조직체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 축산 악취저감으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악취민원 방지

1. 추진방침

-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축산농장 및 자원화조직체 위주로 사업추진
- 축사, 퇴비사 등에 악취제거를 위한 악취저감 시스템 지원
- 악취 발생이 많은 개방형 퇴비사·액비저장조·공동자원화시설 등을 밀폐하여 악취 차단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10%)	시·군비(50%)	자부담(40%)	
50개소	1,500	150	750	600	

2) 지원품목 및 지원우선 순위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시설·업체(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등)

* 지원제외 : ①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② 가축분뇨법 위반 등 행정처분 농가('22년도 1년간)

③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2.12.31. 기준)

④ 과거 사업 선정되어 사후관리 중인 농가는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나, 다른 품목은 지원 가능

※ 동 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철저

○ 지원품목

① 악취저감 시스템 : 4종(악취저감 시스템, 악취저감 분무 시스템, 플라즈마 악취저감장치, BM활성수 생산·분무 시스템)

- BM활성수 생산·분무 시스템의 경우 1일 생산량 200ℓ 이상 시설에 대해 지원

* 사업대상자가 악취저감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선택, 1년 이상 A/S가 보장된 제품

②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 : 3개시설(퇴비사, 액비저장조,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의 경우 반드시 악취저감 시스템과 함께 설치 할 것

- 밀폐비용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퇴비사·액비저장조·공동자원화시설 밀폐비용 중 인건비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의 자가 시공으로 인한 인건비는 밀폐시설 설치비용의 1/6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사군 승인 사항)

○ 지원우선 순위

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축산관련시설·업체, 자원화조직체(환경부서 민원사실 확인농가 우선)

② 악취민원 발생농가(환경부서 민원사실 확인농가 우선지원)

* 시·군에서 축사환경, 민원, 사육규모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3) 지원한도

○ 농가·자원화조직체 : 농가별 총사업비 30백만원 이내

○ 축산관련시설·업체 : 농가별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3. 1. ~ 12.

3) 사업추진 절차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추진된 실적은 사업비에 포함 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5)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약취저감 시스템은 약취 제거를 위한 용도로 사용
- 약취저감제(미생물 등)를 사용할 경우 특허 등록 된 제품을 이용하고, 동 사업비로는 미생물 등 약취저감제 구입비로 지원 불가
- 약취저감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임
 - ※ 퇴비사 보수를 위한 일부구간 밀폐는 사업비 지원불가(벽면을 완전 밀폐하고 스키드로 더 등 장비가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지원)

3.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서식1) : 2023. 2. 28.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서식2) : 2023. 12. 30. 까지
 - ※ 가급적 사업대상자는 4월말까지 착공토록 하고, 미착공 등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시 대상자 변경 추진

38.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고영민	061-286-6550 061-286-6552

- 축사 내 악취저감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환경친화축산 구현
- 축사,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1. 추진방침

- 축산용 악취저감제를 공급하여 가축분뇨처리장, 축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켜 인근 마을주민 민원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공급
- 악취 제거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공급하여 축산악취 개선 효과 극대화
- 「축산환경·소독의 날」 미생물 살포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대비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584톤	7,920	990	3,894	3,036

○ 지원비율

- 한우·젓소 : 264톤 / 1,320백만원(도비 198^{15%}, 시·군비 462^{35%}, 자담 660^{50%})
- 돼 지 : 792톤 / 3,960백만원(도비 396^{10%}, 시·군비 1,980^{50%}, 자담 1,584^{40%})
- 닭·오리 : 528톤 / 2,640백만원(도비 396^{15%}, 시·군비 1,452^{55%}, 자담 792^{30%})

* 사업비 잔액 발생 시 축종 간 사업비 전배 가능(단, 축종별 지원 비율 준수)

2) 지원품목 및 지원우선 순위

- 대상축종 :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젓소, 돼지(양돈분뇨처리 관련 자원화조직체 포함), 닭, 오리 사육농가

* 지원제외 : ①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② 가축분뇨법 위반 등 행정처분 농가('22년도 1년간)

③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2.12.31. 기준)

○ 지원품목 : 축산용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또는 산업용 탈취제** 로써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

* 축산용 미생물제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 산업용 탈취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관련근거 : 도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을 통해 약취개선효과 검증이 완료된 제품

○ 축종별 공급제품

- 한우·젖소, 닭·오리 : 미생물제(축산 약취저감용 미생물제), 산업용 탈취제(축산 약취저감용 미생물제 또는 추출제)

· 용도 : 급이용 또는 축사·퇴비사 등 살포용(액상 또는 분말)

* 사료관리법 개정 이전에 조달청에 생균제로 등록된 제품도 공급 가능

- 돼지 : 미생물제(축산 약취저감용 미생물제 또는 분뇨 발효용, 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 용도 : 급이용 또는 돈사·농가의 액비저장조·액비순환시스템 살포용(액상 또는 분말)

* 사료관리법 개정 이전에 조달청에 생균제로 등록된 제품도 공급 가능

○ 제품 선정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축종별 사육환경 및 축종 특성에 맞게 개발된 제품이
공급되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제품 선정 가능)

○ 지원우선 순위

① 약취 민원 발생 농가(환경부서 민원 사실 확인)

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등

③ 중·소규모 축산농가(친환경, 동물복지, 녹색축산, HACCP 인증 우선)

3) 지원한도: 농가별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한우·젖소), 20백만원 이내(그 외 축종)

○ 환경부서 민원 발생 확인농가, 약취관리 필요농가는 시·군에서 검토·판단하여
지원한도의 50%까지 추가지원 가능

* 시·군에서 축사환경, 민원, 사육두수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제품 단가 :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별 품목당 kg(1)당 단가로 지원 비율에 의거 정산

* 조달청에 품목은 등록되어 있으나 제품 가격이 미등록된 경우 가격 등록 후 참여 가능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3. 1. ~ 12.

3) 사업추진 절차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을 균분하여 시기별로 공급하고 공급 할 때마다 농가에 인수증 발급 및 제품공급 사진과 함께 시·군에 제출
 - 공급업체는 제품 생산일로부터 신속히 농가에 공급하되, 미생물제의 경우는 효과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 80%이상 남은 제품을 시기별로 나누어 공급(추출제, 분말 제품의 경우도 위 기준 준수)
 - * (예시)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이 10개월일 때 8개월 이상 남은 제품 공급
 - 농가는 제품인수시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을 확인 후 인수증에 서명
 - 업체는 제품 생산일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반드시 스티커 부착)
-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3.1.1. 이후)에 대해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에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 시·군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업 추진 농가가 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서 2년간 축산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제외
- 시·군에서는 기간별로 제품이 공급되는지 반드시 인수증 확인 후 정산
 - * 유통기한 경과제품 공급, 미생물제 일괄 공급 등으로 악취제거 효과가 감소될 경우 시·군에서 판단하여 사업비 감액 조치
- (검증) 시·군에서는 사업비(보조금) 집행 전 반드시 1회 이상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 집행
 - 공급 업체에서 농가와 계약된 이외의 제품을 대체 공급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 엄금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에서는 사업 대상자가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금) 전액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만 입금했을 경우는

입금 증빙서류와 보조금 지불위임장을 제출 받아 보조금을 위임업체에게 집행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확인 될 경우 2년간 축산 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제외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에서 반환받고 사업물량이 감소된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시·군에서는 농가별 공급량을 감안하여 사업 완료 전에도 중간 정산 가능
 - 정산 시, 타 지역 제품·축종별 공급제품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시·군에서는 업체별 자부담금 입금내역 등을 검증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농가8업체) 확인 시, 도에 즉시 통보
- 사업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대상자가 희망하는 제품에 대해 자부담금을 입금받아 시·군에서 조달 구매 등으로 공급 할 수 있음
- 공급업체 제출서류(업체 → 시·군)
 - 사료제조업등록증·사료성분등록증 또는 환경표지인증서(필수 제출)
 - 축산 약취저감 검증 성적서(국가·지자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필수 제출)
 -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인수증, 공급 사진(필수 제출)
 - 주요 성분 및 함량, 용도, 사용방법,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3. 시·군 협조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 2023. 2. 28.까지
- 제품 구입내역 및 공급현황, 사업완료 정산결과 제출 : 2023. 12. 30. 까지
- * 가급적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확보 철저
- ※ 해당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지원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가능

4.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제품 공급 계획에 맞게 공급하는지 수시로 현장 확인
- * 사업 대상자가 공급업체에서 일부 사업비 반환 후 공급제품을 되돌려 주는 등의 사례 방지
- 시·군에서는 분기 1회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 보완 조치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 추진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39.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최아름	061-286-6550 061-286-6553

- 퇴비부숙 시설·장비 지원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환경친화축산 구현
- 발효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1. 사업개요

가. 추진방침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관리 및 자원화 지원
- 퇴비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예방 및 퇴비사·장비 부족 문제 해결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 악취방지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3. 1. ~ 12.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10%)	시·군비(30%)	자부담(60%)
65개소	1,950	195	585	1,170

라. 지원자격 및 필요요건

-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등록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농가*,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된 지렁이 사육농가

****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 축사 신고규모 이상농가(소 100㎡, 돼지 50㎡, 가금·기타 200㎡)

- ※ 지원제외 : ①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 ② 가축분뇨법 위반 등 행정처분 농가('22년도 1년간)
- ③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2.12.31. 기준)
- ④ 과거 사업을 추진하여 사후관리 기간 중인 농가

- 지원품목 : 퇴비사 증축,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 지원

*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 퇴비 교반장비(스키드로더, 굴삭기 등), 가축분뇨 펠렛화 장비

<퇴비사 증축>

- 해당 지역(부지)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증축 요건을 충족할 것
- 사업시행 전 건축 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등을 지체 없이 실시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부터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되, 보조금교부 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

- 퇴비사 바닥 또는 적재된 퇴비에 산소공급이 가능한 고정식·이동식 파이프라인 설치
- * 인건비는 설치비용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퇴비를 충분히 부숙 시킬 수 있는 시설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할 것

<퇴비교반 기계·장비, 가축분뇨 펠릿화 장비>

- 가축분뇨 자원화 등의 작업에 적합한 장비
-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에 대해 지원하며,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시·군에서 검토·판단하여 지원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지원된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
- 지원된 기계·장비는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등에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 중고장비를 구입할 경우, 농림사업 시행지침의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중고 농업기계 항목을 준용하여 시·군에서 검토·판단하여 지원
 - 중고장비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제조년으로부터 5년 이내의 장비구입
 - 장비 금액의 자부담금 입금을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
 - 장비 금액 과다 설정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아래 절차 확인
 1. 장비 구입 시 담당 직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장비 모델 및 가동여부 확인
 2. 적정가 확인하기 위해 유사한 중고제품의 견적서 2건 이상을 받아 비교
 3. 중고장비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할 것
 4. 중고장비 유통 업체를 통해 거래 (개인간 거래 불인정)
- * 중고 매매 시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별지2호 서식을 작성, 시·군에서 중고 거래 금액, 사후관리, 피해보상 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 ** 중고장비 가동 이상, 고장 책임 소지 등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마. 지원 우선순위

- 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② 친환경(유기·무항생제)·HACCP·녹색축산 인증농가
- ③ 중·소규모 축산농가

바. 지원한도

- 퇴비사 증축, 기계장비 구입, 퇴비사 내 통풍시설 : 농가별 총사업비 30백만원 이내

사.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분뇨 부숙을 위한 퇴비사 증축
- 퇴적된 퇴비를 교반하거나 부숙촉진에 효과가 있는 시설 및 기계·장비
- 가축분뇨를 압축·건조하여 자원화 등이 가능한 장비

3. 사업추진체계

가. 신청단계

도

-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

시·군

- 통보된 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 부터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나. 선정단계

시·군

- 접수된 사업 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타 사업과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 대상자로 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통지

※ 참고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 (물품 및 용역구매 등은 5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조달청 또는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정
- 기본규정 제57조제6항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사업수행자 선정을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은 예외)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다.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조치

※ 참고사항

- 기본규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 안됨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정산실시 및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실제 사업비 투입액으로 정산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라. 사후관리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이상 추진 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조치

사업대상자

- 사후관리기간 내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3. 2. 28. 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 : 2023. 12. 30. 까지
 - * 사업 추진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하절기(6월) 이전 사업 완료 독려

40.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최아름	061-286-6550 061-286-6553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축분 적정관리 필요
- 나. 가축분뇨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

2. 추진방침

- 가. 깨끗한 축산농장 등 인증농장에 지원하여 환경친화 축산농가 육성촉진
- 나. 퇴비 부숙도 관리가 어려운 중·소규모 축산농가 우선지원

3. 근거법령

- 가.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 나. 악취방지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II. 사업 추진계획

-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 2. 사업기간 : 2023. 1. ~ 12.
- 3.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10%)	시·군비(40%)	자부담(50%)
1,250호	2,500	250	1,000	1,250

4. 지원기준

- 가. 대 상 자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 나. 지원품목 :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및 왕겨 * 왕겨는 중·소규모(50두 미만) 농가에 한해 지원
- 다. 지원한도 : 농가 당 사업비 한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4백만원, 기타 농가 2백만원)
- 라. 지원 우선순위 : 1. 깨끗한 축산농장, 2. 중·소규모 농가(50마리 미만) * '23.1.1. 이력제 기준
3. 50두 이상 친환경 축산물 인증 등 지정 농가, 4. 50두 이상 농가

마. 지원제외

- ①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 ② 가축분뇨법 위반 등 행정처분 농가('22년도 1년간)
- ③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2.12.31. 기준)

5. 공급업체 선정 및 지원요건

가. 도내에서 생산한 톱밥, 왕겨에 대해 지원

나. 원목을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불가)

다.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생산된 톱밥(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불가)

* 원목(통나무)은 임산물로 허가 대상 제외, 그 외 뿌리·가지는 폐기물로 허가 대상

라. 톱밥, 왕겨의 수분량은 20%내외의 제품을 사용(권장 수분량 15%이하)

마. 운임비, 마대포대 환급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

III. 사업추진체계

1. 신청단계

도

-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

시·군

- 통보된 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 부터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 등을 시·군에 제출

2. 선정단계

시·군

- 접수된 사업 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 대상자로 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통지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3.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조치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정산실시 및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실제 사업비 투입액으로 정산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에서는 사업 대상자가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 전액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만 입금했을 경우는 입금 증빙서류와 보조금 지불위임장을 제출 받아 보조금을 위임업체에게 집행
 -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확인 될 경우 2년간 축산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제외
 -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에서 반환받고 사업물량이 감소된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4. 사후관리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조치

사업대상자

- 지원받은 제품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IV. 행정사항

- 가.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3. 2. 28. 까지
- 나.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 : 2023. 12. 30. 까지

41. 젓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고영민	061-286-6550 061-286-6552

가축 분뇨 발효촉진제를 지원하여 축분 적정관리 및 악취발생 예방을 통한 환경친화축산 육성

1. 추진방침

- 축사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축분뇨 발효 촉진제 지원
- 축산용 미생물제 공급으로 가축분뇨 발효를 촉진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 준수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150호	750	150	375	225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젓소 사육농가
 - * 지원제외 : ①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 ② 가축분뇨법 위반 등 행정처분 농가('22년도 1년간)
 - ③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2.12.31. 기준)
- 지원한도 : 농가별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 환경부서 민원 발생 확인농가, 악취관리 필요 농가는 시·군에서 검토·판단하여 지원 한도의 50%까지 추가 지원 가능
 - * 시·군에서 축사환경, 민원, 사육두수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제품 단가 :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별 품목당 kg(1)당 단가로 지원 비율에 의거 정산
 - * 조달청에 품목은 등록되어 있으나 제품 가격이 미등록된 경우 가격 등록 후 참여 가능
- 지원우선 순위
 - ① 악취 민원 발생 농가(환경부서 민원 사실 확인)
 - 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등
 - ③ 중·소규모 축산농가(친환경, 동물복지, 녹색축산, HACCP 인증 우선)

- 지원품목 : 축산용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로써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
 -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제품
 - 급이용 :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 관련근거 : 도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호]
 - 축사·퇴비사 등 살포용 :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주 효능으로 퇴비의 발효 또는 부숙 촉진이 목적인 제품
 - 용도 : 급이용 또는 축사·퇴비사 등 살포용(액상 또는 분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을 통해 퇴비 부숙(발효) 촉진 효능 검증이 완료된 제품
- 제품 선정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3. 1. ~ 12.

3) 사업추진 절차

-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 발급
 -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3.1.1. 이후)에 대해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에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3.30.)
-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3.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군→도, 서식 1) : 2023. 2. 28. 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시·군→도, 서식 2) : 2023. 12. 31. 까지

42.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 사업 (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고영민	061-286-6550 061-286-6552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는 액비유통전문조직체에 분뇨 수거·운반·살포 장비를 지원하여 양돈분뇨의 원활한 처리 도모

1. 추진방침

- 액비유통전문조직체의 부실운영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비 지원
- 액비유통전문조직체에 가축분뇨 처리용 장비를 지원하여 분뇨 적정처리 유도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균특)	시·군비	자부담
4개소	800	300	260	240

- 지원비율 : 도비 37.5%, 시·군비 32.5%, 자부담 30%
- 개소당 지원한도 : 200백만원(도비 75, 시군비 65, 자담 60)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지정하여 운영중인 액비유통전문조직체
 - 지원제외
 - 최근 3년이내('20~'22)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5년이내('18~'22)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조직체
 - 최근 3년이내('20~'22) 농식품부 우수 액비유통센터 사업 및 우리도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사업(균특)을 지원 받은 조직체
 - '22년 농식품부 자원화 조직체 평가 결과 B등급 이하 조직체
- 사업내용 : 액비유통전문조직의 시설 개보수 및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군

2) 사업기간 : 2023. 1. ~ 12.

3) 사업추진 체계

가) 신청단계

도

- 세부 공모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시·군에 통보

시·군

- 세부 공모 사업계획을 사업 희망자에게 홍보하고 신청서 접수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를 자체 평가 후 도에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나) 평가 및 선정단계

도

-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사업선정
 - 필요 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청

시·군

- 보완 요청된 사업계획서를 사업대상자로 제출받아 도에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후 교부결정 통지

사업대상자

- 보완 요청된 사업계획서를 보완 제출 및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다) 시행 및 정산단계

도

- 해당 시군에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시군별로 예산 배정 계획 통지

시·군

- 사업대상자에게 확정 통보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후 정산 결과를 도에 제출
 -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실제 사업비 투입액으로 정산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추진한 부분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사업계획에 따라 조속히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타 보조사업 보조금을 삭감

라) 사후관리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조치

3.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및 일정
 - 시·군 공모 신청 및 접수(시군당 1개소 신청) : '22. 10. 28. ~ 11. 3.
 - 신청 액비유통전문조직 평가(사업계획서 등) : '22. 12. 19. ~ 12. 23.
 -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2. 12. 30.까지

43. 양돈생산성 향상(항체 양성률 상승)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정상묵	061-286-6550 061-286-6551

- 질병으로 인한 폐사방지 등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 백신 접종 시 효과적인 항체 양성률 상승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1. 추진방침

- 환절기·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돼지 항체 양성률 상승 및 스트레스 완화 추진
- 폐사율 감소, 백신 효과 증대 등 양돈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증된 제품 공급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20,000kg	1,200	162	678	360

- 지원비율 : 도비 13.5%, 시·군비 56.5%, 자부담 30%

2)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 급여대상 : 모든 및 비육돈 등 백신 접종 전 두수
 - *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선정 제외
- 지원품목 : 돼지 항체 양성률 상승제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동물용 의약품으로 제품 선정
 - 시·군에서는 한돈협회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제품 선정 가능

3) 지원한도 : 농가별 총사업비 10백만원 이내로, 제품 1kg(ℓ)당 10천원 이내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3. 1. ~ 12.

3) 사업추진 절차

-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 발급
-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3.1.1. 이후)에 대해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에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시·군에서는 자부담의 출처(자기현금, 은행대출자금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3자 거래내역도 확인
 -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3.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 2023. 2. 28.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 : 2023. 12. 30. 까지

44. 돼지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정상묵	061-286-6550 061-286-6551

사료 효율 개선을 통해 돼지 출하 일령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료비 절감 및 연간 회전율을 증가시켜 양돈 농가 경쟁력 향상

1. 추진방침

- 돼지 증체율 향상 및 출하 일령 단축을 위해 양돈 배합 사료 첨가용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
-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등에 우선 지원하여 산지 돼지 가격 하락 시 경영 안정 도모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00호	1,000	150	450	4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45%, 자부담 40%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 제품 급여 대상 : 비육돈, 육성돈
 - *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선정 제외

3)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4) 지원 우선순위

- 깨끗한 축산농장,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인증 농가, HACCP 지정 농가

5) 지원내용

- 지원품목 : 돼지 사료 효율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선정(보조사료 등)
 - 안전성이 검증되고,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이 가능한 제품

- 돼지에 기호성이 좋고 스트레스가 없는 제품
- 과도한 지방 축적을 방지하고, 육질 등급 향상이 가능한 제품
- ※ 성장호르몬제, 유전자 재조합 등 합성호르몬제 제품 공급 불가(공급제품의 성분 중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취소 성분이 첨가된 제품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유의)
- 제품 선정 : 농가 희망 제품(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선정 가능)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3. 1. ~ 12.

3) 사업추진 절차

-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 발급
-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3.1.1. 이후)에 대해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에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3.30.)
 -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3. 행정사항

- 참여농가 사업 신청(서식 1) 및 대상자 확정 : 수시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군→도, 서식 2) : 2023. 2. 28. 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시·군→도, 서식 3) : 2023. 12. 31. 까지

45.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정상묵	061-286-6550 061-286-6551

비접촉식 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를 지원하여 양돈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노동시간 단축, 생산비 절감을 통한 양돈농가의 경쟁력 향상 도모

I. 추진방침

- 돼지와 접촉하지 않고, 근거리에서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제품 지원
- 양돈농가의 노동력 절감,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한 영상 장비 공급

II. 추진계획

1.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	80대	560	84	196	28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 *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선정 제외
- 사업내용 : 비접촉식 출하 돼지(규격돈)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
 - * 규격돈 : 115~120kg 무게의 도축 출하용으로 사육한 돼지
- 지원한도 : 7,000천원/대
 - ※ 체중측정 영상 장비가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하여야 함
- 제품규격
 - 태블릿 PC에 부착된 스캐너를 활용하여 돼지와 접촉하지 않고 스캔 후 체중을 측정 할 수 있는 장비
 - 체중측정 영상 장비는 돼지 체중 측정값의 95%이상 정확도를 제공하고, 스캔 후 10초 이내 체중값을 도출하여야 함

다.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②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또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 ③ 친환경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 농가
- ④ 사업 잔량이 발생할 경우 다른 규모 지원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3. 1. ~ 12.

다. 대상자 선정

- 시·군 축산분과위원회 심의 확정
 - 시·군 소관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의 심의거처 선정

라. 시·군 기본계획수립 및 교육 : 1~2월

- 시장, 군수는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급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장비공급 전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제품 공급업체로부터 교육 의무화
- 농가 사업비 배정 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농가 지원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배정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농가 지원 사업비에 포함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하여야 함

마. 제품 선정

- 양돈협회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농가가 원하는 제품 선정
- 비접촉식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로 특허를 받은 제품 선정 공급
- 전담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상시 서비스가 가능하며, A/S 1년이상 가능한 업체 선정

바.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시·군은 제출서류 검토 후,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농가 자부담금 집행여부 감독 철저

사.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시장·군수 책임 하에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목적에 위반시 자금 회수
 - 사후관리 :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 (농가 관리카드 작성비치).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환수(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 시장·군수는 동사업 완료 후 농가를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효과(노동력 절감, 측정 시간 단축, 출하 등급율 향상, 사료비 절감율 등) 조사 후 도에 보고

III.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3. 2. 28.까지
- 사업비 교부결정 및 송금 : 2023. 3. 31.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3. 12. 31.까지

46. 돼지 모든 분만을 향상 지원(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정상묵	061-286-6550 061-286-6551

모든 자동 자극기를 지원하여 양돈농가의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예방을 통한 양돈 경쟁력 향상 도모

I. 추진방침

- 양돈농가의 분만을 향상,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장비 공급
- 중·소규모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등 우선 지원

II. 추진계획

1.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돼지 모든 분만을 향상 지원	40	400	60	140	2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돼지 사육농가
 - *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모든 자동 자극기 지원
 - * 모든의 몸을 마사지하듯 자극해 줌으로써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심부주입기를 연결하여 자동으로 정액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장비
- 지원한도 : 10,000천원/ 대(세트)
 - * 1세트 : 모든자극기 3대, 3마력 컴프레서, 이동 보조 카트 1대, 기타부속품

다.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②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또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 ③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 농가
- ④ 사업 잔량이 발생할 경우 다른 규모 지원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3. 1. ~ 12.

다. 대상자 선정

- 시·군 축산분과위원회 심의 확정
 - 시·군 소관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의 심의거처 선정

라. 시·군 기본계획수립 및 교육 : 1~2월

- 시장, 군수는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급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장비공급 전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제품 공급업체로부터 교육 의무화
- 농가 사업비 배정 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농가 지원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배정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농가 지원 사업비에 포함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하여야 함

마. 제품 선정

- 양돈협회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농가가 원하는 제품 선정
- 전담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상시 서비스가 가능하며, A/S 1년이상 가능한 업체의 기기 선정

바.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시·군은 제출서류 검토 후,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농가 자부담금 집행여부 감독 철저

사.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시장·군수 책임하에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목적에 위반시 자금 회수
 - 사후관리 :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 (농가 관리카드 작성비치)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환수(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 시장·군수는 동사업 완료 후 농가를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효과(노동력 절감, 수정률 향상, 분만율 향상, 산자수 증가 등) 조사 후 도에 보고

III.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3. 2. 28.까지
- 사업비 교부결정 및 송금 : 2023. 3. 31.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3. 12. 31.까지

47.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정상묵	061-286-6550 061-286-6551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돼지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돼지 증체율 향상제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 도모

1. 추진방침

- 돼지 증체율 향상 및 출하 일령 단축을 위해 양돈 배합 사료 첨가용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
- 중·소규모 농가, 인증농가 등에 우선 지원하여 산지 돼지 가격 하락 시 경영 안정 도모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호)	사업비(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	160	800	120	360	32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45%, 자부담 40%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돼지 사육농가
 - 제품 급여 대상 : 비육돈, 육성돈
 - ※ 지원 제외 : ①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
②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농가('22.12.31.기준)

3)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4)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미지원 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 받은 중·소규모 농가(2,000마리 미만)
- 2순위)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미지원 농가 중 중·소규모 농가
- 3순위)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미지원 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4순위)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미지원 농가
- 5순위)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 받은 중·소규모 농가
- 후순위)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규모 농가

5) 지원내용

- 지원품목 : 돼지 사료 효율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제품 중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 관련 근거 : 도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
 - 안전성이 검증되고,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이 가능한 제품
 - 돼지에 기호성이 좋고 스트레스가 없으며, 면역 증강에 효과가 있는 제품
 - 과도한 지방 축적을 방지하고, 육질 등급 향상이 가능한 제품
 - 사료효율 개선, 증체율 향상을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단, 약취저감이 주된 목적인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성장호르몬제, 유전자 재조합 등 합성호르몬제 제품 공급 불가(공급제품의 성분 중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취소 성분이 첨가된 제품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유의)
- 제품 선정 : 농가 희망 제품(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선정 가능)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3. 1. ~ 12.

3) 사업추진 절차

-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 발급
-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3.1.1. 이후)에 대해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에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3.30.)
 -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3. 행정사항

- 참여농가 사업 신청(서식 1) 및 대상자 확정 : 수시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군→도, 서식 2) : 2023. 2. 28. 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시·군→도, 서식 3) : 2023. 12. 31. 까지

48.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정상묵	061-286-6550 061-286-6551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닭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 도모

1. 추진방침

- 육계 증체율 향상 및 출하 일령 단축, 산란계 사료 효율 향상을 위해 닭 배합 사료 첨가용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 중·소규모 농가, 인증농가 등에 우선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150호	750	150	375	225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육계(90호) 및 산란계(60호) 사육농가
 - * 지원제외 : ①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 ② 축산법 위반 등 행정처분 농가('22년도 1년간)
 - ③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2.12.31. 기준)
 - 지원한도 : 농가별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 지원우선 순위
 - ①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미 지원 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받은 중·소규모 농가(5만 수 미만)
 - ②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미 지원 중·소규모 농가(5만 수 미만)
 - ③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미 지원 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받은 농가
 - ④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미 지원 농가
 - ⑤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받은 중·소규모 농가(5만 수 미만)
- ※ 후순위 :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규모 농가

- 지원품목 : 닭 사료 효율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제품
 -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 관련근거 : 도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호]
 - 안전성이 검증되고,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이 가능한 제품
 - 닭에 기호성이 좋고 스트레스가 없으며 면역증강 효과가 있는 제품
 - 사료효율 개선, 증체율 향상을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단, 악취저감이 주된 목적인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성장호르몬제, 유전자 재조합 등 합성호르몬제 제품 공급 불가(공급제품의 성분 중 친환경 축산물 인증 취소 성분이 첨가된 제품이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유의)
- 제품선정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3. 1. ~ 12.

3) 사업추진 절차

-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 발급
-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3.1.1. 이후)에 대해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에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3.30.)
 -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3.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군→도, 서식 1) : 2023. 2. 28. 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시·군→도, 서식 2) : 2023. 12. 31. 까지

49.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정상묵	061-286-6550 061-286-6551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오리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오리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 도모

1. 추진방침

- 오리 증체율 향상 및 출하 일령 단축을 위해 오리 배합 사료 첨가용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 중·소규모 농가, 인증농가 등에 우선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150호	750	150	375	225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오리 사육농가

* 지원제외 : ①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② 축산법 위반 등 행정처분 농가('22년도 1년간)

③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2.12.31. 기준)

- 지원한도 : 농가별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 지원우선 순위

- ①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미 지원 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받은 중·소규모 농가(1.5만 수 미만)
- ②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미 지원 중·소규모 농가(1.5만 수 미만)
- ③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미 지원 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받은 농가
- ④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미 지원 농가
- ⑤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받은 중·소규모 농가(1.5만 수 미만)

※ 후순위 :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규모 농가

- 지원품목 : 오리 사료 효율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제품
 -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 관련근거 : 도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호]
 - 안전성이 검증되고,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이 가능한 제품
 - 오리에 기호성이 좋고 스트레스가 없으며 면역증강 효과가 있는 제품
 - 사료효율 개선, 증체율 향상을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단, 약취저감이 주된 목적인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성장호르몬제, 유전자 재조합 등 합성호르몬제 제품 공급 불가(공급제품의 성분 중 친환경 축산물 인증 취소 성분이 첨가된 제품이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유의)
- 제품선정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3. 1. ~ 12.

3) 사업추진 절차

-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 발급
-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3.1.1. 이후)에 대해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에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3.30.)
 -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3.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군→도, 서식 1) : 2023. 2. 28. 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시·군→도, 서식 2) : 2023. 12. 31. 까지

50.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최아름	061-286-6550 061-286-6553

- 가금류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칼슘 급여에 따른 골격 개선 및 면역 향상 등으로 질병발생 최소화

1. 추진방침

- 알껍데기 두께 향상, 파란을 감소, 가금류의 골절 예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금 사육농가에 칼슘첨가제 공급
- 생산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칼슘제품 공급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15%)	시·군비(65%)	자부담(20%)
900톤	1,080	162	702	216

2) 지원품목 및 지원우선 순위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가금류 사육농가
 - * 지원제외 : ①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 ② 축산법 위반 등 행정처분 농가('22년도 1년간)
 - ③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2.12.31. 기준)
- 지원품목 : 단미사료로 등록된 칼슘첨가제(패분)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우리 도에 공장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미사료로 등록된 패분 제조업체 제품
 -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조달청 등록, 관련 특허 소유 업체의 제품
 - 유기물을 완벽히 제거하는 세정공정과 위생적인 고온 살균 제조 공정이 확인된 업체 제품
- ※ 시·군에서는 제품 공급업체 자격요건 적합서류* 확인
 - * 단미사료 제조업체 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록 확인 가능한 서류, 관련 특허증 사본, 세정 공정서, 고온살균 공정서

○ 지원우선 순위

- 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된 산란계·종계·종오리 사육농가
- ② 친환경, 동물복지, 녹색축산, HACCP 인증농가
- ③ 중·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축사시설현대화사업 기준)

3) 지원한도 : 제품 1톤당 1,200천원 이내

* 농가별 사육규모를 감안하여 시·군별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3. 1. ~ 12.

3) 사업추진 절차

-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공급업체는 사업 대상자에게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 발급
-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3.1.1. 이후)에 대해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에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3.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 2023. 2. 28.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 : 2023. 12. 29. 까지

51. 곤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정상묵	061-286-6550 061-286-6551

- 곤충 수요처 발굴을 통한 곤충농가 소득증대 및 곤충산업 활성화
- 가금류 면역력 향상을 통한 폐사율 감소 및 생산성 향상

I. 추진방향

- 가금류 사육농가에 곤충 사료첨가제 공급으로 면역증강 등 생산성 향상 도모
 - 난각 두께 향상, 파란율 감소, 면역증강, 폐사율 감소 등

II. 추진계획

①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14%)	시·군비(56%)	자담(30%)
18,000kg	180	25.2	100.8	54

나.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가금류 사육농가(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 *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조건 : 보조 70%(도비 14%, 시·군비 56%) 자담 30%
- 지원한도 : 1kg당 10천원 이내
- 공급형태 및 포장 단위
 - 공급형태 : 건조유충 100% 분쇄 고품사료

②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3. 1. ~ 12.

*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9월말 까지 제품 공급 완료

다. 사업내용

- 곤충 유충을 가공하여 사료첨가제로 공급
 - 곤충의 종류(사료첨가제용) : 동애등에 등

라. 제품선정 및 공급계획

- 공급을 위한 제품 요건
 - 단미사료 제조업체 제품 (단미사료/동물성-곤충류 성분등록)
 - 국내산 곤충을 원료로 사용
 - 전라남도 사료제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공급업체 제출서류(업체 → 시·군)
 -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증 및 사료성분 등록증 사본
 - 주요 성분 및 함량, 용도, 사용방법, 효능, 사용 시 주의사항 등
 - 관련 특허증 사본

마. 제품 급이시기 및 방법

- 급이시기
 - 산란계 : 산란초기(18~27주령)부터 산란피크기(28~32주령)까지
 - 육계·오리 등 : 입추 후 10일령부터 급이(약 30~45일 급여)
- 급이방법 : 사료 급이량의 1~2% 혼합 급이
 - ※ 예시 : 1% 급이 시 사료 1톤에 건조유충 분쇄 고형물 10kg 혼합

바. 농가 공급방법

- 시·군에서 제품공급업체 및 대상농가 선정
- 사업 대상자 명단을 선정된 제품공급업체에 통보
- 공급업체는 제품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을 발급
- 공급 제품은 유효기간을 포장재에 표시하여 공급

사.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가별 자부담이 업체에 지급된 후 보조금 지원
- 시·군에서는 해당업체에서 축산농가에 제품을 공급하고 축산농가 확인 후 해당업체에 계좌입금 정산
- 시·군은 농가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위임할 경우 위임 가능

아. 기타사항

- 공급업체는 시·군과 협의하여 선정제품의 축종별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농가자부담 집행은 반드시 계좌이체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방지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3. 1. 1.이후)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를 소급 적용하여 집행

자. 효과분석

- 공급업체에서는 곤충 사료첨가제 급이 농가를 실험농가로 인정하여 분석하고 대조농가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 효과분석 내용 : 성장률, 산란율, 파란율, 폐사율, 난각두께 등
- 분석결과에 따라 사업의 확대 여부 검토

차. 행정사항

- 대상자 확정 통보(시·군 → 농가) : 2023. 2. 9.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시·군 → 도) : 2023. 2. 27.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제품설문조사(시·군 → 도) : 2023. 12. 31.

카. 사후관리

-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 확인(반기 1회 이상)
- 시·군에서는 사업 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③ 시·군 협조사항

-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확보 철저
- 해당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지원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실시

52.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정상묵	061-286-6550 061-286-6551

염소농가에 사양관리 기자재(미네랄 블록, 비타민제 등)를 공급하여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 및 질병 저항력 상승으로 생산성 향상

1. 추진방침

- 폭염 피해 최소화 및 염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품 공급
- 흑염소 자축 설사를 예방하여 폐사축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 공급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800호	400	80	320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80%

2) 지원품목 및 지원우선 순위

- 지원대상 : 염소 사육농가(사슴 사육농가 지원 가능)
- 지원품목 : 미네랄 블록, 필수 비타민(비타민C 등), 아미노산제, 비테인 등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와 흑염소 자축 설사 및 폐사 방지용 보조사료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축산농가가 원하는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조달청 등록제품 중 대사성의약품은 가능하나 살충제로 등록된 제품은 지원불가

○ 지원우선 순위

-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 ②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3) 지원한도 : 농가별 총사업비 500천원 이내

* 7월까지 공급 후 예산 잔여액 발생 시 사육규모에 맞게 농가당 탄력적으로 추가 지원 가능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3. 1. ~ 9.(7월 이전 공급, 사업비 정산 8월 말까지)

3) 사업추진 절차

-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공급업체는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 발급
 - 시·군에서는 제품이 적기(7월 이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협의
-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추진된 실적은 사업비에 포함 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시·군에서는 자부담의 출처(자기현금, 은행대출자금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3자 거래내역도 확인
-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3.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 2023. 2. 28.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 : 2023. 8. 31. 까지

53.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정상묵	061-286-6550 061-286-6551

- 녹용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여 사슴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도모
- 사슴 인공수정을 통한 우량 품종 개량으로 고품질의 녹용생산 및 생산비 절감

I 추진방향

- 사슴농가의 양록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양록산업 시장경쟁력 강화
- 번식용 암사슴 도태 방지로 번식기반 유지 및 새끼사슴 가격 안정

II 추진계획

1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100%)	도비(18%)	시군비(42%)	자담(40%)
사슴 인공수정 지원	500두	280,000	50,400	117,600	112,000

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엘크사슴 사육농가(가축사육업 등록자)
- 지원조건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사업내용 : 사슴인공수정료 지원(정액비, 시술비, 약품대)
- 지원한도 : 560천원/두
-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다.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
- ② 유기·무항생제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농장 지정농가
- ③ 한국사슴협회 전남도지회장 추천 받은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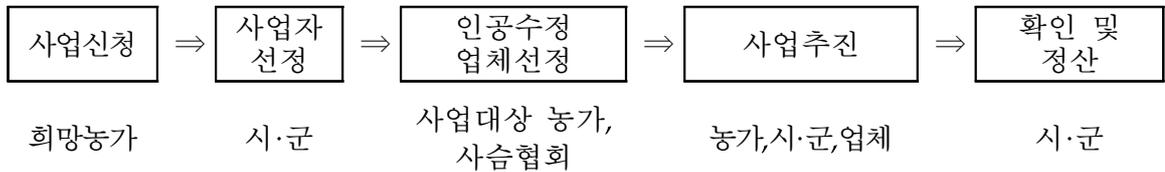
②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3. 1. ~ 12.

다. 사업 시행절차

- 사업신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슴 사육농가가 시·군(축산담당부서)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검토, 사업 신청자의 사업장 방문, 사슴협회의 자문을 통해 해당 시·군에서 선정
- 인공수정업체는 사업대상농가와 사슴협회가 협의회를 거쳐 선정하여 시·군에 통보하고, 농가·시군·업체가 공동계약 후 추진



라. 사업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통장사본), 인공수정사진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2개월 이내)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 사업 추진실적은 매년 1.1일부터 12. 31일까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전 추진한 실적도 반영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
- 도에서는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의 정산보고 검토 후 승인

III 행정사항

- 지원대상자 결과 선정보고 : '23. 2. 28.
- 사업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 '24. 1. 15.

54.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정상묵	061-286-6550 061-286-6551

1. 목 적

-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 지원으로 승마단 운영 활성화
- 미래 승마인 육성으로 승마산업 저변확대 및 승마선수 육성

2. 추진방침

- 농식품부(한국마사회)에서 지원하여 창단한 유소년 승마단에 운영비 지원
- 시·군에서 지원계획을 승인한 내역에 대해서만 운영비 지원
- 시·군, 학교, 승마단, 이용 승마장과 협의하여 사업추진

3.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80백만원(도비 24, 시·군비 56)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내용 : 실제 소요 비용으로 정산, 지원한도액 초과는 자부담 처리

구 분	세부 지원내용	비고
물품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장구 : 말안장, 헬멧, 프로텍터, 승마장갑 ■ 승마용품 : 승마복 상·하의, (반)부츠, 썸 등 ■ 유니폼 : 훈련용 및 대회용 단체 유니폼 	총 사업비의 20% 이내
운영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소년 승마단 교육비(강습비) ■ 대회참가비용 : 선수등록비, 마필 수송비, 대회참가비, 체재비 등 ■ 기승자 보험 가입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용 ■ 말 관리비(말 보험료 포함, 사료비는 총사업비의 25%이내 지원 가능)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지원내용 외 보조금 지원 제외

4.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농식품부(한국마사회)에서 지원하여 창단된 유소년 승마단 (시·군, 승마 시설 운영자,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승마단)

- 승마시설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운영자에 한함
- 유소년 승마단이 이용하는 승마장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의 승마체험 시설 구비 조건을 준수한 승마장에 한함
 - 책임 또는 손해보험 가입, 안전요원 보유, 포니 등 보유, 안전장구 구비, 기타 편의시설 보유 등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지원자격 : 농식품부의 유소년 승마단 운영기간이 창단 후 1년이상 경과하고, 승마대회 출전 등 유소년 승마단의 활동 실적이 있는 승마단
- 지원한도 : 20백만원 이내/ 개소당
- 지원제외
 - 승마단원 수 5명 이하인 경우
 - 2022년 승마대회 참가 실적이 없는 경우
 - * 단, 2022년까지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에만 한함
 - 유소년 승마단 승마코치의 말 관련 자격증 미보유 경우
 - 보조금 관리법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추진체계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 절차
 - (유소년 승마단) : 사업 참여희망 유소년 승마단에서는 2023년도 사업계획서 및 2021년도 추진실적 작성 후, 해당 시·군에 사업 신청
 - (시·군) : 사업신청 접수한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을 자체 검토 후 도에 사업 신청
 - (도) : 사업신청 접수분에 한해 평가 및 종합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 : 평가항목별 평가 후 선정(사업대상자 선정계획 별도 통보)
 - 평가기준 : 농식품부 소관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 지침 중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국비)의 선정 평가표 등에 준하여 평가 후 상위 순위 우선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배정
 - 평가항목 : 승마코치 말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승마대회 참가 실적, 포니 보유 현황, 현재 승마단원 수,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실적, 승마시설 유형(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배점), 승마대회 입상 실적, 승마단 운영 충실도 등
- ※ 인정 자격증 내역
 -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자격증
 - : 말산업 육성법상의 재활승마지도사·말 조련사 및 말산업육성법에 의거한 전담기관(한국마사회) 발행 승마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의한 자격증
 - : 전문스포츠지도자(승마)·생활체육지도자(승마)
- ※ 유소년 승마단 운영실적 인정 기준
 - : 승마대회 참가, 입상실적, 선수등록 등 최근 1년치만 인정

다.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안장은 구입일로부터 5년간 관리
 -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 적정 인력(관련 자격증 보유 승마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및 승마단 규모(6명 이상) 유지·운영 단, 5명 이하 승마단은 지원 제외
- 사업추진 실태 수시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 지원 목적에 위반한 경우 지체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라.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 신청 ※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실제 소요 비용으로 보조금 정산, 지원한도액 초과는 자부담 처리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방지 및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3.1.1. 이후)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를 소급 적용하여 집행
 -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름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정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 ① 인건비 성질의 경비
 - ②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

마. 제재

- 보조금을 지원내용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위반사항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즉시 보조금 회수조치 및 차년도 지원 제외

바. 보고사항

- 사업계획 신청·접수(운영주체 → 시·군 → 도) : 전년도
- 사업계획 통보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 '23. 2.
- 사업비 송금(도 → 시·군) : '23. 3.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정산 : '23. 3. ~ 12.
- 사업완료 보고(운영주체→시·군→도) : '23. 12.

56.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정상목	061-286-6550 061-286-6551

-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해 살충제 살포 시 축산물에 농약 잔류 우려
- 친환경 천적 곤충 이용 파리 구제를 통한 깨끗한 가축 사육환경을 조성

I. 추진방향

- 천적인 기생벌 삽입제품 공급을 통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깨끗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II. 추진계획

1]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사·군비(65%)	자담(20%)
3,780set	453,600	68,040	294,840	90,720

나. 지원대상

- 대상축종 : 한·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슴, 흑염소, 말
- 지급기준 : 한·육우·젓소 50두, 돼지 1,000두, 닭 20천수(산란 10천수), 오리 10천수당 1set공급

※ 메추리는 닭 지급기준 적용, 사슴, 흑염소, 말은 한육우 지급기준 적용

- 지원단가 : 120천원/set * 지원한도 : 1,800천원/15set/호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지급방법

- 농가별 균등 배분을 지양하고 축종별 지급기준에 의거 농가당 최대 7개월 사용분을 매월 공급 * 파리가 번성하는 4월 초~10월 말 집중 지원
- 대상자 선정 및 공급 시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해충이 많은 지역 및 농가에 집중 공급 권장

- 해충방제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을 인근 농장, 민원 발생 농장 우선 지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 최대 7개월분 지원
(특히, 사업 목적과 다른 파리곤충이 제품을 공급 않도록 하는 등 민원 발생 없도록 조치)

다.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
- ②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가
- ③ 기타 농가

라. 지원조건 : 보조 80%(도비 15%, 시·군비 65%), 자담 20%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3. 1. ~ 12.

다. 사업내용

- 해충(파리) 구제를 위한 친환경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 삽입제품을 공급(최대 15set/7개월 공급) * 축분 집하장, 사료급여 시설주변, 축사주변 등에 설치
※ 1set : 천적기생벌데기 10만개 이상(1개월 사용량)

라. 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신청(희망자→시·군) → 사업계획 검토(농장 타당성조사, 현지심사) 및 대상자 확정 보고(시·군→도)

마. 시·군 기본계획수립 및 교육 : 1~2월

- 시장, 군수는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급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 사용방법, 사용시기,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사업시행 전 공급업체로부터 교육 실시

바. 공급방법

- 제품은 녹색기술 인증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녹색기술제품)을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정부합동평가 지표(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실적알림 및 구매 협조 요청 (도 중소벤처기업과-14395(2020.12.16.)호)

- 대상자 선정 및 공급을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파리가 많은 지역에 집중 공급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의 번식기간이 2~3주임을 감안, 적정 시기에 계속 공급되도록 하여 구제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자체 공급계획을 수립
 - 농가와 일정 상의 후 파리 구제효과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파리 발생 시기에 늦지 않도록 적기에 공급
 - 전라남도 제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 관련근거: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전라남도조례 제4862호, 2019.6.11. 제정)

사. 보조금 지급

- 4월 조기 공급을 위해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중 시·군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제품을 구입한 농가에 대해 보조금 소급 집행 가능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 중, 사업 종료 후 농장 현장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업비 지급
 - 제품 공급업체의 축산농가에 제품 공급 상황 및 선정된 농가에서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확인 후, 공급 업체에 보조금 지급(사업 대상 농가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 징구)
- ※ 반드시 농가 자부담 납부 사항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아. 사후관리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제품을 방치할 경우 지원 중단

III. 행정사항

- 공급된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의 파리 구제 상태를 매월 10월까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3. 2. 28.
 - ※ 파리발생 적정시기에 천적기생벌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제품이 공급되는 시기에 사업 추진실태 및 현장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사업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 2024. 1. 15.

57.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최아름	061-286-6550 061-286-6553

- 가축경영과 노동력의 고령화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I. 추진방침

- 중소농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가축사육업에 필요한 맞춤형 축산장비 등을 지원하여 중소농가의 축산경쟁력 강화
- 사업목적에 부합한 우수 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지도

II.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호,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18%)	시·군비(42%)	자담(40%)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80	400,000	72,000	168,000	160,000

- 지원조건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 중 사육규모 기준*에 맞는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염소, 사슴 사육농가

* 사육규모 기준 : 축사면적 한육우 1,728㎡, 낙농 1,800㎡, 양돈 2,880㎡, 육계·산란계 4,500㎡, 육용오리 6,300㎡, 종오리 4,496㎡, 염소 1,337㎡ 이하 농가

- 단, 사슴농가는 인증유무와 상관없이 지원가능(도에서 수요 감안 일괄배정)
- (우선지원) 동일 축종의 경우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 우선, 고령·영세·여성 축산인 우선
- (지원제외)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축산법시행령 제14조의2 별표)을 초과한 농가

- 사업내용 : 가축사육업에 필요한 노동력 절감용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 친환경 농업(축산)용 전동운반장비(소형전기운반차), 사료급이기, 소형관리기, 환풍팬, 스프링클러, 기타 노동력 절감용 축산장비 등
 - * 친환경 농업(축산)용 소형전기운반차의 경우 도내 업체로 제한
 - ※ 지원 제외 : 소독 및 방역시설
 - ※ 사슴농가 : 보정시설·장비, 진공포장기, 녹용보관 냉동고, 녹용절단기 등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농가당 사업비 한도 5,000천원
 - ※ 지원한도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 비용으로 정산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3. 1. ~ 12.

다. 시·군 기본계획수립 및 교육 : 1~2월

- 시장, 군수는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급 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용방법, 사용시기,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사업시행 전에 공급업체로부터 교육 의무화(단, 부부가 함께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부 공동 참여 권고)

라. 맞춤형 축산장비 선정

- 노동력 절감 목적으로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업에 필요한 장비를 포괄적 지원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다른 축산 정책사업으로 지원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제품 선정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축종별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제품 선정 가능. 이 경우 회원농가가 참여한 회의록 등 증빙자료 제출)

마. 사업비 정산

- 시·군은 보조금 집행 시 농가 자부담이 공급업체에 입금(농가에서 업체와의 통장 간 계좌이체 사본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 첨부/전용 통장개설) 계약서와 검수증 기기 설치여부를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제품가격은 견적서, 납품명세서, 업체별 공급가격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적정가격에 정산
- 농가 자부담금 집행여부 감독 철저
- 사업완료시 농가는 사진,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완료보고서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완료보고서를 검토한 후 도에 정산보고 제출

바. 사후관리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농가 관리카드 작성비치)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후 농가를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평가(효과 및 생산성 향상 등) 실시 후 도 보고

3.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3. 3. 10.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4. 1. 15.

Ⅲ. 비예산사업 추진계획

1. 축산분야 재해예방 대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태원 담당자 오재철	061-286-6520 061-286-6524

폭염, 폭설, 태풍,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신속한 상황 관리와 대응체계 구축으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및 경영 안정 도모

1. 추진방침

- 재해 취약요인의 사전 파악, 대비로 재난 예방에 주력
- 비상 대응체계 사전 구축으로 한 발 앞선 상황 대처
- 시설기준 적정 여부, 규격품 사용, 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
- 현장중심 행정지도 활동 강화로 자율 방재체계 전환 유도

2. 추진계획

- 재해 대책기간
 - 여름철 : 2023. 6. 15. ~ 2023. 9. 30.
 - 겨울철 : 2023. 11. 16. ~ 2024. 3. 15.
-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 구축
 - 사전 비상근무체계 정비 및 기상(예비) 특보에 따라 상황 유지
 - 지역별 기상 특보에 대한 농가 단위 전파체계 구축
 - 기상특보 발령 후 비상근무 및 책임담당제 시행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농축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노후·간이 축사시설에 대한 전기, 건축물 등 안전검사 실시

3. 행정사항

- 관계 공무원 및 관련기관 상황근무 체계 유지
 - 시·군, 읍면동 등 기상특보에 따른 근무조 정비 및 근무 실시
 - 축산농가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등 기상예보 제공
- 축사 일제 점검 결과에 따른 불량 축사 정비 독려 및 홍보
- 피해 발생시 상황 파악 및 현장 응급 조치
- 유선방송, 신문 등 언론 매체, 홈페이지, 반회보 활용한 홍보

①

폭염시 농업인 대응요령

■ 사전 준비사항은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하세요.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폭염주의보 발령시

【농작업 현장에서는】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시에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 농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 작업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하우스·축사에서는】

-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하세요.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세요.
- 돈사, 계사 천장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방지하세요.
- 하우스 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하세요.

■ 폭염경보 발령시

【농작업 현장에서는】

-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성인병환자 등은 야외작업이나 시설하우스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시에는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2시~오후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하우스 · 축사에서서는】

- 가축에게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이세요.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공급하지 마세요.
- 가축 폐사시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르세요.
- 축사 등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하세요
- 전기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시는 전기 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② 폭염에 따른 고온기 가축 및 축사관리 주요내용

<p>한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온이 26℃이상 올라가면 사료 섭취량 감소로 생산성이 떨어진다. ☑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신선한 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 ☑ 우사에 선풍기, 송풍기 등을 설치하여 체감온도를 낮추어 준다.
<p>젖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온이 27℃이상 올라가면 사료 섭취량 감소로 산유량이 감소한다. ☑ 사료 내 에너지를 높여지기 위해 지방(7%), 단백질(40%)사료를 추가해준다. ☑ 축사통풍을 자유롭게 하고, 운동장 복사열차단을 위한 그늘막을 설치하고 안개분무등을 통해 외기온도를 떨어트린다.
<p>돼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온스트레스는 사료 섭취량을 감소시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 사료 섭취량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지방)첨가 및 급여 횟수를 늘려준다. ☑ 환기팬을 이용하여 돈사 내부공기흐름을 빠르게 하여 온도를 낮추어 준다.
<p>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땀샘이 발달되지 않아 체온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온에 취약하다. ☑ 사료 섭취량 증대를 위해 새벽과 저녁으로 사료급여 시간대를 조정한다. ☑ 쿨링패드와 터널식 환기를 동시에 실시하면 고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1. 축산

□ 사전준비

- 축사 지붕, 벽, 축대 점검 및 보수, 침수 예상지역 축사주변 배수로 정비 및 수방자재 비치, 축사 내 전기 누전 예방
- 축사위 태양광 시설 등 부속시설 점검 및 안전사고 발생시 한국에너지공단 신고
- 축사 내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바람이나 비로 인한 누전 등사전 예방으로 축사 화재 예방
- 초지나 사료작물 포장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 방지
- 사료는 비가 맞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변질을 방지
- 폭우 및 침수로 인한 사료 및 음수 오염 예방, 사료작물 재배포장 배수로 정비
- 가축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포함) 등 중점관리 사항
 - 가축분뇨 무단방류 금지, 축사(깔짚 우사 등)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퇴비사, 액비저장조)에 우수 유입방지, 야적 퇴비에 비닐 덮기 또는 퇴비사, 창고 등으로 이동, 배수로 정비, 배수펌프 준비

□ 사후관리

- 축사는 충분한 환기 및 수시로 분뇨를 제거하여 유해가스 발생 억제
- 축사 침수 시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
- 피해발생 시 시설 응급복구 및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하여 고창증 예방
- 매몰지 비닐도포 및 배수로 정비, 침출수 유출시 응급조치 및 신속 보고
- 피해농가 폐사축 처리 및 시설 응급복구 지원
- 개별 분뇨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 축산분뇨 유출방지, 퇴비장의 배수구, 가축 매몰지 등 점검
- 피해동물의 응급 구호 및 보호시설 파악, 보호 조치 등

2. 농기계

□ 사전준비

-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 오물과 습기를 제거한 후 기름칠하여 통풍이 잘 되고 비가 맞지 않는 곳에 덮개를 씌워 보관
- 공기 청정기, 연료·오일여과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각종 클러치나 벨트는 풀림 상태로 조작

□ 사후관리

-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물로 깨끗이 닦은 후 습기를 제거한 다음 기름칠하고 수리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다음 사용
- 기화기, 공기청정기, 연료여과기 및 연료통 등은 습기가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거나 새 것으로 교환

3. 농업시설물

□ 사전준비

- 비닐하우스, 축사 등 풍수해 위험지구 내 시설물 관리 및 보수
- 수방자재 장비 미리 확보 및 비축관리
- 강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끈으로 튼튼히 고정하여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켜 피해예방
- 비닐 교체예정인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하여 피해 예방

□ 사후관리

- 복구인력 및 장비동원 피해 시설물 응급복구 실시
- 내재해형 규격설계에 의한 시설물 설치 등 피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4.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준수

-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 준비하고, 고압전선(가로등, 신호등) 근처 접근 금지
- 천둥·번개·홍수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
- 집 주변의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
-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

1. 예상되는 문제점

- 쌓인 눈에 의한 시설하우스 골조 파손 및 붕괴
 - 간이·노후·구조 취약으로 적설 피해 발생
- 녹은 눈 유입에 의한 습해, 시설 파손으로 가축 저온장해

2. 사전대책

- 간이축사(육계사, 우사, 돈사) 피해대책 강구
 - 눈이 잘 흘러내리도록 차광망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 피복
 - 노후한 시설은 보강지주 설치
 - 파이프가 부식된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 보조기둥을 추가 설치
 - 보온덮개나 차광망이 썩어져 있는 시설에서는 일반 비닐하우스에서보다 보강지주를 더 좁은 간격으로 설치
- 폭설에 따른 교통 차단 등을 대비해 1주일 분의 사료 확보

3. 사후대책

- 안전에 유의하며 축사 지붕에 쌓인 눈의 신속한 제설 작업 실시
- 축사가 붕괴된 경우,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미지근한 물을 공급하여 저온에 의한 피해발생 예방
- 주변 배수로 정비 및 환기 실시, 축사 질병 예방 대책 추진
 - 눈이 녹아서 찬물이 축사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정비
 - 눈이 오면 축사 내 습도가 높아져 병 발생이 많아지게 되므로 환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소독 실시

2. 축산 시책 평가(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태원 담당자 임경순	061-286-6520 061-286-6521

- 축산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호응도를 높여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축산발전 도모

1. 추진방침

- 축산사업별 추진실적 자료를 근거로 우수 시·군 선발 포상
- 축산시책 추진에 적극 호응하여 축산발전에 기여한 축산관련 종사자를 발굴하여 표창

2. 2023년 추진계획

- 시·군 시상

구 분	시상점수			시상금(천원)		표창점수
	계	A그룹	B그룹	점당시상금	총 시상금	
계	7	7			10,000	지사 7
대 상	1점	1		3,000	3,000	지사 1
최우수	2점	1	1	1,600	3,200	지사 2
우 수	2점	1	1	1,000	2,000	지사 2
장 려	2점	2		900	1,800	지사 2

* 축산세 기준 상위 11개 시·군은 A그룹, 나머지 11 시·군은 B그룹으로 구분 별도 평가 시상

- 유공자표창
 - 훈 격 : 장관, 도지사
 - 표창인원 : 60명(장관 14, 도지사 46)
- 시상시기 : '23. 12월말

3. 시·군 협조사항

- 사업관련 예산확보, FTA 축산경쟁력강화 대책 등 축산사업 적극 추진
- 환경친화 축산 실천농가,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등 축산발전 유공자 발굴 추천

3. 가축 통계 조사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태원 담당자 최유림	061-286-6520 061-286-6523

축산물 가격 안정대책 및 각종 축산시책에 필요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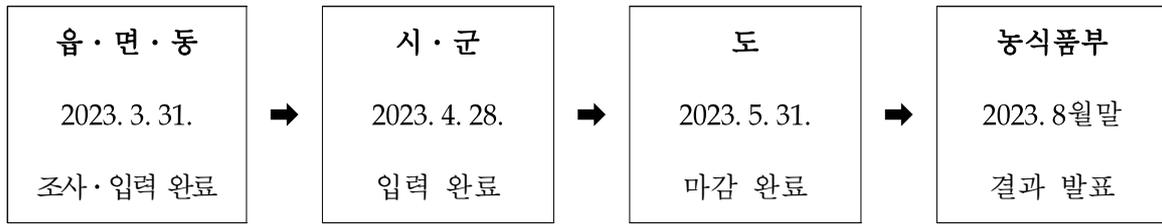
I. 추진방침

- 가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연 2회 통계조사 실시
- 농가 전수조사를 통한 통계의 신뢰성 제고
 - ※ 조사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승인통계 제11423호

II. 2023년 추진계획

- 조사시기 : 상반기(6. 1.), 하반기(12. 1.)
- 조사대상
 - 상반기 : 5종(주요가축/한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
 - 하반기 : 21종(주요가축 및 기타가축*)
 - * 기타가축 조사대상(16종) : 말, 염소, 면양, 사슴, 토끼, 개,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꿀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 지렁이, 기러기
- 조사방법 : 공무원 농가방문 및 행정통계를 통한 전수조사
 - 본 통계자료는 통계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음을 농가에 홍보
 - ※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축사출입 자제, 불가피하게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독철저
- 조사내용 : 축종별 사육가구수, 사육마리수, 연령별·성별마리수, 종별마리수(조사표 의거)
- 결과보고 : 상반기(6. 15.), 하반기(12. 15.)
- 기타가축 통계조사 계획
 - 조사서식 : 행정통계 서식과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병행
 - 조사결과 : 행정통계 서식에 의거 서면보고 후,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입력 조치
 - * 농식품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KASS를 구축('16) 및 운영('17~)함에 따라 기타가축통계도 기존 Agrix에서 KASS로 이관하여 관리('20~)

《기타가축 시기별 조치 계획》



※ 마감 이후 불가피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차상위 기관에 마감해제 등을 요청하여 조치

Ⅲ. 시·군 협조사항

- 조사결과는 보고기한 내 제출
- 통계청에서 공표되지 않는 자료는 대외자료 활용불가

4. 사료 검사(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이두규 담당자 오성준	061-286-6540 061-286-6543

-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로 축산농가 보호
- 사료품질향상으로 사료산업 및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I. 추진방침

- 사료원료 및 유통사료의 품질보장과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체계 확립
- 사료의 안전성과 관련한 성분의 검사 확대(농약, 중금속, 광물질 등)
- 자가 품질검사 실시 이행여부 확인강화를 통해 제조업체 자체 품질관리 개선

II. 2023년 추진계획

- 사업주관 : 도지사
- 검사실시 : 정기(매분기별 1회), 및 수시(양축농가 의뢰시)실시
- 검사방법 : 사료공장 및 사료하치장, 판매업소 등 현지검사
- 시료채취 : 241점(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볏짚)

III. 추진일정

- 정기검사 : 매분기(2, 5, 9, 11월)
- 수시검사 : 양축농가 민원발생시(연중, 검사료 유료로 의뢰자 부담)
- 검사결과 조치 : 사료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IV. 시·군 협조사항

- 배합·보조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사료 성분등록 철저
- 가동 중단된 단미사료제조업체 휴·폐업 조치 후 보고
- 단미사료 제조업체의 제조시설 점검

5.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박진영 담당자 송정아	061-286-6530 061-286-6532

1. 추진배경

-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기준 준수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위생적인 사양관리 추구로 '전남형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
-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농가를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2. 사업개요

- 지정근거 :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 지정목표(누계) : 450호
- 신청자격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지정 농가 중 1가지 이상을 받은 축산농가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육농가
 - ※ 정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가는 서류 신청으로 현장심사를 갈음하여 녹색축산농장 지정 가능
- 심사항목 : 4개 분야 22개 항목(가축관리, 환경보전, 경관조화, 기록관리 등)
 - 200점 만점의 80%이상(160점) 획득시 지정서 교부
- 지정절차 : 신청(농가) → 검토(시·군) → 평가 및 지정(도)
 - ※ 지정누계('22) : 415호(한우 238, 젓소 22, 돼지 28, 닭 90, 오리 20, 염소 17)

3. 추진계획

- 목표량(누계) : 450호
- 녹색축산농장 지정농장 장려금 : 연 1백만원/호
 - 지원대상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받고, 지정 자격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 (농업법인) * 지역축협은 지원 제외
 -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 지급방법
 - (최초지급)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반복 지급) 최초 지급 후 매 1년 단위 시점 인증 유지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인증 유지 확인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s://www.enviagro.go.kr>), 동물보호관리 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인증농가 명단 확인

○ 녹색축산농장 세부 지정 절차

① 서류 신청·접수(농가→시·군→도)

- 시·군은 신청자격 요건(유기·무항생제축산물인증,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 농장(정부) 지정 중 1가지 이상을 받은 농가)을 반드시 확인 후 접수 *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제외

② 서류심사(도)

- 신청농가 자격요건 확인 등 시·군 신청 서류 확인
- 서류심사 통과 농가 현장심사 일정 계획 수립

③ 현장심사(도)

- 심사평가팀 구성 후 시·군별 현장 심사
- ※ 심사평가팀 : 도 및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 등 3명 이상 구성
- 현장심사 결과 200점 만점 중 80% 이상(160점) 획득 시 지정

④ 사후관리(도 및 시·군)

- 연 1회 이상 지정조건 및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
- ※ 지도·점검 결과 지정기준 위반시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정 취소 조치

4. 행정사항

-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매월) 및 심사(분기별)
-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적극 홍보(연 1백만원/호)

6.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정상묵	061-286-6550 061-286-6551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유지와 안정적인 가축 사육 기반 확보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

1. 추진개요

- 추진대상 : 4,657호
- 추진실적('22.12.) : 완료 4,411호(추진대상 농가 중 94.7%)

추진대상	추진완료			추진 중	별도관리	미 추진*
	소계	인허가	폐업			
4,657	4,411	3,917	494	45	31	170

* 미추진 : 폐업(11), 축소(7), 위반시설 폐쇄(152)

※ 3단계('22.12.) : 55호(인허가 등 완료 25, 설계계약 등 진행 중 19, 미진행 11)

2. 지금까지 추진상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기간 부여 : '20. 11. 1. ~ '21. 4. 30.
- 별도관리 지정농가 추진상황 점검 및 시군 독려 : 수시

3. 시군 협조사항

- 농가별 부여된 추가기간 내 적법화 완료토록 적극 추진
 - 시·군 가축사육제한·건축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개정
- 미 추진 농가(폐업, 축소, 이전, 행정처분, 별도관리 등) 조속히 조치 완료
- 적법화 완료 농가는 축산업 변경 허가(등록) 하도록 지도

7.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추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성진 담당자 고영민	061-286-6550 061-286-6552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본격 시행에 따라 부숙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등을 지원하여 철저히 추진

1. 추진개요

- 시행시기 : '20. 3. 25.부터
 - ※ '21. 3. 24.까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행정처분 유예, 현장 지도·점검 추진)
- 검사대상 : 8,564호(가축분뇨 300kg/일 이상 배출농가*)
 - 축종별 : 한우 6,820호, 젓소 338, 돼지 506, 가금 512, 기타 388
 - * 한우 264m²(22두), 젓소 120m²(10두), 돼지 161m²(115두), 가금·기타 200m² 이상
- 검사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검사주기 : 배출시설 허가규모* 6개월 1회, 신고규모 1년 1회
 - * 한우·젓소 900m² 이상, 돼지 1,000m², 닭·오리 3,000m²

2. 지금까지 추진상황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유예 등 정부 건의 : 5회
 - 계도기간 운영, 부숙도 관리 기계·장비 지원 확대(우리 도 건의안 반영)
- 퇴비 부숙도 이행 촉구 및 추진상황 파악(6회) : '22 1~10.
- 퇴비 부숙도 관리 시설 및 장비 지원(3종, 65억원) : '22 2~12.
 -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시설·장비 지원 : 65개소, 20억 원
 -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공급 지원 : 1,250호, 25억 원
 -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 설치('21. 사업) : 1개소(장흥), 20억 원

【 퇴비 부숙도 검사 추진 실적('22. 10.) 】

- 검사실적 : 8,564호(100% 검사완료, 적합판정 99.6%)
- 부적합 농가(35호)는 퇴비 부숙 후 재검사('22. 12월 중) 추진

3. 시·군 협조사항

- 퇴비 부숙 촉진 시설·장비 및 톱밥 공급 사업 조기 완료
- 부숙도 검사 대상농가 지속 관리, 검사시기 도래농가 검사 안내 : 연중

8.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당 김성진 담당자 정상묵	061-286-6550 061-286-6551

축산농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 추진, 악취 민원 해소 등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농림식품부에서 동 사업 시행지침 최종 확정 시 별도 시행 예정임

1. 추진배경 및 기본계획

1. 추진배경

-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
-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농가 육성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목표량(누계) : 1,900호
 - 연도별(누계) : '18) 258호 → '19) 388 → '20) 665 → '21) 1,348 → '22) 1,585
- 사업주관 : 도(시·군)
- 신청대상
 - 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한·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 농가
 - * 단, 축산업을 등록한 자 중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m²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의 경우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미비(기본요건 미흡 등)로 인해 탈락하거나 서류에 기재한 기본요건 등 적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현장의 사실과 다른 경우 탈락 결과 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지정기준 : 총계 70점(가점 포함)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평가방향>

- 한·육우, 젖소 : 축사바닥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 상태 중심 평가
- 돼지, 닭, 오리 : 축산악취, 가축분뇨 관리, 경관 중심 평가

<주요 평가 항목>

○ 평가 배점 항목(100점)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2점)
-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5점)
-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목 식재 등(10점)
-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10점)
-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한·육우, 돼지, 닭·오리 20점, 젖소 15점)
-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분무, 살포 및 급이) 여부(5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한·육우 10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착유세정수 관리상태(젖소 12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돼지, 닭·오리 15점)
-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 여부, 관리상태(돼지, 닭·오리 5점)
- 사료 보관 및 스킵로더 등 관리상태(한·육우 2점)
- 폐사축 적정관리(즉시 처리) 여부(한·육우, 젖소 3점, 돼지, 닭·오리 5점)
-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5점)
-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한·육우, 젖소 5점)
- 착유실 청결관리 여부(젖소 2점)
- 바닥 상태 및 교체주기(돼지, 닭·오리 15점, 한·육우, 젖소 20점)
-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3점)

○ 판단 항목

- 출입통제 안내판 및 차단장치 설치
- 소독시설 설치,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 기록·보관
- 농장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젖소, 돼지) 작성·관리
-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
-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축사내부 25ppm)

※ 세부사항 축종별 현장평가 채점표 참고

3. 지원내용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사업대상자 우선선정 대상에 포함

-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 지원사업,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 깨끗한 축산농장 중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에 한함

-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 중 시설·장비, 미생물제재 지원 등에 우선 지원
- (자조금 등 지원) 지자체, 농협 및 생산자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사업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전환
 - * 축사외부 경관개선(입간판, 조경수, 울타리 등), 시설·장비, 미생물제재 지원 등
- (컨설팅) 축산환경관리원은 컨설팅·사후관리 등 지원
 - * 지정시 미흡한 농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재신청할 수 있게 지원

4. 지정 준비 중인 농가 지원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증(친환경축산물·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는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기준 중 필수사항 의무 설치 시 지원대상에 포함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준비 중인 농가 중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기준에 맞게 설치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한도 : 10백만원/호, 지원한도액 내에서 실 구입비 지원
 - 사업내용 : 동물복지형 축산 사육시설 설치 및 축사주변 경관 조성 비용 등
 - 축사시설 개·보수, 사양관리·사육환경·방역시설 개선, 축사주변 경관조성 등
-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중 녹색축산농장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 지원대상 :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받은 날로부터, 친환경축산물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농업법인)
 - 지원내용 : 친환경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장려금 지급)
 - 지원한도 : 3백만원/호(규모와 관계없이 호당 지급)
 - 지급시기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장려금 지급 시점 기준 매 1년 단위 지원

5. 지정절차 및 기준

< 지정절차 >

자가 채점 후 신청(축산농가) ➡ 신청서류 심사 및 사전현장평가(시·군) ➡ 신청서류 제출(시·군) ➡ 신청서류 확인·검토 및 평가 요청(도) ➡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평가(축산환경관리원) ➡ 평가결과 검토·제출(축산환경관리원, 도) ➡ 농식품부 검토(축산환경관리원 협조) ➡ 농식품부 지정

* 도(시·군)별 신청접수(연중 수시)를 받아 평가 및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지정(총점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 신청서류 심사 및 사전현장평가(시·군)
 - 시·군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실시(수시 실시)
 -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해당 여부 등 확인,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 판단
 - 신청농가 대상 사전현장평가 실시(수시 실시)

- 사전현장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 70점 이상(가점 포함) 및 판단 항목 모두 적합시 신청 가능
- * 신청 구비서류 미비(기본요건 미흡 등)로 인해 탈락하거나 서류에 기재한 기본요건 등 적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현장의 사실과 다른 경우 탈락 결과 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해당사항 면밀히 검토

○ 신청서류 제출(시·군)

- 시·군은 서류 심사 및 사전현장평가를 통과한 농가 신청서류를 도에 제출(부적합 농가의 경우, 신청 대상 제외)
-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축산업 허가증, 기본요건 확인사항 및 증빙자료, 농장주 자가채점표 및 지자체 사전 평가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청농가 현황을 파일 형식(PDF, JPEG 등)으로 제출
- *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은 시·군에서 확인(필요 시 관리원으로 제출)

○ 신청서류 확인·검토 및 평가 요청(시·도)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신청서류의 구비서류 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부적합 사항이 없는 농가를 관리원에 평가 요청(매월 말일 기준으로 요청)
- * 시·군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9월까지 평가 요청한 농가에 한해 순차적으로 해당연도 현장평가 및 지정 추진(신청량, 방역상황 등에 따라 차년도 유예 가능)

○ 신청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관리원)

- 시·도에서 평가 요청한 대상농가 전수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 절차: (1단계) 서류검토 → (2단계) 현장평가 → (3단계) 평가결과 알림
- 서류검토 신청서, 구비서류 등 검토, 서류 수정·보완 요청, 미제출농가는 평가 대상 제외(관리원 → 시·도)
- * 서류 미비 시 탈락(다만, 15일 이내에 미비한 서류에 대한 수정·보완이 가능한 경우 인정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재신청 안내)
- 현장평가: 축산환경 관련 전문가 1명 이상 현장 확인, 질의응답 등을 통해 현장평가 실시
- * 현장 평가 시 농가의 기본요건 여부, 자가 채점표와 현장의 사실여부 확인
- *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내부를 제외하고 농장 확인을 위한 진입 거부로 현장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 거부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
- * 적부항목 이외 현장평가자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15일 이내 개선 결과(지자체 담당자 확인 서명, 개선 전·후 사진 필수) 제출하는 경우 서면검토 후 최종결과에 반영
-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운영
- * 평가위원 :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증 소지자, 축산환경 컨설턴트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

※ 지자체 담당자 입회를 원칙으로 하며, 입회 불가능한 경우 평가표 확인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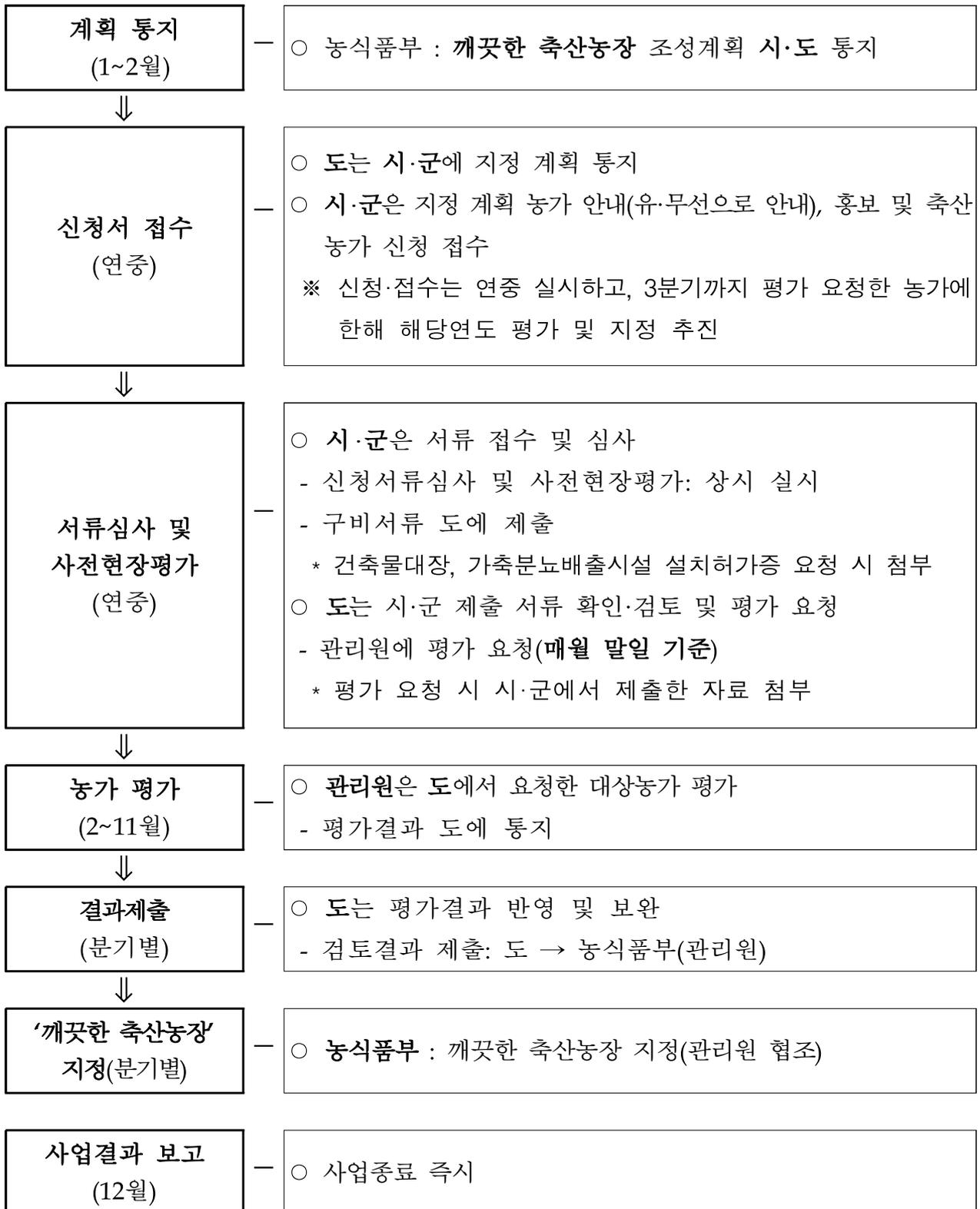
○ 평가결과 검토·제출(관리원, 시·도)

- 관리원은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해당 시도에 알림
- 시·도는 관리원으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 또는 보완하여 농식품부에 검토결과(지정요청) 제출

○ 농식품부 지정

- 농식품부는 최종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관리원 협조)

○ 깨끗한 축산농장 추진절차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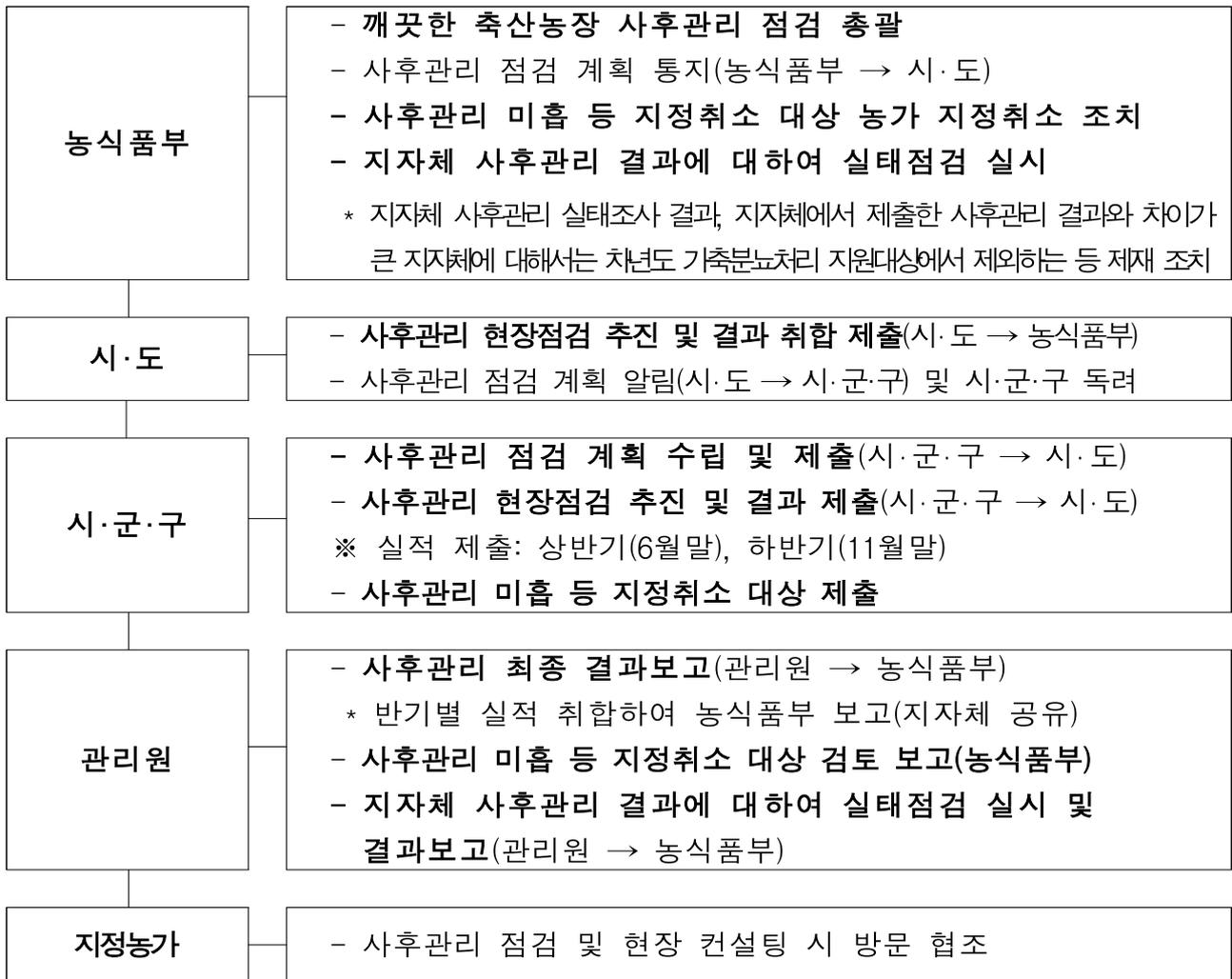
※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는 연중 가능하나 시기별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기별 계획에 따라 신청 및 현장평가 추진

※ 상기 일정은 업무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후관리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전체에 대해 해당 시·군 사후관리
 - 시·도는 매년 6월, 11월 사후관리 현황 농식품부(관리원) 제출
 - * 사후관리 점검표 사본, 사후관리 점검대장 제출
- 사후관리 기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 5년간(유효기간)
 - * 유효기간 만료 도래 농가(지정 후 5년)는 해당연도 지정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여 지자체에서 재평가 실시(70점 이상 재지정), 자체 재지정 후 보고
- 인력 구성·운영
 - 시·군 가축분뇨 담당자, 각 기관별로 활용할 지역 전문가 및 축산·환경 분야 현장전문가 등 전문인력(1명 이상)을 활용하여 사후관리 점검
 - 시·군 담당자는 사후관리 점검자 구성
 - * 지자체, 농협 및 생산자 단체, 축산환경 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지정 농가 반기별 1회(연 2회) 사후관리 실시
 - 추진사항 점검 : 지정 농가 반기별 1회(연 2회) 사후관리를 실시(1~6월, 7~11월 완료)하고, 점검결과는 농식품부(관리원)에 제출
- 사후관리 점검 방법
 - 점검 계획 수립 : 시·군에서는 관할지역 내 지정농가에 대해 반기별 1회 사후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도 제출(2.18.까지) → 도에서는 시·군 점검 계획을 취합하여 농식품부(관리원) 제출(2.23.까지)
- 사후관리 점검
 - 시·군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농·축협, 축산환경 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축종별 사후관리 현장점검표에 따라 항목별 점검을 실시하고, 도에 제출
 - ※ 상반기 점검 90점 이상 지정농가의 경우 하반기 사후관리 점검 제외 가능
 - * 지자체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와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후관리 결과의 차이가 큰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가축분뇨처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 조치
- 실적보고
 - 시·도에서는 시·군·구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관리원) 제출(6월 말, 11월 말)
 - * 제출서류: 축종별 사후관리 현장점검표[붙임 8] 사본 및 사후관리 점검대장[붙임 11]
 - * 사후관리 점검 결과 폐업 등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지정취소 절차에 따라 취소 신청(시·도 → 농식품부)
- 사후관리 실태점검
 - 점검 계획 수립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 상반기 사후관리 결과에 대하여 실태점검 실시(관리원 협조)
 - * 대상 농가 선정, 일정 등 점검 계획은 관리원에서 수립 후 추진
-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보고
 - 관리원에서는 실태점검 실시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 지자체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와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후관리 결과의 차이가 큰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가축분뇨처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 조치

○ 사후관리 주체별 역할 및 체계



7. 재지정 평가(연장평가)

○ 재지정 평가 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 5년(유효기간)이 지난 지정농가 중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자
- 재지정 평가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재지정 제외
 - *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전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재지정 제외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재지정 제외(다만,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말소
 - * 재지정 평가 희망 농가는 재지정 평가 실시연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교육 수수료: 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정 수수료 후 신청(재지정 평가 신청 시 수수료증 제출, 미수료한 경우 재지정 불가)
 - * 교육 수수료 방법 및 수수료증 발급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 재지정 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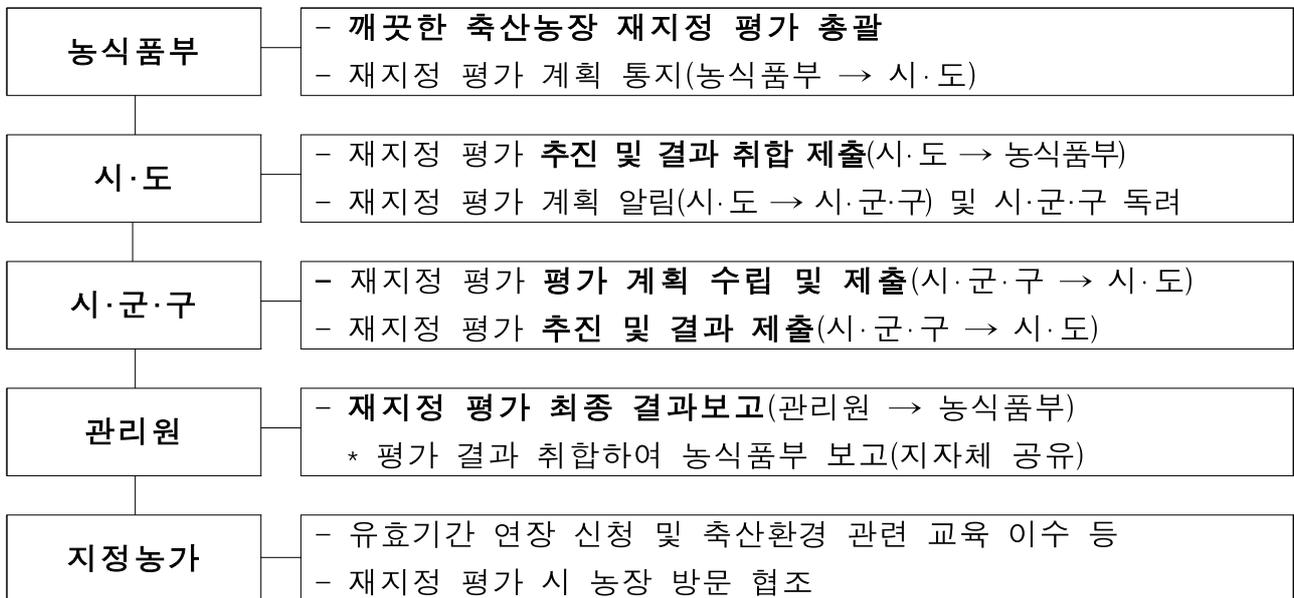
- 평가계획 수립 : 시·군에서는 관할지역 내 재지정 평가 대상농가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 희망 수요를 조사하여 도에 제출(2.18.까지) → 도에서는 시·군 연장 희망 수요를 취합하여 농식품부(관리원) 제출(2.23.까지)

- 농가 재지정 사항 이행 : 농가에서는 재지정 희망 신청, 구비서류 작성, 관리원에서 진행하는 축산환경 관련 교육 이수 등 재지정 관련 사항 이행
- 평가진행 : 시·군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농·축협, 축산환경 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평가표에 따라 항목별 점검을 실시하고, 도에 평가 결과 제출(9.23.)
- * 재지정 평가 시 현장평가표[붙임 2] 활용

○ 결과보고

- 도에서는 시·군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관리원) 제출(9.30.)
- 재지정 평가 결과 보고 시 현장평가표 사본, 재신청 평가결과 관리 대장,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제출
-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축산업 허가증, 기본요건 확인사항 및 증빙자료, 농장주 자가채점표 및 지자체 사전 평가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청농가 현황을 파일 형식(PDF, JPEG 등)으로 제출

○ 재지정 평가 주체별 역할 및 체계



8. 지정취소 및 변경

○ 지정취소 요건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신청자격 및 신청 시 기본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축산법」·「가축분뇨법」·「가축전염병예방법」·「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 관련 법규 위반
 - *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연 2회 이상 또는 3년 연속 매년 1회 이상 처분 받은 자
 - * 소독시설(방문자, 차량),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 밀도 유지, 기록관리(소독 기록·관리,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기록) 미준수
- ◆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농가 조치
 - * 지자체 사후관리 점검 결과 연속 2회 이상 70점 미만인 농가(예: '21년 하반기 사후관리 결과 70점 미만, '22년 상반기 사후관리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지정취소 대상)
-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의 취소 요청
 -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로 인한 취소 공문 요청 시 담당자와 농가 확인 절차 후 취소
- ※ 악취민원 문제 발생 농가의 경우 지자체 및 관리원에서 점검 후 취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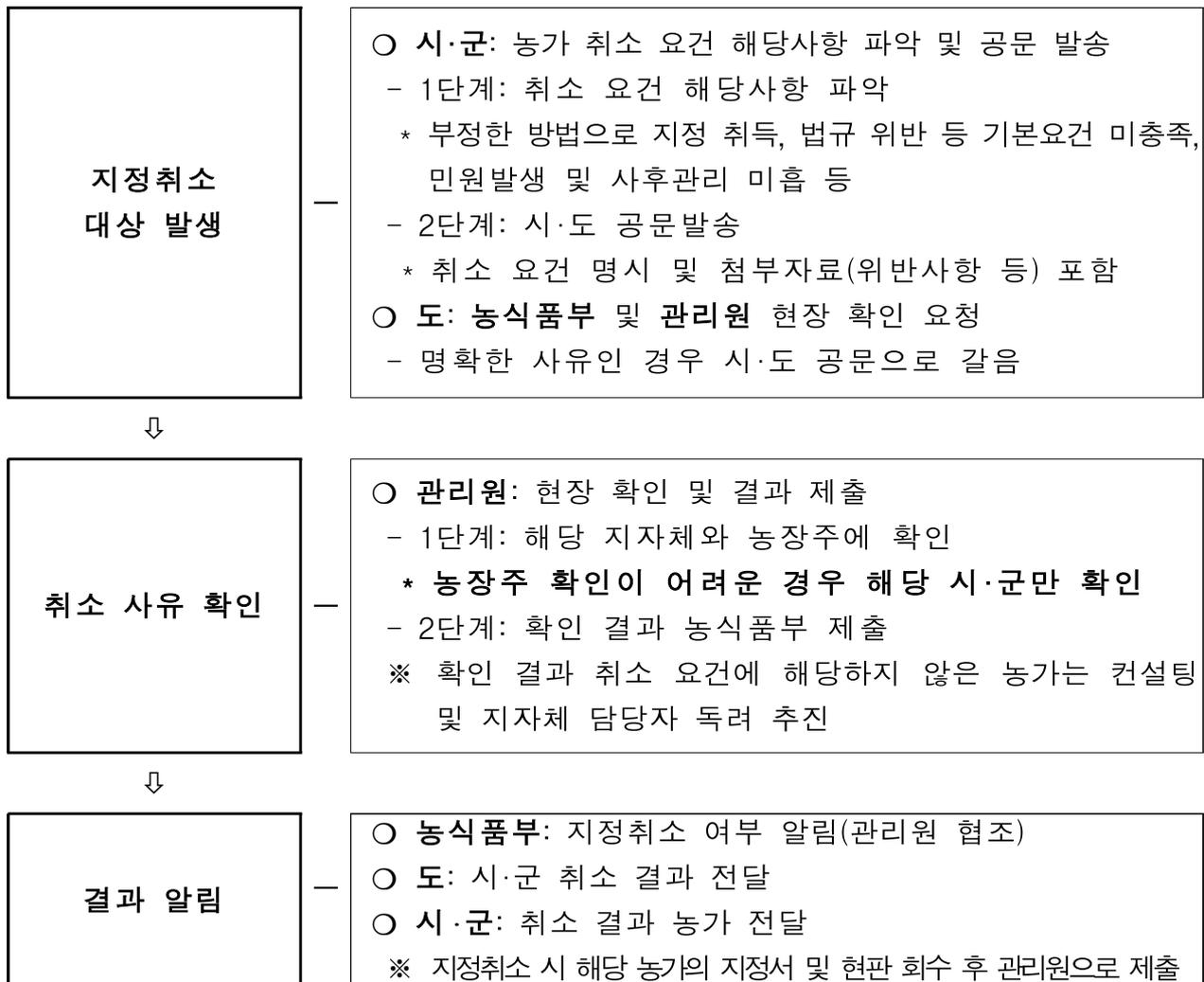
- 지정 후 지속적 유지·관리가 어려운 농가 등의 취소 요청 시 해당 지자체 및 관리원은 취소 절차에 따라 농가 확인 후 조치
 - * 서류검토 후 필요 시 현장 확인
- 법률 위반으로 지정취소 된 농가는 차년도 재신청 불가
 - * 예) 2022년 1월 취소 농가는 2023년 신청 불가(2024년 신청 가능)

○ 지정 내용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요건

- ◆ 최초 발급 시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예시: 한·육우 → 산란계)
 - 현장 실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행정상 착오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
- ◆ 지정 농장의 대표자명 변경(개명), 농장명 변경, 지정서 분실·훼손의 경우
- ◆ 시·도의 공문서 요청 시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붙임 9] 작성·제출
 - 변경 요청 내용 확인 후 지정서 pdf 파일 발송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축산법」 제24조(영업의 승계)의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 도 변경 요청(공문) 내용 확인 후 지정서 PDF 파일 발송

○ 지정취소 절차



(단위 : 호)

시·군	지정신청 목표				비 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계	650	395	166	89	
여 수	15	10	3	2	
순 천	30	20	5	5	
나 주	80	40	30	10	
광 양	15	10	3	2	
담 양	30	20	5	5	
곡 성	30	20	5	5	
구 례	15	10	3	2	
고 흥	30	20	5	5	
보 성	30	20	5	5	
화 순	30	20	5	5	
장 흥	40	20	15	5	
강 진	30	20	5	5	
해 남	30	20	5	5	
영 암	40	20	15	5	
무 안	40	20	15	5	
함 평	60	40	15	5	
영 광	40	20	15	5	
장 성	20	15	3	2	
완 도	15	10	3	2	
진 도	15	10	3	2	
신 안	15	10	3	2	

9.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당 김성진 담당자 정상묵	061-286-6550 061-286-6551

1. 목 적

- 축산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 복지, 축산환경, 위생·안전관리 등 관련교육
- 축산업 신규 진입자(허가·등록)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종사자 등의 법정 의무·보수 교육의 체계적인 이수·관리

2. 지원근거

-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보수교육 실시

3. 사업시행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컨설팅부)

- 교육총괄기관(1개소) : 농협경제지주(축산컨설팅부)
- 교육운영기관(189개소) : 시·도, 농·축협, 대학교, 협회 등
- * 「축산법에 따라 지정된 축산 관련 교육기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1호)으로 교육총괄기관 1개소(농협경제지주), 교육운영기관 189개(농업기술센터20, 농·축협 144, 대학교11, 협회10, 공공기관4) 지정·운영

4. 교육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려는 자 및 허가·등록자, 축산차량 종사자 등

- (허가대상) 신규로 종축업·부화업·정액처리업 및 소·돼지·닭·오리의 사육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을 하려는 자(농가, 법인)
- (등록대상)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돼지·닭·오리, 사슴·양(염소·산양 포함), 사육 시설면적 10㎡~50㎡ 이하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평의 가축사육업을 하려는 자 및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 *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 (보수교육) 허가를 받은 자(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 (2년에 1회 이상), 축산관계 시설 출입차량 종사자(4년에 1회)
- * 보수교육 예상 인원('23년) : 164백명(허가자 120, 등록자 44)

※ 2023년 세부추진계획 : 별도 통보

IV. 참고 자료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10호, 2019. 11. 19, 타법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삭제 <2008.2.22>
5. 삭제 <2008.2.22>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2008.2.22>
12. 삭제 <2008.2.22>
13. 이표기
14. 삭제 <2008.2.22>
15. 삭제 <2008.2.22>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삭제 <2008.2.22>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
22. 삭제 <2008.2.22>
23. 삭제 <2008.2.22>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삭제 <2008.2.22>
28. 삭제 <2008.2.22>
29. 원유냉각기
30. 삭제 <2008.2.22>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삭제 <2008.2.22>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삭제 <2008.2.22>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51. 벌통
52. 채밀기(採蜜器)
53. 소초(巢礎)세트[소초광(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꽃이에 한정한다)
2.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야생화·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임업용 부직포(작물·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임업용 양수기
14. 벼씨탈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m²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시행 2019. 2. 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8호, 2019. 2. 8., 일부개정.]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 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부칙 <제2019-8호, 2019. 2. 8.>

이 고시는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도 환경친화 축산사업 추진계획

발행처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축산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번지

☎ 061-286-6521

편집인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정책팀장 김태원

동물복지팀장 박진영

축산경영팀장 이두규

축산자원팀장 김성진

주무관 임경순

주무관 조아현

발행일

2023년 2월